

# 포레나 평택화양 공동주택 입주자모집공고



## ■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방지를 위한 견본주택 운영 안내

- '포레나 평택화양'는 코로나19 감염증 확산 방지를 위하여 견본주택 방문 시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코로나19 정부 방역 지침에 따라 입장 인원 및 운영 시간이 변동될 수 있습니다.
- 분양 일정, 청약 안내, 상품 안내 등 자세한 사항은 '포레나 평택화양'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의 견본주택 관람(방문 예약제 운영 예정) 일정 및 예약 방법 등은 당첨자 발표 이후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당첨자의 견본주택 관람 예약 가능 대상자 여부는 한국부동산원에서 사업주체에게 송부한 당첨자 성명 및 연락처(휴대전화)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 ■ 코로나바이러스감염증-19 관련 안내 사항

- 견본주택 방문기간 내 아래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입장 및 관람이 제한됩니다.
  - (a) 코로나19 확진자, 자가격리 대상자, 감염병 의심자 등 역학적 연관성이 있는 자
  - (b) 견본주택 입장 전 및 견본주택 내에서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을 경우
  - (c) 체온이 37.5°C 이상인 경우(열화상 카메라 및 비접촉 체온계 측정)
  - (e) 기타 견본주택 운영 절차를 준수하지 않을 경우(손 소독제, 비접촉 체온계 등)
- \*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 확산 상황 및 정부 정책에 따라 향후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일정은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될 경우 당첨자에 한해 개별 통보할 예정입니다.
- \* 예비입주자의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동·호수 추첨 및 공급계약 일정은 향후 별도 고지할 예정입니다.

## ■ 본 아파트는 2022.02.28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이 적용됩니다.

- 본 아파트의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은 2022.10.27.입니다. (청약 자격조건외의 기간, 나이, 지역 우선 등의 청약 자격조건 판단기준일입니다.)
- 해당 주택건설지역(경기도 평택시)은 「수도권정비계획법」 제6조 제1항에 의한 성장관리권역이며, 「주택법」 제63조 및 제63조의2에 의한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으로서, 본 아파트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1주택 이상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도 1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 본 아파트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모든 주택(민간 사전청약, 분양주택, 분양전환공공임대주택)에 한하여 1인 1건만 신청이 가능하며, 2건 이상 중복신청 시 모두 무효 처리 또는 당첨자 선정 이후에도 당첨 무효(예비입주자 지위 무효)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동일단지 내 1인이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에 각 1건씩 청약 가능하며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 시 일반공급 선정 대상에서 제외 처리함)
- 본 아파트는 비투기과열지구 및 비청약과열지역의 민간택지에서 공급하는 분양가상한제 미적용 민영주택으로 당첨자로 선정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4조에 따른 재당첨 제한을 적용받지 않고, 기존 주택 당첨 여부와 관계없이 본 아파트 청약이 가능합니다. (단, 본 제도는 당첨된 청약통장의 재사용을 허용하는 제도가 아니므로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 여부와 관계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당첨자로 선정 시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및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현재 평택시 및 전국에 거주(주민등록표등본 기준)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양육, 형제자매부양)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의 경우 청약이 가능합니다. 다만 청약 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가(2022.04.27. 이전부터 계속 거주) 우선합니다.
- 2019.11.0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5항 및 제23조 제2항 제7호에 따라 우선공급 받으려는 경우에는 「출입국관리법」 제88조의 출입국사실증명원을 사업주체에 제출해야 합니다. 장기 해외체류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신청이 불가하며, 이를 위반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됩니다.
  - \* 본 아파트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현재 평택시 6개월 이상(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해야 1순위(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중 우선공급 요건을 충족하게 되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국내에 거주하지 않고 해외에 장기간(90일 초과) 체류하고 있는 상태에서 해당 주택건설지역 1순위자로 청약 당첨되는 것은 「주택법」 제65조 제1항에 위반하는 것으로 계약 체결 이후에도 당첨 취소 및 계약 취소가 될 수 있습니다.

출입국사실증명원 해외체류기간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한 기간(입국 후 7일 내 동일국가 재출국 시 계속하여 해외에 체류한 것으로 봄) 또는 연간 183일을 초과(거주제한기간이 2년인 주택은 각 연도별 183일을 말함) 하여 국외에 거주한 기간은 국내 거주로 인정되지 아니하므로 해당 주택건설지역으로 청약할 수 없습니다. 단, 90일 이내의 여행, 출장, 파견 등 단기 해외체류는 국내 거주로 간주되어 해당 주택건설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1) 모집공고일 현재 해당지역에 거주하고 있으나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여 국외에 체류한 경력이 있으면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는 불인정하나 기타지역 거주자로는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2)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하지 않는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청약 가능합니다.
  - 사례3) 모집공고일 현재 해외에 있는 대상자로 국외 체류기간이 계속해서 90일을 초과한 경우 해당지역 우선공급 대상자로 불인정되며 기타지역 거주자라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 제8항에 따라 세대원 중 주택공급신청자만 생애에 직접 종사하기 위하여 국외에 체류하고 있는 경우에는 국내에 거주하고 있는 것으로 봅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2호의3, 제2조의4에 의거 ‘세대’ 및 ‘무주택세대구성원’의 정의가 변경되었습니다.

- “세대”란, 다음 각 목의 사람(이하 “세대원”)으로 구성된 집단(주택공급신청자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지 않은 경우는 제외)

가. 주택공급신청자

나.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

다.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부모, 장인, 장모, 시부, 시모, 조부, 조모, 외조부, 외조모 등

라. 주택공급신청자의 직계비속(직계비속의 배우자 포함, 이하 같음)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아들, 딸, 시위, 며느리, 손자, 손녀, 외손자, 외손녀 등

마. 주택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비속 : 주택공급신청자의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함께 등재되어야 함. (예) 전혼자녀 등

- “무주택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

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나.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제1항 제2호 및 제3호에 따른 부동산 중 주택을 공급받는 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를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따른 지위(이하 ‘분양권 등’이라 한다)를 승계취득(전세 또는 일부의 권리를 매매하여 취득한 경우를 말한다. 이하 같다)하여 소유하고 있지 아니할 것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나목에 의거 주택(분양권 등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직계존속의 배우자는 가점제 항목의 부양가족으로 보지 않습니다.

부양가족 판단 시 직계비속은 미혼자녀와 부모가 모두 사망한 미혼의 손자녀인 경우에 한정하여 인정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2, 제23조 제4항, 제53조에 의거 **분양권 및 입주권(이하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주택 소유로 간주하오니, 주택 소유 여부 판정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기타 주택 소유 여부 판정 기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참조)

※ **주택 소유로 보는 분양권 등의 범위**(국토교통부령 부칙 제3조, 제565호, 2018.12.11. 시행)

- **분양권 등 신규 계약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입주자모집공고, 관리처분계획(정비사업) 또는 사업계획(지역주택조합)’ 승인을 신청한 주택의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공급계약 체결일’ 기준 주택 소유로 봄 (\*미분양 주택을 최초로 공급받은 경우는 제외되나, 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경우 주택 소유로 봄)

- **분양권 등 매수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이후 매수 신고한 분양권 등부터 적용하며, ‘(실거래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을 기준으로 주택 소유로 봄

1. 분양권 등부터 취득에 따라 주택 소유자가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공급계약-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계약일. 다만, 다음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분양권 등으로 보지 아니함.

가. 시행일(18.12.11) 전 공급 계약된 건

나. 시행일 전 입주자모집승인 신청된 건

다. 시행일 전 사업계획승인(지역주택조합) 신청된 건

라. 시행일 전 관리처분계획승인(정비사업) 신청된 건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 지급일

※ “공급계약-준공후-분양권(입주권)”, “전매-준공후-분양권(입주권)”의 경우 주택으로 등기되므로 검색 결과상 동일 물건이 있는 경우 1주택으로 처리됨.

2. 분양권 등 처분에 따라 주택을 소유하지 않게 되는 날

- 권리구분란에서 “전매-준공전-분양권(입주권)”인 경우 잔금 지급일

-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것으로 검색되어 나타났으나 증여, 경매, 공매 등으로 처분된 경우 당사자가 소유했던 공급계약서에 다른 사람에게 명도된 날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7호의 3에 의거 “**소형·저가주택 등**”은 **분양권 등을 포함하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 제외)을 기준으로 가격을 판단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등”이란, 전용면적 60제곱미터 이하로서 주택가격이 8천만원(수도권은 1억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 (주택가격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2)의 기준에 따름)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 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신청자격은 당첨자를 대상으로 전산 조회, 제출 서류 등을 통해 사업주체에서 확인하며, 확인 결과 신청자격과 다르게 당첨된 사실이 판명될 경우에는 부적격 당첨자로서 불이익(계약 체결 불가, 일정 기간 입주자 저축 사용 및 입주자 선정 제한 등)을 받으시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의 신청자격, 기준, 일정, 방법, 유의사항 등을 정확히 확인 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신청자격	특별공급					일반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1순위	2순위
청약통장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단, 철거민 및 도시재생 부지제공자, 장애인, 국가유 공자 불필요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6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 12개월 이상, 예치금) ※ 지역별/면적별 예치금 이상인 자	필요 (1순위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세대주 요건	-	-	-	필요	-	-	-
소득 또는 자산기준	-	-	적용	-	적용	-	-

※ 1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가입기간이 12개월이 경과하고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납입한 자

※ 2순위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였으나, 1순위에 해당되지 않는 자

■ 본 아파트는 건전한 주택청약 문화 정착을 위한 정부의 방침에 따라 인터넷 청약을 원칙으로 하고 있으므로 청약 이전에 ①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으며, 아래와 같이 인증서 로그인 가능하오니 서비스 이용 시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청약신청 구분	공동인증서(舊 공인인증서)	금융인증서(YESKEY)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
APT(특별공급/1·2순위) / 오피스텔 / 도시형생활주택 / (공공지원)민간임대	O	O	O	O
APT무순위 / 잔여세대 / 취소후재공급	O	O	X	X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0조 제1항에 따라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 선정 및 등·호수 배정은 한국부동산원에서 실시합니다.

■ 10년 이상 장기복무 중인 군인은 본 주택의 해당순위(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2순위)의 청약자격과 입주자저축 요건을 충족 시, 기타 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할 수 있습니다.

■ 2021.02.02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조제8항에 의거 국방부「군 주택공급 입주자 선정 훈령」 제18조에 따른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중 국방부(국군복지단)에서 추천한 자는 수도권(투기과열지구가 아닌 지역으로 한정) 청약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것으로 보아 해당지역 거주자격으로 청약신청이 가능합니다.(해당지역의 의무거주기간을 적용하지 않음)

※ 25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청약 추천자는 청약Home을 통한 인터넷(PC·모바일) 청약만 가능(견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고령자, 장애인, 다자녀가구(단, 미성년자녀 3명 이상)의 최하층 우선 배정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1조 규정에 의거 제1호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5세 이상인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2호 「장애인복지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등록증이 발급된 자 또는 그 세대에 속한 자, 제3호 미성년자 3명 이상의 자녀를 둔 자 또는 세대에 속한 자가 있는 경우에는 주택공급신청(특별 및 일반공급) 시 최하층의 주택 배정을 희망한 당첨자에 대해서 해당 층을 우선 배정하오니 청약 시 선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최하층이라 함은 1층을 말하며 1층이 없는 경우 최저층을 말하며, 해당 주택의 분양 가격이 바로 위층 주택의 분양가격보다 높은 경우는 제외한다)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와 제3호에 해당하는 자 사이에 경쟁이 있으면, 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배정합니다. 단, 신청자가 많은 경우 다른 층을 배정받을 수 있고, 적은 경우에는 미신청자(최하층 우선배정 신청 비대상자 포함)에게도 최하층이 배정될 수 있습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제1항 제1호 다목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 시 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로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자이어야 합니다. 단,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 시행일(2018.12.11.) 전 기존주택을 처분하여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 2순위 자격이 부여됩니다. (부칙 제5조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

■ 신청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청약홈 및 LH청약센터 등의 기관을 통해 청약접수 및 당첨자 선정을 진행하는 경우 포함)에 대하여 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청약 신청할 경우에는 모두 무효 처리 및 (민간 사전청약)당첨자 선정 후에도 무효처리 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단, 본인이 같은 주택에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 시에는 모두 무효 처리)

■ 특별공급은 무주택 세대 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에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 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부적격 예시) ①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당첨 = 모두 부적격 / ②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 부적격 / ③ 특별공급 당첨 + 특별공급 낙첨(신청 이력) = 부적격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인터넷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습니다.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접수를 원칙으로 하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만 사업주체 견본주택에서 접수가 가능합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최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5조 제7항에 의거 특별공급 대상 주택의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의 입주자는 다른 공급유형의 특별공급 신청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선정하며,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으로 전환하여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에 의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도록 신설되었으며, 특별공급 접수 종류 구분없이 주택형별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의 방법으로 예비입주자를 선정합니다.

■ 2017.09.20.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6항 제2호에 의거 본 주택에 가점제로 당첨된 분은 당첨일로부터 2년간 가점제 당첨 제한자로 관리되오니, 향후 당첨자 본인 및 세대원이 가점제가 적용되는 민영주택에 청약하는 경우 가점제 제한사항 적용 여부를 확인하신 후 청약하시기 바랍니다. ('청약Home'(www.applyhome.co.kr)>마이페이지>청약제한사항)

■ 본 아파트에 1순위 청약 시 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 가점제로 당첨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추첨제로 청약접수 해야 합니다. 또한, 가점제 제한 청약자가 가점제로 청약하여 당첨된 경우 부적격 처리되오니 청약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순위 접수방법이 '청약신청금 납부'에서 '청약통장 사용'으로 변경되었으니 2순위로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지역별 예치금액과 상관없이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에 가입되어 있어야 합니다.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8항에 의거 투기과열지구, 청약과열지역, 수도권 및 광역시에서 추첨의 방법으로 입주자를 선정하는 주택 수보다 추첨 대상자가 많은 경우, 다음 순서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합니다.**

1.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되는 주택수의 75% : 무주택세대구성원
  2. 나머지 25%의 주택(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 포함) : 무주택세대구성원과 1주택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기존 소유주택 처분조건을 승낙한 자로 한정)
  3. 제1호 및 제2호에 따라 공급한 후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 1순위에 해당하는 자 중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에게 공급
- ※ 1주택(분양권 등 제외)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자가 우선 공급받으려는 경우, ① 공급받은 주택의 입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조건을 승낙해야 하며, ②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관하여 신고하거나 검인을 받아야 하고, ③ 입주가능일로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해야 합니다.
- ②에 따라 신고하거나 검인받지 않은 경우 입주할 수 없으며, ③에 따라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이 해지될 수 있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의2 제1항 및 제26조 제1항에 따라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는 경우에는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은 순위에 따라 대상 주택 수의 300%를 예비입주자로 선정합니다. 선정된 예비입주자 현황은 최초 공급계약 체결일로부터 60일까지(예비입주자가 소진될 경우에는 그때까지로 함) 당사 인터넷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에 공개되며, 공개기간이 경과한 다음 날에 예비입주자의 지위는 소멸되며, 예비입주자의 지위가 소멸된 때 예비입주자와 관련한 개인정보는 파기 처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20.02.28. 시행한 국토교통부 주택기금과-1590(청약과열지역 등 예비입주자 선정비율 확대 요청)호에 따라 '20.3.16. 이후 청약과열지역·수도권(인천, 경기)·지방 광역시(부산,대구,대전,광주,울산)에서 입주자모집공고하는 주택은 300%의 예비입주자를 선정
- 2019.12.0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에 의거 일반공급 예비입주자는 청약신청자가 예비입주자 선정 총수에 미달되어도 가점이 높은 순으로 예비순번을 부여합니다.
- 일반공급 예비입주자 선정 시 주택형별로 공급세대수의 300%를 아래와 같이 선정합니다.
- 1순위 : 공급세대수의 300%까지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여 가점이 높은 자를 앞 순번으로 선정
  - 2순위 : 1순위에서 미달된 예비공급 세대수만큼 지역 우선공급을 적용하여 추첨으로 선정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입주자로 선정된 자 중 당첨이 취소되거나 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자 또는 공급계약을 해약한 자가 있으면 소명기간이 지난 후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순번에 따라 공급하되, 최초로 예비입주자를 입주자로 선정하는 경우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의 당첨 취소 또는 미계약 물량과 해당 주택의 동·호수를 공개한 후 동·호수를 배정하는 추첨의 참가 의사를 표시한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특별공급 물량을,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 대하여는 일반공급 물량을 추첨의 방법으로 동·호수를 배정하여 공급하고, 특별공급 물량 중 특별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하고 남은 주택은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6조 제6항에 의거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자가 다른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예비입주자로서 주택을 공급받을 수 없으며, 동·호수 배정에 참여할 수 없습니다. 다만, 예비입주자의 동호수 배정일(당첨일)이 입주자 선정일보다 빠른 경우 예비입주자 계약 체결은 가능하며 입주자 선정내역은 무효 처리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 제2항에 따라 주택의 공급계약은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 선정 사실 공고일부터 11일이 경과한 후 3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기간 동안에 체결합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순위요건을 만족하였으나, 청약 신청 전 청약통장을 해지한 경우에는 청약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의 전매제한기간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특별공급	일반공급
전매제한기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소유권이전등기일까지(다만, 그 기간이 3년을 초과하는 경우 3년)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2021.02.19. 시행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에 따라 「주택법」 제64조제1항 및 제65조제1항을 위반하여 적발된 경우, 위반한 행위를 적발한 날부터 10년간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유의사항 및 제한사항 등 본인의 자격사항에 대해 청약자 본인이 직접 확인 후 청약하시어 부적격당첨으로 인한 불이익을 당하는 일이 없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12.11.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제3항에 의거 부적격으로 당첨이 취소된 자는 향후 신청하려는 주택의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민간 사전청약을 포함)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또는 계약자)의 당첨(또는 계약)취소
- 본 입주자모집공고의 자격제한 및 유의사항을 숙지한 후 청약에 응하시기 바라며, 미숙지로 인한 착오 행위 등에 대하여는 청약자 본인에게 책임이 있습니다. 또한 당첨자로 선정되거나 계약을 체결한 이후라도 관계법령 및 공급자격 적격여부에 따라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될 수 있습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판명된 자는 본 아파트의 예비입주자 선정 이후 남은 세대에 대한 임의공급/입주자모집공고 사후 무순위 아파트 대상에 포함될 수 없습니다.
  - 위장전입 및 불법 전매제한 등을 통한 부정한 당첨자는 「주택법」 제65조 및 「주민등록법」 제37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투기 적발자 처벌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6조, 「주택법」 제64조, 제65조 및 제101조)
- 분양과 관련하여 주택 청약통장 및 주택 분양권을 불법 거래하다가 적발된 자는 「주택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공급계약 취소, 10년간 청약 자격이 제한되며, 형사 고발되어 3년 이하의 징역에 처해지거나 3

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택법」 제64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 또는 주택을 전매하거나 이의 전매를 알선한 자 및 「주택법」 제65조 제1항을 위반한 자에 해당하는 자로서 그 위반행위로 얻은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이 3천만원을 초과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그 이익의 3배에 해당하는 금액 이하의 벌금을 부과받게 될 수 있습니다.

- 불법 거래를 알선 또는 중개한 부동산업자에 대해서도 「공인중개사법」에 따라 자격 정지, 등록 취소 등 처벌을 받게 됩니다.
- 이와 관련하여 법원 등 공공기관으로부터 위법 여부 확인 등을 위한 개인정보 요구 시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라 정보를 제공할 수 있습니다.
- 최초 계약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분양계약이 취소되어 매수자(전매 포함)가 피해를 보게 되더라도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신청서의 내용 변조,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 등으로 관련 법령을 위반할 경우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인지세법」 제3조 제1항 제1호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에 의거하여 공동주택 공급계약서와 권리의무승계(전매)계약서는 인지세법상 '부동산 소유권이전등기에 관한 증서'로서 과세대상이므로 분양계약(전매 포함) 체결 시 계약자는 과세 기준에 해당하는 인지세를 납부하여야 합니다. 기재금액은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제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2조에 따른 부동산 거래 계약서에 기재된 실지거래가격(분양대금과 프리미엄을 합한 금액)으로 등기원인서류로 등기에 제출하기로 한 계약서에는 전자수입인지를 첨부하여야 합니다.

[부동산 등기(최초 분양계약자와 최종 매수자의 인지세 납부의무 이행 확인)와는 무관하게 중간 전매도 인지세법에 따른 납세의무를 이행하여야 함]

※ 2021.01.01. 개정된 「국세기본법」 제47조의4 제9항에 따라 분양계약 체결일까지 인지세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부과되오니 계약자는 반드시 계약 체결 전 전자수입인지에 관한 내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수입인지 사이트 <https://www.e-revenuestamp.or.kr>, 우체국, 은행에서 전자수입인지를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에 대한 신청자격 등 판단 시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0.27.)'이며, 면적은 '주거전용면적', 연령 조건은 '만 나이'를 기준, 거주지역은 '주민등록표등(초)본', 당첨자 중 부적격자로 판명된 자는 본인의 책임과 비용으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의거 부적격 통보일로부터 7일의 소명기간 이내에 소명을 완료해야만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주민등록표등(초)본상 말소사실이 있는 경우 거주지역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 청약 및 계약 등 주요 일정 안내

※ 한국부동산원이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으로서 역할을 수행함에 따라 국민은행 청약통장 가입자도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를 통해 접수합니다.

구 분	특별공급 [기관추천, 다자녀,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일반공급		당첨자발표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계약체결
		1순위	2순위			
일 정	2022년 11월 7일(월)	2022년 11월 8일(화)	2022년 11월 9일(수)	2022년 11월 15일(화)	2022년 11월 17일(목) ~ 11월 21일(월)	2022년 11월 28일(월) ~ 11월 30일(수)
방 법	인터넷 청약 (09:00 ~ 17:30)	인터넷 청약 (09:00 ~ 17:30)		개별 조회 (청약Home 로그인 후 조회)	건본주택 방문 접수 (10:00~17:00) *사전 방문 예약제(정부 정책에 따라 변동 가능)	
장 소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li>* 청약통장 가입은행 구분 없음</li> <li>■ 사업주체 건본주택(10:00~14:00)</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li> <li>-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li> <li>- 스마트폰앱</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포레나 평택화양' 건본주택</li> <li>-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li> </ul> <p>※ 방문 예약 : '포레나 평택화양' 홈페이지 (<a href="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a>)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미비 서류 제출, 부적격 세대 등 일정은 별도 통지 예정입니다.                      ※ 자격 확인 서류 접수건수에 따라 운영 일정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p>		

※ 고령자, 장애인 등 인터넷 청약이 불가능한 경우에 한해 특별공급은 건본주택 방문접수(10:00~14:00, 은행창구 접수 불가), 일반공급은 청약통장 가입은행 본·지점(09:00~16:00)에서 청약 가능함

※ 국방부(국군복지단) 추천한 "25년 이상 장기복무군인 추천자"는 '청약Home' 홈페이지를 통한 인터넷 청약만 가능(건본주택 또는 은행 창구접수 불가)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스마트폰앱 : 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2022.02.28. 시행된 내용 관련 자세한 사항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참조하시기 바라며, 이 공고문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따릅니다.

■ 본 입주자모집공고문은 작성 당시 법령 및 정책 등의 규정에 의거하여 작성하였으며, 이후 정책변경 및 법 개정 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그로 인하여 사업주체에 이의제기를 할 수 없습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0조의 규정에 의거 「경기도 평택시 주택과 - 43448호(2022.10.27.)」로 입주자모집공고 승인

■ 공급위치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7-2BL

■ 공급규모 : 아파트 지하 2층 ~ 지상 29층, 10개동, 총 995세대

[특별공급 456세대(일반[기관추천] 82세대, 다자녀가구 96세대, 신혼부부 169세대, 노부모부양 27세대, 생애최초 82세대 포함)] 및 부대복리시설

■ 주차대수 : 1,345대(아파트 1,340대, 근린생활시설 5대) 계획

■ 입주시기 : 2025년 11월 예정(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

■ 공급대상

(단위 : ㎡, 세대)

주택 구분	주택관리번호	모델	주택형 (전용면적기준)	약식표기	주택공급면적(㎡)			기타 공용면적 (지하주차장등)	계약 면적	세대별 대지지분	총공급 세대수	특별공급 세대수						일반공급 세대수	최하층 우선배정 세대수
					주거 전용면적	주거 공용면적	소계					기관 추천	다자녀 가구	신혼 부부	노부모 부양	생애 최초	계		
민영 주택	2022000741	01	074.9989A	74A	74.9989	22.1122	97.1111	52.4322	149.5433	42.7099	78	7	7	16	2	7	39	39	3
		02	074.9937B	74B	74.9937	24.2742	99.2679	52.4286	151.6965	42.7070	75	7	7	15	2	7	38	37	3
		03	074.9959C	74C	74.9959	22.0521	97.0480	52.4301	149.4781	42.7082	75	7	7	15	2	7	38	37	3
		04	074.9866D	74D	74.9866	22.2760	97.2626	52.4236	149.6862	42.7029	53	5	5	10	1	5	26	27	2
		05	084.9984A	84A	84.9984	25.0490	110.0474	59.4229	169.4704	48.4044	205	20	20	41	6	20	107	98	8
		06	084.9531B	84B	84.9531	25.2829	110.2360	59.3913	169.6273	48.3786	363	36	36	72	10	36	190	173	14
		07	099.9952A	99A	99.9952	29.5762	129.5714	69.9073	199.4787	56.9447	146	-	14	-	4	-	18	128	6
합 계											995	82	96	169	27	82	456	539	39

\* 평형 환산 방법 : 공급면적(㎡)×0.3025 또는 공급면적(㎡)÷3.3058

\* 대지지분 면적 합산 시 소수점 다섯째 자리에서 반올림하여 소수점 넷째자리까지 표현되어 합산 면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분양 예정 건축시설물의 대지권(지분)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에 따라 공유지분으로 배분합니다.

\* 특별공급 미 청약분은 일반공급으로 전환됨에 따라 일반공급 세대수는 특별공급의 청약 결과에 따라 변동될 수 있습니다.

\*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자세한 내용은 반드시 견본주택 분양사무실로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주택형은 입주자 모집공고 상의 표기이며, 견본주택, 홍보 제작물 등은 약식으로 표현되었으니 청약·계약 시 주택형에 대한 혼돈 방지에 특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2009.04.01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일부 개정으로 인해 주택형 표기방식이 기존(전용면적+주거공용면적)에서 주거전용면적만 표기하도록 변경되었으니 이점 유념하시어 청약 신청 바랍니다.

■ 공급금액 및 납부일정

(단위 : 세대, 원)

약식 표기	공급 세대수	동(라인) 구분	층 구분	해당 세대수	공급금액				계약금(10%)		중도금(60%)						잔금(30%)	
					대지비	건축비	부가세	계	계약 시	계약일로부터 30일 이내	1차	2차	3차	4차	5차	6차	입주 시	
74A	78	105동 4호	2층	1	60,072,900	317,327,100	-	377,400,000	10,000,000	2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37,740,000	113,220,000
			3층	1	60,072,900	319,327,100	-	379,400,000	10,000,000	27,940,000	37,940,000	37,940,000	37,940,000	37,940,000	37,940,000	37,940,000	37,940,000	113,820,000
			4층	1	60,072,900	323,327,100	-	383,400,000	10,000,000	2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115,020,000
			5~10층	6	60,072,900	331,227,100	-	391,300,000	10,000,000	2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39,130,000	117,390,000
			11~20층	10	60,072,900	335,127,100	-	395,200,000	10,000,000	2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39,520,000	118,560,000
			21층 이상	7	60,072,900	341,127,100	-	401,200,000	10,000,000	3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40,120,000	120,360,000

		106동 4호 107동 3호	2층	2	60,072,900	306,227,100	-	366,300,000	10,000,000	2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36,630,000	109,890,000	
			3층	2	60,072,900	308,227,100	-	368,300,000	10,000,000	2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36,830,000	110,490,000
			4층	2	60,072,900	312,027,100	-	372,100,000	10,000,000	2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37,210,000	111,630,000
			5~10층	12	60,072,900	319,727,100	-	379,800,000	10,000,000	2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37,980,000	113,940,000
			11~20층	20	60,072,900	323,527,100	-	383,600,000	10,000,000	2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38,360,000	115,080,000
			21층 이상	14	60,072,900	329,327,100	-	389,400,000	10,000,000	2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38,940,000
74B	75	102동 1호 103동 1호	2층	2	60,068,700	314,431,300	-	374,500,000	10,000,000	27,450,000	37,450,000	37,450,000	37,450,000	37,450,000	37,450,000	37,450,000	37,450,000	112,350,000	
			3층	2	60,068,700	316,331,300	-	376,400,000	10,000,000	2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37,640,000	112,920,000
			4층	2	60,068,700	320,331,300	-	380,400,000	10,000,000	2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38,040,000	114,120,000
			5~10층	12	60,068,700	328,131,300	-	388,200,000	10,000,000	2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38,820,000	116,460,000
			11~20층	20	60,068,700	332,031,300	-	392,100,000	10,000,000	2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39,210,000	117,630,000
			21층 이상	12	60,068,700	337,931,300	-	398,000,000	10,000,000	2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39,800,000
		104동 1호	2층	1	60,068,700	325,731,300	-	385,800,000	10,000,000	28,580,000	38,580,000	38,580,000	38,580,000	38,580,000	38,580,000	38,580,000	38,580,000	38,580,000	115,740,000
			3층	1	60,068,700	327,831,300	-	387,900,000	10,000,000	2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38,790,000	116,370,000
			4층	1	60,068,700	331,831,300	-	391,900,000	10,000,000	2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117,570,000
			5~10층	6	60,068,700	339,931,300	-	400,000,000	10,000,000	3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40,000,000	120,000,000
			11~20층	10	60,068,700	343,931,300	-	404,000,000	10,000,000	3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40,400,000	121,200,000
			21층 이상	6	60,068,700	350,031,300	-	410,100,000	10,000,000	3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41,010,000
74C	75	102동 2호 103동 2호	2층	2	60,070,500	309,729,500	-	369,800,000	10,000,000	2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36,980,000	110,940,000	
			3층	2	60,070,500	311,629,500	-	371,700,000	10,000,000	27,170,000	37,170,000	37,170,000	37,170,000	37,170,000	37,170,000	37,170,000	37,170,000	37,170,000	111,510,000
			4층	2	60,070,500	315,529,500	-	375,600,000	10,000,000	2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37,560,000	112,680,000
			5~10층	12	60,070,500	323,329,500	-	383,400,000	10,000,000	2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38,340,000	115,020,000
			11~20층	20	60,070,500	327,129,500	-	387,200,000	10,000,000	2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38,720,000	116,160,000
			21층 이상	12	60,070,500	332,929,500	-	393,000,000	10,000,000	2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39,300,000
		104동 2호	2층	1	60,070,500	320,929,500	-	381,000,000	10,000,000	2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38,100,000	114,300,000
			3층	1	60,070,500	322,929,500	-	383,000,000	10,000,000	2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38,300,000	114,900,000
			4층	1	60,070,500	326,929,500	-	387,000,000	10,000,000	2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38,700,000	116,100,000
			5~10층	6	60,070,500	334,929,500	-	395,000,000	10,000,000	2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39,500,000	118,500,000
			11~20층	10	60,070,500	338,929,500	-	399,000,000	10,000,000	2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39,900,000	119,700,000
			21층 이상	6	60,070,500	344,929,500	-	405,000,000	10,000,000	3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40,500,000
74D	53	105동 1호 106동 1호	2층	2	60,063,100	317,936,900	-	378,000,000	10,000,000	2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37,800,000	113,400,000	
			3층	2	60,063,100	319,936,900	-	380,000,000	10,000,000	2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38,000,000	114,000,000
			4층	2	60,063,100	323,936,900	-	384,000,000	10,000,000	2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38,400,000	115,200,000
			5~10층	12	60,063,100	331,836,900	-	391,900,000	10,000,000	2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39,190,000	117,570,000
			11~20층	20	60,063,100	335,836,900	-	395,900,000	10,000,000	2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39,590,000	118,770,000
			21층 이상	15	60,063,100	341,736,900	-	401,800,000	10,000,000	3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40,180,000
84A	205	101동 4호 110동 4호	2층	2	68,082,300	359,817,700	-	427,900,000	10,000,000	3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42,790,000	128,370,000	
			3층	2	68,082,300	362,017,700	-	430,100,000	10,000,000	3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43,010,000	129,030,000
			4층	2	68,082,300	366,517,700	-	434,600,000	10,000,000	3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43,460,000	130,380,000
			5~10층	12	68,082,300	375,417,700	-	443,500,000	10,000,000	3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133,050,000
			11~20층	20	68,082,300	379,917,700	-	448,000,000	10,000,000	3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44,800,000	134,400,000
		21층 이상	15	68,082,300	386,617,700	-	454,700,000	10,000,000	3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45,470,000	136,410,000
101동 2호	2층	3	68,082,300	355,517,700	-	423,600,000	10,000,000	3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42,360,000	127,080,000		

84B	108동 4호 109동 4호	3층	3	68,082,300	357,717,700	-	425,800,000	10,000,000	32,580,000	42,580,000	42,580,000	42,580,000	42,580,000	42,580,000	42,580,000	127,740,000		
		4층	3	68,082,300	362,117,700	-	430,200,000	10,000,000	3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43,020,000	129,060,000	
		5~10층	18	68,082,300	371,017,700	-	439,100,000	10,000,000	3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43,910,000	131,730,000	
		11~20층	30	68,082,300	375,417,700	-	443,500,000	10,000,000	3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44,350,000	133,050,000	
		21층 이상	20	68,082,300	382,117,700	-	450,200,000	10,000,000	3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45,020,000	135,060,000	
		108동 2호 109동 2호 110동 2호	2층	3	68,082,300	368,317,700	-	436,400,000	10,000,000	3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43,640,000	130,920,000
			3층	3	68,082,300	370,617,700	-	438,700,000	10,000,000	3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43,870,000	131,610,000
			4층	3	68,082,300	375,217,700	-	443,300,000	10,000,000	3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44,330,000	132,990,000
			5~10층	18	68,082,300	384,317,700	-	452,400,000	10,000,000	3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45,240,000	135,720,000
			11~20층	30	68,082,300	388,917,700	-	457,000,000	10,000,000	3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45,700,000	137,100,000
	21층 이상	18	68,082,300	395,717,700	-	463,800,000	10,000,000	3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46,380,000	139,140,000		
	84B	101동 3호 110동 3호	2층	2	68,046,100	356,253,900	-	424,300,000	10,000,000	3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42,430,000	127,290,000
			3층	2	68,046,100	358,453,900	-	426,500,000	10,000,000	3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42,650,000	127,950,000
			4층	2	68,046,100	362,953,900	-	431,000,000	10,000,000	3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43,100,000	129,300,000
			5~10층	12	68,046,100	371,853,900	-	439,900,000	10,000,000	3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131,970,000
11~20층			20	68,046,100	376,253,900	-	444,300,000	10,000,000	3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44,430,000	133,290,000	
21층 이상			15	68,046,100	382,953,900	-	451,000,000	10,000,000	3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45,100,000	135,300,000	
101동 1호 108동 3호 109동 3호		2층	3	68,046,100	352,053,900	-	420,100,000	10,000,000	3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42,010,000	126,030,000	
		3층	3	68,046,100	354,253,900	-	422,300,000	10,000,000	3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42,230,000	126,690,000	
		4층	3	68,046,100	358,653,900	-	426,700,000	10,000,000	3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42,670,000	128,010,000	
		5~10층	18	68,046,100	367,453,900	-	435,500,000	10,000,000	3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43,550,000	130,650,000	
		11~20층	30	68,046,100	371,853,900	-	439,900,000	10,000,000	3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43,990,000	131,970,000	
21층 이상		20	68,046,100	378,453,900	-	446,500,000	10,000,000	3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44,650,000	133,950,000		
105동 2,3호 106동 2,3호 107동 1,2호 108동 1호 109동 1호 110동 1호		2층	9	68,046,100	364,753,900	-	432,800,000	10,000,000	3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43,280,000	129,840,000	
		3층	9	68,046,100	367,053,900	-	435,100,000	10,000,000	3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43,510,000	130,530,000	
		4층	9	68,046,100	371,553,900	-	439,600,000	10,000,000	3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43,960,000	131,880,000	
		5~10층	54	68,046,100	380,653,900	-	448,700,000	10,000,000	3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44,870,000	134,610,000	
		11~20층	90	68,046,100	385,153,900	-	453,200,000	10,000,000	3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45,320,000	135,960,000	
21층 이상		62	68,046,100	391,953,900	-	460,000,000	10,000,000	3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46,000,000	138,000,000		
99A		102동 3,4호 103동 3,4호	2층	4	80,094,500	385,095,909	38,509,591	503,700,000	10,000,000	4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50,370,000	151,110,000
			3층	4	80,094,500	387,550,455	38,755,045	506,400,000	10,000,000	4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50,640,000	151,920,000
			4층	4	80,094,500	392,277,727	39,227,773	511,600,000	10,000,000	4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51,160,000	153,480,000
			5~10층	24	80,094,500	401,914,091	40,191,409	522,200,000	10,000,000	4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52,220,000	156,660,000
			11~20층	40	80,094,500	406,732,273	40,673,227	527,500,000	10,000,000	4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52,750,000	158,250,000
			21층 이상	20	80,094,500	413,914,091	41,391,409	535,400,000	10,000,000	4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53,540,000	160,620,000
	104동 3,4호	2층	2	80,094,500	394,277,727	39,427,773	513,800,000	10,000,000	4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51,380,000	154,140,000	
		3층	2	80,094,500	396,732,273	39,673,227	516,500,000	10,000,000	4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51,650,000	154,950,000	
		4층	2	80,094,500	401,641,364	40,164,136	521,900,000	10,000,000	42,190,000	52,190,000	52,190,000	52,190,000	52,190,000	52,190,000	52,190,000	52,190,000	156,570,000	
		5~10층	12	80,094,500	411,368,636	41,136,864	532,600,000	10,000,000	4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53,260,000	159,780,000	
		11~20층	20	80,094,500	416,277,727	41,627,773	538,000,000	10,000,000	4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53,800,000	161,400,000	
		21층 이상	12	80,094,500	423,641,364	42,364,136	546,100,000	10,000,000	44,610,000	54,610,000	54,610,000	54,610,000	54,610,000	54,610,000	54,610,000	54,610,000	163,830,000	



- **공통사항**
- 분양가격의 항목별 공시 내용은 사업에 실제 소요된 비용과 다를 수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분양가 자율화에 따라 공급총액 범위 내에서 주택형별, 층별 등으로 적의 조정하여 책정한 금액입니다.
- 공급금액에는 각 주택형별 소유권이전등기 비용, 취득세가 미포함 되어 있습니다.
- 공급금액은 발코니 확장 비용, 유상 옵션 및 가전 옵션 등이 미포함된 금액이며, 주택 공급계약 체결 시 별도 계약을 통해 선택이 가능합니다.
- 계약면적에는 계단, 복도, 주현관 등 주거공용면적과 지하 주차장, 관리·경비실, 주민공동시설, 기계/전기실 등의 그 밖의 공용면적이 포함되어 있으며, 기타 공용면적에 대한 금액이 공급금액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 공급 세대의 청약접수는 동·층·향·호별 구분 없이 청약 순위별로 접수하며 관계 법령 등에 의거 입주자를 선정하여 동·호수를 배정합니다.
- 공급금액은 계약금, 중도금, 잔금의 순서로 납부하며 잔금은 입주(열쇠 불출일) 전에 완납하여야 합니다. (중도금, 잔금 납부일이 토/일요일 또는 국경일인 경우 익일 은행 영업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단, 연체로 납부 시 토/일요일 또는 공휴일로 인해 납부가 지연되는 경우라도 납부지연에 따른 연체일수로 산정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중도금은 당해 주택의 건축공정이 전체공사비(부지 매입비를 제외한)의 50% 이상이 투입된 때(다만, 동별 건축공정이 30% 이상이어야 함)를 기준으로 전후 각 2회 이상 분할하여 받으며, 상기 중도금 납부일자 중 50% 공정 시점 이후 납부일자는 예정일자이며, 감리자의 건축공정 확인에 따라 추후 변동될 수 있습니다.
- 잔금은 사용검사일 이후에 받되,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60조에 따라 납부하여야 합니다. 다만, 동별 사용검사 또는 임시사용승인(동별 사용검사 포함)을 득하여 입주하는 경우에는 전체 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외한 잔금을 입주일에 납부하고, 전체입주금의 10%에 해당하는 잔금은 사용검사일 기준으로 납부하여야 합니다. (대지권에 대한 등기는 공부정리 절차 등의 이유로 실 입주일과는 관계없이 다소 지연될 수 있으며, 본 사항은 적용되지 아니합니다.)
- 견본주택에 설치된 단위세대, 모형물과 공급안내문, 사이버 견본주택 등으로 대상 주택을 안내하오니, 설계도서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및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 본 표시재산의 구조물 등 제반사항은 설계도면 등을 통하여 반드시 확인 후 계약하여야 하며, 확인하지 못한 사항으로 인한 이의제기 및 그 밖의 인쇄물이나 구두약정의 내용은 인정하지 아니합니다.

## II 특별공급 신청자격 및 당첨자 선정방법

### ■ 특별공급 신청자격별·주택형별 공급세대수

(단위 : 세대)

구 분		74A	74B	74C	74D	84A	84B	99	합 계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국가유공자 등	1	1	1	1	6	13	-	23		
	장기복무 제대군인	1	1	1	1	2	3	-	9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1	1	1	1	2	3	-	9		
	중소기업 근로자	1	1	1	1	2	3	-	9		
	장애인	경기도	1	1	1	1	4	8	-	16	
		서울특별시	1	1	1	-	2	3	-	8	
인천광역시		1	1	1	-	2	3	-	8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경기도 거주자 (50%)	4	4	4	3	10	18	7	50		
	기타지역 거주자 (50%)	3	3	3	2	10	18	7	46		
신혼부부 특별공급		16	15	15	10	41	72	-	169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2	2	2	1	6	10	4	27		
생애최초 특별공급		7	7	7	5	20	36	-	82		
합 계		39	38	38	26	107	190	18	456		

- \* 주택형별 특별공급대상 세대수는 공급세대수, 비율 등을 감안하여 배정하였으며 배정 호수가 없는 주택형에 대하여는 신청할 수 없습니다.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신혼부부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와 소득기준 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민영주택 생애최초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소수점 이하 올림)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하며, 세대수의 20%(소수점 이하 올림, 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한다)합니다. 남은 세대수는 1인 가구 신청자,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자산기준을 만족하는 신청자 및 소득기준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공급합니다.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세대수의 10% 범위) : 8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해당하는 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으로서 특별공급 대상 해당 기관장의 추천 및 인정서류를 받으신 분.  
(단, 거주요건 등 우선순위 기준은 해당 기관장이 정하며, 과거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실이 있는 자는 제외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단, 국가유공자, 국가보훈대상자, 장애인 제외)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추천기관

구분	해당 추천기관	연락처
국가유공자 등(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 보훈대상자, 5·18유공자, 특수임무유공자, 참전유공자)	경기남부보훈지청 복지과	031-259-1783
장기복무 제대 군인		
10년 이상 장기복무 군인	국방부 국군복지단 복지사업운영과	02-2225-6378
중소기업 근로자	경기지방중소벤처기업청 성장지원과	031-201-6942
	경기도청 복지국 장애인복지과	031-8008-4324
장애인	서울특별시청 장애인자립지원과	02-2133-9611
	인천광역시청 장애인복지과	032-440-2968

※ '국가유공자 등'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 제2호(독립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2호의2(국가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3호(보훈대상대상자 또는 그 유족), 제4호(5·18민주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5호(특수임무유공자 또는 그 유족), 제6호(참전유공자)에 해당하는 자를 말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기관추천 특별공급의 경우 자격요건을 갖춘 자는 먼저 해당 기관에 신청해야 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36조에 의거하여 해당 추천기관의 장이 정하는 우선순위에 따라 공급합니다.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합니다. [미신청 시 당첨자 선정(동·호 배정)에서 제외되며 계약 불가]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는 해당 기관에서 선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한 자만 신청 가능하며, 해당 기관에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로 선정되었다 하더라도 반드시 해당 신청일에 인터넷 청약 신청의 방법으로 신청해야 하며, 특별공급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이 있는 경우 다른 특별공급 신청자 중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하여 무작위 추첨으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를 선정하므로, 입주자 및 예비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 ※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예비대상자'가 예비입주자로 선정된 것으로 착오하는 사례가 빈번하오니 이 점 유의하시기 바라며, 특별공급 예비입주자로 선정될 경우 예비순번을 부여받게 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 기관추천 특별공급 당첨자선정은 해당 추천기관에서 자체 기준에 의거 대상자를 확정하여 사업주체에 통보되므로 사업주체 및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한국부동산원)은 선정에 관여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96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미만의 자녀 3명(태아 포함) 이상을 둔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처측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과거에 주택을 소유하였다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세대구성원이면 신청이 가능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3명 이상의 자녀 모두 민법상 미성년자(만 19세 미만)이어야 합니다. 3명 이상의 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다른 지역에 거주할 경우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 미성년자임을 입증해야 합니다.
- 자녀 수에는 태어나 입양 자녀도 포함됩니다. (단, 임신 중에 있는 태어나 입양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에는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 자격을 유지하여야 하며 입주 전 불법 낙태 또는 파양한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부적격 처리됩니다.)
- 태어나 입양한 자녀를 자녀 수에 포함할 경우 출산 등과 관련한 자료를 제출하거나 입주 시까지 입양이 유지되어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0조 제3항)
- 임신 부부 또는 입양 부부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입주자로 선정되는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 여부 및 입양 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다만,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 부부의 임신 상태가 입주지정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합니다.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재혼으로 성이 다른 직계가 아닌 자녀를 부양하는 경우 자녀임을 입증할 수 있는 자녀의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이혼, 재혼한 경우 청약자 본인의 자녀는 청약자 또는 청약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에 포함되며, 재혼한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하여 자녀 수로 인정합니다.
- 다자녀 중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상 청약신청자와 세대를 달리할 경우 「가족관계의 등록 등의 관한 법률」에 따라 가족관계증명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공급신청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기준 : [ 거주지역 ▶ 배점기준표 ▶ 자녀수 ▶ 청약자 연령(생년월일) 높은 순 ]

-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영지침」 제5조에 의거 주택형별 특별공급 대상 세대수의 50%를 경기도 거주자에게 공급하며(단, 경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평택시 6개월 이상 (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자에게 우선공급함.) 나머지 50%는 경기도 우선공급 낙첨자를 포함하여 기타지역 거주자에게 공급하되 경쟁이 있는 경우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합니다.
- 다자녀가구 배점 기준표에 의한 점수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하되, 동일 점수로 경쟁이 있을 경우 다음의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해당지역 우선공급 낙첨자가 기타지역 물량에서 재경쟁 시 해당지역 거주자 우선공급 기준은 적용하지 않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배점 기준표

평점요소	총배점	배점기준		비고
		기준	점수	
계	100	(1)+(2)+(3)+(4)+(5)+(6)		
미성년 자녀수(1)	40	미성년 자녀 5명 이상	40	- 자녀(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19세 미만의 미성년자인 경우만 포함
		미성년 자녀 4명	35	
		미성년 자녀 3명	30	
영유아 자녀수(2)	15	자녀 중 영유아 3명 이상	15	- 영유아(태아, 입양아, 전혼자녀 포함)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만 6세 미만의 자녀
		자녀 중 영유아 2명	10	
		자녀 중 영유아 1명	5	
세대구성(3)	5	3세대 이상	5	-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하며 무주택자로 한정)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한부모 가족	5	

무주택기간(4)	20	10년 이상	20	- 배우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정)도 무주택자이어야 하며, 무주택기간은 공급신청자 및 배우자의 무주택기간을 산정 - 청약자가 성년(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이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산정하되 청약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함)부터 무주택기간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5	
		1년 이상 ~ 5년 미만	10	
해당 시·도 거주기간(5)	15	10년 이상	15	- 청약자가 성년자(만 19세 이상, 미성년자가 혼인한 경우 성년으로 봄)로서 수도권(서울·경기·인천)에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하여 거주한 기간을 산정 ※ 시는 광역시·특별자치시 기준이고, 도는 도·특별자치도 기준이며, 수도권의 경우 서울·경기·인천지역 전체를 해당 시·도로 봅니다. ※ 주민등록표초상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
		5년 이상 ~ 10년 미만	10	
		1년 이상 ~ 5년 미만	5	
입주자저축가입기간(6)	5	10년 이상	5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공급신청자의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명의 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 기준으로 산정

(1), (2)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가족관계증명서로 확인(이혼·재혼의 경우 자녀가 동일한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지 아니한 공급신청자의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경우도 포함)에 한함)

(3) : 한부모 가족의 경우 한부모가족증명서로 확인 (3), (4) : 주택 소유 여부 판단 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를 적용

(4), (5) : 주민등록표등본이나 주민등록표초본으로 확인 (6) : 입주자저축 가입확인서로 확인

※ 동점자 처리 : ① 미성년 자녀수가 많은 자 ② 자녀수가 같을 경우 공급신청자의 연령(연월일 계산)이 많은 자

※ 청약자가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신청 시 작성한 기재 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및 기재 내용을 검색 또는 확인 결과 평점요소 자격이 다르거나 무주택기간 오류, 유주택자 등 부적격자로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취소 및 계약 해지는 물론 관련 법령에 의거하여 처벌되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신혼부부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1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20% 범위) : 169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제41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혼인(혼인신고일 기준, 재혼 포함) 기간이 7년(전 배우자이었던 동일인과의 재혼인 경우에는 이전 혼인기간을 포함) 이내인 무주택세대구성원(신혼부부는 혼인신고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계속 무주택자이어야 함)으로서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서 정하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단, 혼인기간 중 주택을 소유한 적이 있는 자는 2018.12.11.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을 처분한 이후 입주자모집공고일까지 계속하여 무주택세대구성원을 유지하고,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한 경우에 신혼부부 특별공급 특례에 따라 2순위 청약 가능

■ 청약자격요건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 (청약통장 가입기간 6개월 이상 경과, 지역별/면적별 예치금액 이상)

- 출산은 가족관계증명서 및 주민등록표등본으로 판단하며, 임신의 경우 임신진단서, 입양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양자 및 친양자의 경우 입양관계증명서상 입양신고일이 적용됨) 등으로 확인합니다.

- 임신의 경우 계약서류 제출 시 출산 관련 자료(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임신 지속 시 임신진단서)를 추가로 제출해야 하며 서류 미제출, 허위 임신, 불법 낙태의 경우 당첨취소 및 부적격 처리되어 향후 신청이 제한됩니다. (출산 관련 자료는 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함)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함)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0.27.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 기준(3억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 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 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 점수의 산정 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출평균한 금액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소득 및 자산 관련 증빙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신청이 제한되며 부적격 처리될 수 있으며, 관련 서류의 제출 책임은 청약자 본인에게 있습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신혼부부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6호(2021.11.16.)]에 따릅니다.

####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기준 : [ 소득 ▶ 순위 ▶ 거주지역 ▶ 미성년 자녀수 ▶ 추첨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0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 이하)에게 우선 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40% 이하인 자(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 이하)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경쟁이 있는 경우 당첨자 선정 방법

- 우선공급 또는 일반공급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제1순위에 해당하는 자에게 우선 공급합니다.

① 제1순위 :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중 자녀를 출산(임신 중이거나 입양한 경우 포함)하여 자녀가 있는 자 [「민법」 제855조 제2항에 따라 혼인 중의 출생자로 인정되는 혼인 외의 출생자(현재 혼인관계인 배우자와의 자녀를 혼인신고일 전에 출생신고한 경우를 말함)를 포함]

\* 재혼일 경우에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관계에 있는 배우자와의 혼인 기간 내 임신 중이거나 출산(입양포함)한 자녀가 있는 경우에만 해당

② 제2순위 : 1순위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 → 무자녀 또는 2018.12.11. 전 기존 주택을 처분하고 무주택기간이 2년을 경과

-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①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

②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많은 자

\* 재혼인 경우 이전 배우자와의 혼인관계에서 출산·입양한 미성년자녀(전혼 자녀)를 포함하되, 그 자녀가 신청자 또는 세대 분리된 재혼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 상에 등재되어야 함.

\* 재혼 배우자의 친자녀(전혼 배우자의 자녀)는 신청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만 해당

③ 미성년 자녀(태아를 포함한다) 수가 같은 경우에는 추첨으로 선정된 자

-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순위 상관없이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에게 우선공급하고,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임신부부 또는 입양부부가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입주자로 선정된 경우, 사업주체는 입주예정자에게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전까지 출산 및 입양 관련 서류(출생증명서, 유산·낙태 관련 진단서 등) 제출을 요구하여 출산여부 및 입양상태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입양의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가족관계증명서와 입양관계증명서를 통해 확인하고, 임신부부의 임신상태가 입주지정 개시일까지 지속되는 경우에는 입주예정자가 입주하기 전에 입주지정기간 개시일 이후 발급받은 임신진단서를 통해 이를 확인할 수 있으며 입주예정자가 관련 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불법 낙태 또는 입주 전 파양한 사실이 판명되는 때에는 공급계약을 취소할 수 있습니다.

■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 (기준소득, 5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 이하	~6,208,934원	~7,200,809원	~7,326,072원	~7,779,825원	~8,233,578원	~8,687,331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00%초과~120% 이하	6,208,935원~ 7,450,721원	7,200,810원~ 8,640,971원	7,326,073원~ 8,791,286원	7,779,826원~ 9,335,790원	8,233,579원~ 9,880,294원	8,687,332원~ 10,424,797원
	일반공급 (상위소득, 20%)	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00%초과~140%이하	6,208,935원~ 8,692,508원	7,200,810원~ 10,081,133원	7,326,073원~ 10,256,501원	7,779,826원~ 10,891,755원	8,233,579원~ 11,527,009원	8,687,332원~ 12,162,263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20%초과~160%이하	7,450,722원~ 9,934,294원	8,640,972원~ 11,521,294원	8,791,287원~ 11,721,715원	9,335,791원~ 12,447,720원	9,880,295원~ 13,173,725원	10,424,798원~ 13,899,730원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추첨제, 30%)		배우자가 소득이 없는 경우	14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8,692,509원~	10,081,134원~	10,256,502원~	10,891,756원~	11,527,010원~	12,162,264원~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기준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0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하며, 부부 중 1인 소득이 월평균 소득기준 100%초과시 일반공급 20%(상위소득)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월평균 소득기준 120%초과~160%이하)를 선택하여야 합니다.

- 상위소득 :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부부 중 1인의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소득의 140%를 초과하지 않아야 합니다.

- 추첨제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배우자 소득이 없는 경우 140%, 신혼부부 모두 소득이 있는 경우 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31억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

-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년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빙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 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table border="1" style="width: 100%; text-align: center;"> <tr> <td rowspan="3">주 택</td> <td>건축물 종류</td> <td>지방세정 시가표준액</td> </tr>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 colspan="2">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able>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주 택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허가증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종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ul> </li> <li>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기준)</li> </ul>												

■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 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유자녀 부부로 청약하려는 자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 공급 세대수의 3% 범위) : 27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을 3년 이상 계속하여 부양(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있는 무주택세대주(피부양자의 배우자도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 **청약자격요건**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의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자격요건 및 세대주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자
  - (1)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지난 자로서 예치기준금액을 납입할 것 (2) 세대주일 것
-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 무주택기간은 청약신청자 및 그 배우자, 피부양자(노부모) 및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산정(「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에 따라 피부양자 및 피부양자의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하고 있었던 기간은 신청자의 무주택기간에서 제외)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직계존속의 배우자 포함)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 미적용)
-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은 내용은 '다자녀가구 및 노부모부양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18-269호(2018.05.08.)]에 따릅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기준** : [ 거주지역 ▶ 가점산정 기준표 ]
  -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6조 제2항에 따라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가점제를 적용하되, 동점일 경우에는 추첨의 방법에 따릅니다.
  - 1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 가점제 적용은 신청자 본인이 작성한 '청약가점 산정기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의거한 청약가점 점수를 우선순위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 ※ 신청자 본인이 직접 작성한 청약가점의 점수가 본인의 기재 오류에 의한 잘못으로 판명될 경우, 당첨이 취소될 수 있으며, 그 책임은 전적으로 본인에게 있습니다.
  -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 : 전용면적 85㎡ 이하 공급 세대수의 10% 범위) : 82세대**

- 대상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43조에 해당하는 자로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면서 생애최초(세대에 속한 모든 자가 과거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없는 경우로 한정, 배우자가 결혼 전 주택소유사실이 있는 경우도 청약 불가)로 주택을 구입하는 자로서 다음 ①~④ 요건을 모두 만족하는 자**
- ①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 일반공급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충족하는 무주택세대원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거나 미혼인 자녀(입양을 포함, 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올라 있는 자녀를 말함)가 있는 자 또는 1인 가구\*
  - \*1인 가구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혼인 중이 아니면서(사별 또는 이혼을 포함) 미혼인 자녀(혼인 중이 아닌 경우에는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자녀)도 없는 신청자
  - ※ 1인 가구는 추첨제로만 청약 가능하며, 단독세대(동거인이나 형제자매 등 세대구성원에 해당하지 않는 자와 같은 세대를 구성하는 경우 포함)와 단독세대가 아닌 자로 구분하며, 단독세대는 전용면적 60㎡ 이하 주택형에 한하여 청약 가능합니다.
- ③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과거 1년 내에 소득세(「소득세법」제19조 또는 제20조에 해당하는 소득에 대하여 납부하는 것을 말함)를 납부한 자를 포함)로서 5년 이상 소득세를 납부한 자. 단, 이 경우 해당 소득세 납부 의무자이나 소득공제, 세액공제, 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를 포함합니다.
- ④ 아래 소득기준 및 자산기준을 충족하는 자
  - 소득기준 : 해당 세대의 월평균 소득이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4명 이상 세대는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을 말한다) 기준의 160% 이하인 자

입주자모집공고일	상시근로자 근로소득 확인 기준	사업자 및 프리랜서 등 소득 확인 기준
2022.10.27.	전년도 소득	전년도 소득

- 자산기준 : 해당 세대의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기준(160%)은 초과하나, 해당 세대의 부동산가액기준(3억 3,100만원) 이하에 해당하는 자는 추첨제 자격으로 신청 가능
- ※ 부동산가액 산출기준 :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제13조제2항 및 「공공주택 입주자 보유 자산 관련 업무처리기준」 제4조에 따라 산출된 금액으로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42조제1항에 따른 보험료 부과점수의 산정방법에서 정한 재산등급 29등급에 해당하는 재산금액의 상한과 하한을 산술평균한 금액
- **청약자격요건** : 주택형(전용면적) 85㎡ 이하의 지역별 예치금 충족 및 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2개월 이상
- ※ 배우자 분리세대의 경우에는 주민등록이 분리된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세대를 이루고 있는 세대원도 주택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
- ※ 입주자저축에 가입하여 청약통장 가입요건을 갖춘 자(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에 따른 청약 1순위 자격요건을 갖추어야 합니다.)

※ 소형·저가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합니다.

※ 기타 본 입주자모집공고 상에 표시되지 않는 내용에 대해서는 '생애최초 주택 특별공급 운용지침'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1-1245호(2021.11.16.)]에 따릅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

공급유형		구분	2021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기준 (2022년 적용)					
			3인 이하	4인	5인	6인	7인	8인
소득 기준 구분	우선공급(기준소득, 50%)	130% 이하	~8,071,614원	~9,361,052원	~9,523,894원	~10,113,773원	~10,703,651원	~11,293,530원
	일반공급(상위소득, 20%)	130% 초과~160% 이하	8,071,615원 ~9,934,294원	9,361,053원 ~11,521,294원	9,523,895원 ~11,721,715원	10,113,774원 ~12,447,720원	10,703,652원 ~13,173,725원	11,293,531원 ~13,899,730원
추첨제 (30%)	소득기준 초과 / 자산기준 충족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160%이하	~9,934,294원	~11,521,294원	~11,721,715원	~12,447,720원	~13,173,725원	~13,899,730원
	1인 가구	160%초과, 부동산가액(3.31억원) 충족	9,934,295원~	11,521,295원~	11,721,716원~	12,447,721원~	13,173,726원~	13,899,731원~

※ 9인 이상 가구 소득기준 → 8인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소득 + {1인당 평균소득(453,753) \* (N-8), 100% 기준} ※ N → 9인 이상 가구원수

※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무주택세대구성원 중 세대주 및 성인인자(만19세 이상)의 합산 소득입니다(단, 세대원의 실종·별거 등으로 소득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의 대상에서 제외함).

※ 월평균소득은 연간소득÷근무월수를 말하며, 연간소득은 근로자의 경우에는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고, 사업자인 경우에는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으로 하며, 근무월수는 근로자인 경우에는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를, 사업자인 경우에는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으로 합니다.

※ 소득산정은 청약신청자의 상황(계속적인 근로자 또는 사업자, 신규취업자, 이직자, 신규사업자, 프리랜서 등)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리 적용되므로 본인의 상황을 “주택청약 FAQ(국토교통부 발간)”을 확인하여야 하며, 소득증빙자료가 제출되지 않으면, 부적격처리 또는 계약포기로 간주될 수 있으니 반드시 본인의 자격요건 및 증명서류를 준비한 후 청약을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가구원수는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으로 산정하되, 공급신청자의 직계존속(공급신청자의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은 입주자모집공고일을 기준으로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공급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가구원수에 포함합니다.

※ 1인 가구 신청자는 소득기준 또는 자산기준 중 하나만 충족하면 청약자격을 만족하는 것으로 봅니다.

가구원수 적용기준		무주택세대구성원에 해당하는 자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태아 수만큼 가구원수로 인정)
가구당 월평균소득 산정기준 (연간소득 ÷ 근무월수)		가구원수 산정기준에 따라 산정된 가구원 중 만 19세 이상 무주택세대구성원 전원의 합산 소득 (단, 세대원의 실종, 별거 등으로 소득 파악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주민등록표등본 말소를 확인하고 소득산정 대상에서 제외)
근로자	연간소득	비과세소득이 제외된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총급여액(21번) 및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상의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재직증명서상의 근무월수
사업자	사업자	전년도 종합소득세 소득금액증명 원본상 과세대상급여액을 기준
	근무월수	사업자등록증상의 기간을 기준

■ 자산보유기준

구분	자산보유기준	자산보유기준 세부 내역										
부동산 (건물+토지)	3억 3,100만원 이하	건축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건축물가액은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건축물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으로 하되, 없는 경우 지자체장이 결정한 시가표준액 적용</li> </ul>									
			주 택	<table border="1"> <thead> <tr> <th>건축물 종류</th> <th>지방세정 시가표준액</th> </tr> </thead> <tbody> <tr> <td>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td> <td>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td> </tr> <tr> <td>단독주택</td> <td>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td> </tr> <tr> <td>주택 외</td> <td>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td> </tr> </tbody> </table>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건축물 종류	지방세정 시가표준액							
공동주택(아파트, 연립, 다세대)	공동주택가격(국토교통부)											
단독주택	표준주택가격(국토교통부) 또는 개별주택가격(시·군·구청장)											
주택 외	지방자치단체장이 결정한 가액											
토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토지가액은 지목에 상관없이 해당 세대가 소유하고 있는 모든 토지의 공시가격(표준지·개별공시지가)에 면적을 곱한 금액. 단, 아래 경우는 제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농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농지로서 같은 법 제49조에 따라 관할 시·구·읍·면의 장이 관리하는 농지원부에 같은 농업인과 소유자로 등재된 경우</li> <li>- 「초지법」 제2조 제1호에 따른 초지로서 소유자가 「축산법」 제22조에 따른 축산업 허가를 받은 사람이며 축산업허가증의 사업장소재지와 동일한 주소인 경우</li> <li>- 공부상 도로, 구거, 하천 등 공공용지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li> <li>- 종중 소유 토지(건축물을 포함) 또는 문화재가 건립된 토지 등 해당 부동산의 사용, 처분 등이 금지되거나 현저히 제한을 받는 경우로서 입주(예정)자가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입증하는 경우</li> <li>• 건축물가액에 토지가액이 포함되지 않는 비주거용 건축물(상가, 오피스텔 등)의 부속토지도 토지가액에 포함(개별공시지가기준)</li> </ul>
--	--	---

■ 휴직 등의 경우 소득 산정 방법

- ①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상 직장 가입자 중 전년도에 휴직 등(파업 등의 이유로 실제 근무를 하지 못하여 급여를 받지 못한 경우를 포함)으로 인해 소득이 정상적으로 근무하는 경우와 다른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정상적으로 근무한 경우의 소득을 추정하여 전년도 소득을 산정합니다.
- ② 전년도 중 일부 기간만 휴직 등을 한 경우에는 전년도에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 동안의 소득을 정상적으로 근무한 개월 수로 나눈 금액으로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③ 전년도 전체에 걸쳐 휴직 등을 하고 해당 연도에 복직 등(정상적으로 근로에 종사하게 된 경우)을 한 경우에는 해당연도 근로자원천징수부와 재직증명서를 징구하여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④ 상기 ②, ③에 따라 월평균소득의 추정이 불가능한 자는 본인의 재직증명서와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합니다.

■ 당첨자 선정 방법

- 당첨자 선정 기준 : [ 소득 ▶ 거주지역(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 ]

- 2021.11.16.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 ① 세대수의 50%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인 자에게 우선공급
- ② 세대수의 20%(우선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를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의 160% 이하인 자까지 확대하여 일반공급(우선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 ③ 남은 주택(일반공급에서 미분양된 주택을 포함)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 160%를 초과하나 부동산가액(3억3,100만원) 기준을 충족하는 자(일반공급에서 입주자로 선정되지 않은 자를 포함) 및 1인 가구 신청자를 대상으로 추첨의 방법으로 공급합니다.

- 소득기준구분 및 추첨제에서 경쟁이 있을 경우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가 우선하며, 경쟁이 있는 경우 추첨으로 결정합니다.

\* 특별공급은 무주택세대구성원에게 1세대 1주택(공급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1세대 1명을 말함) 기준으로 공급하므로 세대 내 2명 이상이 각각 신청하여 1명이라도 선정이 되면, 당첨자는 부적격당첨자로 처리되고, 예비입주자는 입주자로 선정될 기회를 제공받을 수 없으니 유의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청약자격 및 소득 관련 기타 예외 사항

- 군복무 중이어서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가 없는 경우  
: 군복무확인서와 의료보험자격득실확인서를 징구하고 이 경우 군복무자(직업군인 제외)는 소득이 없는 것으로 간주하고, 군복무자의 배우자의 소득을 파악하여 월평균소득을 산정
- 종교기관(교회, 사찰 등)이 신청인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  
: 소득신고 의무 및 국민연금 가입 의무가 없는 자로서 종교기관이 청약 신청자 앞으로 등록되어 있는 경우에는 대표자가 무보수임을 증명할 수 있는 정관 등을 첨부하여 소득증빙서류로 준용
- 직업이 프리랜서이고 소득이 불규칙한 경우  
: 종합소득세를 신고한 사람인 경우에는 소득금액증명으로 소득을 확인하고, 신고하지 않은 사람의 경우에는 계약서상의 계약금액으로 소득을 통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청약자의 자녀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 출생하였으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출생신고를 한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를 확인하여 출생 자녀가 부부 사이의 자녀로 인정되는 경우 청약 자격을 인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전년도 또는 당해 연도에 소득(근로 또는 사업소득 등)이 있는 경우  
: 전년도 1월1일부터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의 총 소득을 동 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 자영업자이면서 근로자인 경우  
: 전년도 사업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과 근로소득에 대한 월평균소득을 각각 산정하여 합산하되, 사업소득이 손실로 되어 있으면 사업소득은 없는 것으로 하여 근로소득만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 신청자 명의로 사업자(법인)등록이 되어 있으면서 본인이 해당 사업장의 근로자인 경우  
: 소득금액증명서상의 사업소득이 법인인감이 날인된 소득증빙서류(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근로소득지급조서 등)로 근로소득을 확인한 후 두 소득금액을 합산하여 월평균 소득을 산정

■ 일반공급 신청자격 기본요건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평택시 및 전국(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 및 기타지역)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인 자** 또는 세대주인 미성년자(자녀 양육, 형제자매 부양) 중 입주자저축 순위별 자격요건을 갖춘 자 [국내에서 거주하는 재외동포(재외국민 외국국적 동포) 및 외국인 포함]를 대상으로 주택형별 청약순위 별로 청약 접수
- 단, 청약신청자 중 같은 순위 내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해당 주택건설지역 거주자**평택시에 6개월 이상(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 거주한 자가 우선합니다.**
- \* 청약 신청이 가능한 '성년자' : ① 「민법」에 따른 성년자(만 19세 이상이거나 만 19세 미만이나 혼인으로 성년 의제되는 자)  
 ②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자녀를 양육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③ 직계존속의 사망, 실종선고 및 행방불명 등으로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는 형제자매를 부양하는 세대주인 미성년자

■ 청약 순위별 자격요건

거주 구분	청약순위	주택형	자격요건 및 안내사항
■ 평택시 및 전국지역 거주자 : 단, 평택시 6개월 이상 거주자 우선 (2022.04.27. 이전부터 연속 거주)	1순위	전용 85㎡ 이하	■ 전용면적 85㎡ 이하 : 가점제(40%) 및 추첨제(60%) 적용, 가점제 낙첨자는 추첨제 대상자로 자동 전환됨.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부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매월 약정납입일에 월납입금을 납입하여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전용면적 85㎡ 이하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③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④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전용 85㎡ 초과	■ 전용면적 85㎡ 초과 : 추첨제(100%) 적용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 요건이 아래의 1순위를 충족하는 자 ① 청약예금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인정금액이 지역별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 예치금액 이상인 자. ② 청약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현재 납입인정 범위 내에서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청약예금으로 전환한 자. ③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12개월이 경과되고 납입금액이 각 주택형에 신청 가능한 예치금액 이상인 자
	2순위	전 주택형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입주자저축에 가입한 자(청약통장 가입기간 및 예치기준금액 무관)

■ 민영주택 청약 예치기준금액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2]

구 분	평택시 및 기타지역 (특별시 및 광역시를 제외한 지역)	서울특별시 (및 부산광역시)	인천광역시 (그 밖의 광역시)
전용면적 85㎡ 이하	200만원	300만원	250만원
전용면적 102㎡ 이하	300만원	600만원	400만원
전용면적 135㎡ 이하	400만원	1,000만원	700만원
모든 면적	500만원	1,500만원	1,000만원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10조 제1항 별표2에 따라 지역별·주택규모별 예치금을 예치한 청약통장 가입자는 그 예치금 이하에 해당하는 면적의 주택에 대해 별도의 면적 변경 없이 청약 가능합니다.

※ 주택청약종합저축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개정(2016.12.30.)으로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자의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가 폐지되었습니다.

- 주택규모 선택 및 변경 절차 폐지에 따라 순위 산정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의 가입 기간 및 예치금(잔액 기준)으로 순위를 산정합니다. (청약저축, 청약예금, 청약부금의 순위 산정은 현행과 동일함)

- 예치금 잔액은 청약자가 청약 신청 당시 선택한 거주지(지역)를 기준으로 산정합니다. (\* 주민등록표등본상의 지역을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가점제 적용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1

구 분	내 용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원 모두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지 않아야 합니다.</p> <p>2) 소형·저가주택등의 가격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산정한다.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이 별표에서 같다)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나)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p> <p>다) 분양권 등의 경우: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합니다.)</p> <p>3) 무주택기간은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배우자를 기준으로 하고, 주택공급신청자의 연령이 만 30세가 되는 날부터 계속하여 무주택인 기간으로 하되, 만 30세가 되기 전에 혼인한 경우에는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혼인관계증명서에 혼인신고일로 등재된 날부터 무주택기간을 기산합니다. 이 경우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가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그 주택을 처분한 후 무주택자가 된 날(2회 이상 주택을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최근에 무주택자가 된 날을 말한다)부터 무주택기간을 산정합니다.</p>
<p>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p>	<p>■ 부양가족 인정 대상자 (청약자 본인은 제외)</p> <p>- 적용대상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 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같은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다음의 세대원으로 합니다.</p> <p>1) 배우자(세대부리 배우자 포함) : 외국인 배우자는 가족관계증명서를 통해 합법적인 배우자로 확인되면 국·내외 거주와 상관없이 부양가족으로 인정</p> <p>2) 무주택 직계존속(부모·조부모,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p> <p>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청약신청자가 세대주(분리된 배우자가 직계존속 부양 시 배우자도 세대주)로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무주택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합니다.</p> <p>나) 단, 직계존속 1인이 주택 및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 해당 직계존속 및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p> <p>※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에 따라 부양가족을 산정 시에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를 적용하지 않으므로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p> <p>다) 배우자 분리세대인 경우 청약신청자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과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을 합쳐서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 (예: 청약신청자 주민등록표등본에 1년 등재 + 계속하여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2년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p> <p>라) 주민등록표에 세대원으로 등재되어 있다가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세대주로 변경한 경우에도 최근 3년 이상 계속하여 등재 시 부양가족 인정</p> <p>마) 외국인 직계존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존속이라도 요양시설(「주민등록법」 제12조에 따라 주민등록을 하는 노인요양시설을 말함) 및 해외에 체류 중(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p> <p>바) 직계존속의 판단은 가족관계증명서를 근거로 하며, 생모라 하더라도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가족관계증명서에 등재되어 있지 않다면 직계존속 인정 불가</p> <p>3) 직계비속(자녀·손자녀)</p> <p>가) 미혼인 자녀로 한정하며, 부모가 모두 사망한 경우에는 미혼의 손자녀를 포함합니다.</p> <p>나) 만 30세 이상인 직계비속은 입주자모집공고일로부터 최근 1년 이상 계속하여 청약신청자 또는 그 배우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어 있는 경우에만 부양가족으로 인정</p> <p>다) 재혼한 경우 재혼 배우자의 자녀는 청약신청자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야 부양가족으로 인정되며, 이혼한 자녀는 기혼자이므로 제외</p> <p>라) 외국인 직계비속은 부양가족으로 인정되지 않으며, 내국인 직계비속이라도 아래의 경우처럼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에는 부양가족 인정 불가</p> <p>※ 만 30세 미만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p> <p>※ 만 30세 이상 직계비속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p>
<p>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p>	<p>1)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공급신청자의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을 기준으로 하며, 입주자저축의 종류, 금액, 가입자 명의변경을 한 경우에도 최초 가입일을 기준으로 가입기간을 산정합니다.</p> <p>2) 입주자저축 가입기간에 대한 가점 점수는 청약신청 시 자동 부여됩니다.</p>
<p>④주택소유여부 및 무주택기간 산정기준</p>	<p>①무주택기간 적용기준 및 ②부양가족의 인정 적용기준에 따라 주택소유 여부를 판정하거나 무주택기간을 산정하려는 경우에는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에 따릅니다.</p>

■ 청약 가점제 산정기준표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의 2 나목

가점항목	가점상한	가점구분	점수	가점구분	점수	확인할 서류 등
①무주택기간	32	만 30세 미만 미혼자 또는 유주택자	0	8년 이상 ~ 9년 미만	18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본 (배우자 분리세대 시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 가족관계증명서 추가 제출)</li> <li>■ 건물등기부등본, 건축물대장등본 등</li> <li>■ 가족관계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li> <li>※ 만 30세 이전에 결혼한 경우 혼인신고일 확인</li> </ul>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20	
		1년 이상 ~ 2년 미만	4	10년 이상 ~ 11년 미만	22	
		2년 이상 ~ 3년 미만	6	11년 이상 ~ 12년 미만	24	
		3년 이상 ~ 4년 미만	8	12년 이상 ~ 13년 미만	26	
		4년 이상 ~ 5년 미만	10	13년 이상 ~ 14년 미만	28	
		5년 이상 ~ 6년 미만	12	14년 이상 ~ 15년 미만	30	
		6년 이상 ~ 7년 미만	14	15년 이상	32	
		7년 이상 ~ 8년 미만	16			
②부양가족수	35	0명	5	4명	25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민등록표등·초본</li> <li>■ 가족관계증명서 ※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li> <li>■ 주택(‘분양권 등’을 포함)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 불가</li> <li>■ 만 18세 이상 성년 자녀 부양가족 인정 신청 시 추가 확인 서류 (1) 만 18세 이상 ~ 만 30세 미만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2) 만 30세 이상 : 자녀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 주민등록초본</li> </ul>
		1명	10	5명	30	
		2명	15	6명 이상	35	
		3명	20			
③입주자저축 가입기간	17	6개월 미만	1	8년 이상 ~ 9년 미만	10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청약통장 (인터넷 청약 시에 자동 계산됨)</li> </ul>
		6개월 이상 ~ 1년 미만	2	9년 이상 ~ 10년 미만	11	
		1년 이상 ~ 2년 미만	3	10년 이상 ~ 11년 미만	12	
		2년 이상 ~ 3년 미만	4	11년 이상 ~ 12년 미만	13	
		3년 이상 ~ 4년 미만	5	12년 이상 ~ 13년 미만	14	
		4년 이상 ~ 5년 미만	6	13년 이상 ~ 14년 미만	15	
		5년 이상 ~ 6년 미만	7	14년 이상 ~ 15년 미만	16	
		6년 이상 ~ 7년 미만	8	15년 이상	17	
7년 이상 ~ 8년 미만	9					

※ 본인 청약가점 점수 = ① + ② + ③

※ 제28조 제6항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과거 2년 이내에 가점제를 적용받아 다른 주택의 당첨자가 된 자의 세대에 속한 자는 제1순위에서 가점제의 적용 대상자에서 제외되며, 추첨제의 적용 대상자에 포함됩니다.

※ 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소유 주택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 제6호에 의거 신청자격 판단 시 무주택으로 인정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제외)

■ 청약 신청 유의사항

- 신청자격 및 요건 등의 기준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이며 면적은 “전용면적”을 기준으로 합니다.
- 주민등록표초본상 말소 사실이 있는 경우 해당 시·도 거주기간은 재등록일 이후부터 산정합니다.
- 청약 접수 방식 : 주택형별로 층, 동, 호 구분 없이 특별공급, 1순위, 2순위 순으로 청약 접수하되, 일반공급 중 선순위 신청접수 결과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된 주택형에 한해 차순위 청약접수를 받습니다. (단, 2순위까지 청약접수 결과 신청자 수가 일반공급 세대수의 400%에 미달하는 경우 더 이상 접수하지 않음)
- 중복 청약접수 관련 유의사항
  - 청약신청 접수는 당첨자 발표일이 동일한 주택 전체(타 주택 포함)에 대하여 중복신청이 불가(1인 1건만 신청 가능)하며, 1인 2건 이상 신청할 경우에는 청약 모두를 무효 처리합니다.  
[단, 본인이 동일주택에 대하여 특별공급과 일반공급 중복신청이 가능하나, 특별공급 당첨자로 선정될 경우 일반공급 당첨자 선정에서 제외됩니다. (본인이 동일 주택에 특별공급 중복청약은 불가합니다.)]
  - 당첨자발표일이 서로 다른 주택에 각각 청약하여 모두 당첨이 되면 당첨자발표일이 빠른 주택의 당첨만을 인정합니다.
- 본 주택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당첨자로 전산 관리 되며, 당첨자 및 세대에 속한 자는 **당첨일로부터 향후 5년간 투기과열지구 또는 청약과열지역에서 공급하는 주택의 1순위 청약접수가 제한되오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 시 청약통장 재사용 불가** : 본 주택에 청약 신청하여 당첨된 청약 관련 입주자저축 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합니다.
- **본 아파트에 청약신청하여 당첨된 청약통장은 계약체결 여부와 상관없이 재사용이 불가하며 당첨자로 전산 관리되므로 향후 다른 주택 청약 시 제한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 부적격당첨자가 소명기간 내에 해당 공급 자격 또는 선정 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은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 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 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일정기간이 지난 후 분양전환 되는 공공임대주택을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한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하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등 기준일 관련 청약신청 자격 변경 요건**
  - 1) **입주자모집공고일 전일까지** : 가) 청약예금의 신청 주택 규모를 작은 면적에서 큰 면적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변경한 경우 청약 가능  
 나) 청약부금은 85㎡ 초과 주택형에 청약하기 위해 공고일 전일까지 청약예금으로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다) 청약저축에서 청약예금으로 공고일 전일까지 전환하여 면적 및 지역별 예치금 충족 시 청약 가능
  - 2) **입주자모집공고일 당일까지** : 가) 주택청약종합저축은 공고일 당일까지 지역별, 면적별 예치금액 충족 시 청약 가능  
 나) 세대구성원에서 공고일 당일까지 세대주 변경 시 자격 충족(노부모부양 특별공급 해당)
  - 3) **청약접수일 당일까지** : 전입 등의 사유로 지역간 예금금액 차액 발생 시, 청약예금 지역간 예치금액 차액 충족 시 청약 가능(감액 사유 시 변경 불필요)

■ **주택 소유 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 기준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제4항 및 제53조**

<p>■ <b>검색대상</b> : 주택공급신청자와 그 세대원 전원</p> <p>■ <b>주택의 범위</b> : 건물등기사항 증명서, 건축물관리대장 등에 등재된 전국 소재 주택(공유지분으로 주택을 소유한 경우와 주택 용도가 있는 복합건물도 주택으로 봄), 분양권 등</p> <p>■ <b>주택처분 기준일(제1호와 제2호의 일자가 상이할 경우에는 먼저 처리된 날 기준)</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건물 등기사항증명서: 등기접수일</li> <li>2. 건축물대장등본: 처리일</li> <li>2의2. 분양권 등에 관한 계약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공급계약체결일</li> <li>2의3. 제2조 제7호의2 다목에 따른 분양권 등의 매매계약서</li> <li>가. 분양권 등의 매매 후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신고된 경우에는 신고서상 매매대금 완납일</li> <li>나. 분양권 등을 증여나 그 밖의 사유로 처분한 경우 사업주체와의 계약서상 명의변경일</li> <li>3. 그밖에 주택소유여부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 시장 또는 군수 등 공공기관이 인정하는 날</li> </ol> <p>■ <b>다음에 해당되는 경우에는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것으로 봅니다. (「주택 공급에 관한 규칙」 제53조)</b></p>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1. 상속으로 주택의 공유지분을 취득한 사실이 판명되어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라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그 지분을 처분한 경우</li> <li>2.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의 행정구역(수도권은 제외한다)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주택의 소유자가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상속으로 주택을 취득한 경우에는 피상속인이 거주한 것을 상속인이 거주한 것으로 봅니다.)하다가 다른 주택건설지역으로 이주한 경우             <ol style="list-style-type: none"> <li>가. 사용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된 단독주택</li> <li>나. 85제곱미터 이하의 단독주택</li> <li>다. 소유자의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최초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서 직계존속 또는 배우자로부터 상속 등에 의하여 이전받은 단독주택</li> </ol> </li> <li>3. 개인 주택사업자가 분양을 목적으로 주택을 건설하여 이를 분양 완료하였거나 사업주체로부터 제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처분한 경우</li> <li>4. 세무서에 사업자로 등록된 개인사업자가 그 소속 근로자의 숙소로 사용하기 위하여 법 제5조 제3항에 따라 주택을 건설하여 소유하고 있거나 사업주체가 정부시책의 일환으로 근로자에게 공급할 목적으로 사업계획 승인을 받아 건설한 주택을 공급받아 소유하고 있는 경우</li> <li>5. 20제곱미터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b>다만, 2호 또는 2세대 이상의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사람은 제외합니다.</b></li> <li>6.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의 직계존속을 포함한다)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단, 노부모부양자 특별공급 신청자 제외)             <p>※ <b>가점제의 부양가족 인정 여부 판단 시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중 한 명이라도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 모두 부양가족에서 제외합니다.</b></p> </li> <li>7. 건물등기부 또는 건축물대장 등의 공부상 주택으로 등재되어 있으나 주택이 남아 사람이 살지 아니하는 폐가이거나 주택이 멸실되었거나 주택이 아닌 다른 용도로 사용되고 있는 경우로서 사업주체로부터 제 52조 제3항에 따른 부적격자로 통보받은 날부터 3개월 이내에 이를 멸실시키거나 실제 사용하고 있는 용도로 공부를 정리한 경우</li> <li>8. 무허가건물(중전의 「건축법」(법률 제7696호 건축법 일부개정법률로 개정되기 전의 것을 말합니다.)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건축허가 또는 건축신고 없이 건축한 건물을 말합니다.)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이 경우 소유자는 해당 건물이 건축 당시의 법령에 따른 적법한 건물임을 증명해야 합니다.</li> </ol>
---

- 9. 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사람으로서 제28조에 따라 주택의 공급을 신청하는 경우
- 10. 제27조 제5항 및 제28조 제10항 제1호에 따라 입주자를 선정하고 남은 주택을 선착순의 방법으로 공급받아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해당 분양권 등을 매수한 사람은 제외합니다.)

■ 소형·저가주택 1호 또는 1세대를 소유한 경우의 특례(「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별표1 제1호 가목)

- 「전용면적 60㎡ 이하이며, 주택공시가격(「부동산 가격공시에 관한 법률」 제16조 또는 제17조, 제18조에 따라 공시된 가격을 말한다. 이하 같다.)이 8천만원(수도권 1억 3천만원) 이하인 주택 또는 '분양권 등'(소형·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만을 소유한 세대에 속한 분은 민영주택에 일반공급으로 청약하는 경우에 한해 '소형·저가주택 등' 보유기간 동안 주택을 소유하지 아니한 것으로 봅니다.

- ① 입주자모집공고일 후에 주택을 처분하는 경우 : 입주자모집공고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 ②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에 주택이 처분된 경우 : 처분일 이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처분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다만, 2007년 9월 1일 전에 주택을 처분한 경우에는 2007년 9월 1일 전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 중 2007년 9월 1일에 가장 가까운 날에 공시된 주택공시가격에 따릅니다.
- ③ '분양권 등'의 경우 : 공급계약서의 공급가격(선택품목에 대한 가격은 제외)

※ '소형·저가주택 등'에 관한 특례는 민영주택의 일반공급 청약신청 시에만 인정되므로, 특별공급 청약신청 시에는 '소형·저가주택 등'에 해당하는 주택을 소유한 경우 유주택자에 해당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무주택 판정 기준 및 '소형·저가주택 등' 특례 기준이 경합할 경우의 적용 기준

경합	주택수	적용기준
규칙 제53조 각호(제5호 20㎡ 이하 제외)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규칙 제53조 제5호(20㎡ 이하) ⊕ 소형·저가	2	제5호 미적용 및 소형·저가 특례 미적용
규칙 제53조 각호 ⊕ 제5호(20㎡ 이하)	1	제5호 미적용
규칙 제53조 각호(제5호 20㎡이하 제외)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0	모두 적용
규칙 제53조 제2호(농어가주택 등) ⊕ 제6호(만 60세 이상 직계존속 주택 소유) ⊕ 소형·저가	1	소형·저가주택 특례 미적용

## IV 청약 일정 및 신청 방법

### ■ 청약신청 일정, 신청방법 및 유의사항

구분	신청 대상자		신청 일시	신청 방법 및 신청 장소
특별 공급	일반(기관추천), 다자녀가구, 신혼부부,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2022.11.07.(월) (인터넷 : 청약Home 09:00~17:30) (정보취약자: 견본주택 10:00~14:00)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 "청약홈" 앱 - 정보취약계층 :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
일반 공급	1순위	평택시 및 전국지역 거주자	2022.11.08(화) 09:00~17:30	- 인터넷 청약 신청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 - PC : <a href="http://www.applyhome.co.kr">www.applyhome.co.kr</a> - 스마트폰 "청약홈" 앱 - 정보취약계층 : 청약통장 가입 은행 창구
	2순위	전국지역 거주자	2022.11.09(수) 09:00~17:30	

- ※ 스마트폰 앱 : 구글 플레이스토어, 애플 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 스마트폰 앱을 이용하여 청약할 경우에는 청약일 상당 기간 전에 앱을 설치하고 청약 시 사용할 공동인증서를 청약홈 앱으로 미리 저장하시거나,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청약 당일 인증서 설치 문제로 청약이 곤란할 경우에는 PC를 이용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2018.05.04.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의거 특별공급 신청 방법이 '견본주택 방문 신청'에서 '인터넷(청약Home 홈페이지 [www.applyhome.co.kr](http://www.applyhome.co.kr)) 청약 신청'으로 변경되었으며, 특별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견본주택 방문 접수(은행 창구 접수 불가) 허용됩니다. (방문 접수 시간 : 10:00~14:00)
- ※ 일반공급의 경우 인터넷 청약이 원칙이나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등에 한하여 청약통장 가입 은행 본·지점에서 청약이 가능합니다. (창구 접수 시간 : 09:00~16:00)
- ※ 청약 신청한 주택의 신청취소는 신청 당일 청약신청 마감 이전까지 가능하며, 청약 접수 종료 이후에는 어떠한 경우라도 신청 취소 및 변경이 불가하오니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시 가점항목 등 청약자격을 확인(검증)하지 않고 신청자 기재 사항만으로 청약신청을 받으며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체결 시 주민등록표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 관련 서류를 제출받아 주택공급 신청내용과 청약자격을 대조한 후 청약신청 내용과 청약자격이 일치할 경우에 계약체결이 가능하므로 청약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취소 및 부적격 결과에 대하여 사업주체는 책임지지 않으며, 당첨 취소 세대는 예비입주자에게 공급합니다.

■ 인터넷 청약서비스 이용 방법 및 절차 안내 (해당 순위 청약신청일 09:00~17:30)

- ※ 한국부동산원에서 운영하는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청약 신청자의 편의를 위하여 인터넷 청약 서비스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 ※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현재 해당 청약 순위가 발생하신 분은 ①청약통장 가입 은행 및 취급 은행을 방문하여 인터넷뱅킹 가입 및 공동인증서를 신청접수일 이전에 미리 발급받거나, ②금융인증서, ③네이버인증서 또는 ④KB모바일인증서를 미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한국부동산원(모든 은행의 청약통장 가입자)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PC 청약 시]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스마트폰 청약 시] 스마트폰 앱(구글플레이스토어, 애플앱스토어에서 “청약홈” 검색) 접속 ⇒ 인증서를 통한 로그인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청약자격 등 입력 ⇒ 청약 완료

인터넷 청약 절차에 대한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운영하는 “공고단지 청약연습”과 “청약가상체험”을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청약홈에서는 청약자의 편의 제공을 위하여 아래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으며,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더라도 청약에 제한은 없습니다.

- ① [행정정보 자동조회]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1순위 청약신청 시, 신청 과정에서 청약자가 원할 경우 주민등록표등·초본, 혼인관계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를 해당 기관으로부터 열람하여 그 정보를 즉시 보며 줌으로써, 청약에 필요한 여러 가지 자격을 판단할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선택사항이며, 청약신청 당일 지자체 통신망 연결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서비스 제공되지 않을 수 있음)
  - 「청약신청」 ⇒ 「APT 청약신청」 ⇒ 「Step2. 주택형 선택 및 행정정보 자동 조회」 ⇒ 「서비스 이용 동의 시」. 단, 미동의 시 기존과 동일한 절차대로 신청자가 직접 해당 자격을 판단하여 입력 가능
- ② [공고단지 청약연습] 공고일 다음 날부터 일반공급 청약신청 전날까지 세대원을 등록하고, 해당 세대원(성년자에 한함)의 개인정보 동의를 완료되면, 실제 청약하고자 하는 모집공고에 대한 신청자 및 세대원의 청약자격(주택 소유 및 각종 청약제한 사실)을 미리 알아볼 수 있어, 부적격자 발생을 최소화하도록 지원합니다.
  - 세대원 등록방법 : 「청약자격확인」 ⇒ 「세대구성원 등록/조회」 및 「세대구성원 동의」
  - 청약연습방법 : 「공고단지 청약연습」 ⇒ 「공고단지 청약연습 신청」. 단, 세대구성원 등록 생략 시 신청자 본인에 대해서만 청약자격 검증

※ 상기 접수시간(17:30)은 청약접수 완료 기준으로 청약 신청 진행 중이라도 접수 완료하지 않고 17:30이 경과하면 청약신청이 되지 않을 수 있으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신청 시 해당 은행에서는 청약자격에 대한 확인(검증)없이 청약 신청자가 기재한 사항만으로 청약접수를 받으며, 청약자가 인터넷 청약내용을 잘못 입력하여 당첨자로 결정될 경우에도 부적격 당첨자에 해당되므로 관련 증빙서류 등을 통해 청약내용을 정확하게 확인한 후에 입력하여야 합니다.

■ 정보취약계층(고령자, 장애인 등) 은행 방문 청약

※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모두 인터넷청약 신청이 원칙이며, 정보취약계층(고령자 및 장애인 등) 등을 제외하고는 대면 청약접수는 불가합니다.

구 분		구비사항	
일반 공급	본인 신청 시	. 주택공급신청서(청약통장 가입은행 비치) . 주택청약종합저축(청약예·부금 포함) 통장 . 예금인장 또는 본인 서명	
	제3자 대리신청 시 추가사항 (배우자 포함)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 신청자(배우자 및 직계 존·비속 포함)로 간주하며 상기 구비사항 외에 다음의 서류를 추가로 구비해야 함 <b>인감증명 방식</b> - 청약자의 인감증명서 1통(용도 : 주택공급신청 위임용) 단, 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의 경우 본국 관공서의 증명(서명인증서)이나 이에 관한 공정증서 - 청약자의 인감도장(재외동포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신청 위임 시는 제출 생략) - 청약자의 인감도장이 날인된 위임장 1통(신청 접수장소 비치)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b>본인서명확인 방식</b> - 청약자가 자필 서명한 위임장(‘본인서명사실확인서’ 상의 서명) 1통 - 청약자의 본인서명사실확인서 1통 - 대리 신청자의 주민등록증(내국인은 여권 또는 운전면허증도 가능하며, 재외동포는 외국국적동포 국내거소신고증 또는 재외국민용 주민등록증, 외국인은 외국인 등록증 또는 영주증을 말함) ※ 청약자 본인의 주민등록증 제출 생략 가능

※ 상기 제증명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또는 청약자격 전산등록 기준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상기 구비사항이 완비되었을 경우에 한하여 접수합니다. (단, 변경이 있을 경우 변경서류 제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산일 산정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 받으시기 바랍니다.

※ 청약 시 신청자의 착오로 인한 잘못된 신청에 대해서는 수정이 불가하며 이에 대한 책임은 청약 신청자에게 있습니다.

※ 주택공급 신청서의 단말기 「(전산)인지란」의 내용과 주택공급신청내용을 확인하여 주시고, 동 내용이 상이한 경우에는 당일 내로 공급신청서를 접수한 영업점에 정정 신청을 해야 합니다.

※ 본인 및 배우자가 인장 날인 없이 신청인[서명]으로 주택공급신청서를 작성한 경우는 신청자 성명을 인지할 수 있어야 하며, 주택공급신청서의 [서명]은 접수받은 직원 입회하에 신청인이 직접 기재해야 합니다.

### ■ 당첨자 발표 일정 및 장소

구분	신청대상자	당첨자 및 동·호수/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특별공급	일반(기관추천), 신혼부부, 다자녀가구, 노부모부양, 생애최초	- 일시: 2022.11.15.(화) - 확인 방법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www.applyhome.co.kr) 또는 스마트폰 앱에서 개별 조회 ※공동인증서, 금융인증서, 네이버인증서 또는 KB모바일인증서로 로그인 후 조회 가능
일반공급	1순위, 2순위	

※ 당첨자 명단은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하여야 하며 당첨자 및 동·호수 확인 시에는 인증서 로그인 후 조회 가능함을 알려드리오니 착오 없으시기 바랍니다.

다만, 고령자 및 장애인 등 정보취약계층으로서 인터넷 청약이 불가하여 견본주택(특별공급) 또는 은행창구(일반공급) 등에 방문하여 청약신청한 경우에 한하여 정보입력(주택명, 주택형, 성명, 생년월일 입력) 조회가 가능하나 정보오입력 등의 경우 부정확한 내역이 조회될 수 있으므로 인증서를 발급받으신 분은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여 정확한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인터넷 청약신청 건에 대해서는 '정보입력'에 의한 당첨내역 조회가 불가(당첨 여부에 관계없이 '당첨내역이 없음'으로 표기됨)하오니 반드시 인증서로 로그인하시어 당첨내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 및 동·호수, 예비입주자 및 예비순번 발표 시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 (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 소유 실태 및 과거 당첨 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 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 소유 실태 전산검색 결과 공급 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

※ 당첨자 명단은 상기 장소에서 본인이 직접 확인해야 하며 개별서면 통지는 하지 않습니다.(전화 문의는 착오 가능성 때문에 응답하지 않으니 이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 인터넷, 휴대폰 문자 당첨자발표 서비스 이용 안내

※ 본 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를 위해 부가서비스이며 정확한 당첨 여부는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를 통해 재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구분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주 은행 청약자)	
이용기간	2022.11.15.(화) ~ 2022.11.24.(목) (10일간)	
인터넷	-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 홈페이지(www.applyhome.co.kr)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최근 10일) - 스마트폰 앱 접속 → 청약당첨조회 → 당첨조회(10일간) ※ 당첨조회(10일) 기간이 경과한 뒤에도 마이페이지 > 청약제한사항 확인 또는 청약 소통방 > APT 당첨사실조회 를 통해 당첨내역 확인 가능	
휴대폰 문자서비스	대상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청약 신청 시 휴대폰번호를 등록하신 분 중 당첨(예비)자
	제공일시	2022.11.15.(화) 08:00 (제공 시간은 사정에 따라 변동될 수 있음)

※ 휴대폰 문자서비스는 청약신청자의 편의 도모를 위한 부가서비스로서 정확한 당첨 여부는 상기 발표일에 청약홈 > 청약당첨조회 당첨자 발표장소 등에서 본인이 반드시 재확인하여야 합니다.



VI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일정

서류 제출 대상자	입주대상자 서류 제출
특별공급, 일반공급(1순위, 2순위) 당첨자 및 예비입주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간: 2022.11.17.(목) ~ 11.21(월) 10:00~17:00</li> <li>- 장소: '포레나 평택화양' 견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li> <li>- 방문일 예약 안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 서류 접수 시 방문일 예약은 '포레나 평택화양' 홈페이지(<a href="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a>)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li> <li>-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li> </ul> </li> </ul>

-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및 공급계약 체결 시 홈페이지를 통해 방문일정 예약 후 날짜 및 시간을 확인하시어 방문하셔야 합니다.
- 당첨자 공급계약 체결 시 방문계약일 예약은 '포레나 평택화양' 홈페이지(<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하실 수 있습니다.
- 당첨자의 견본주택 방문 시 **당첨자 본인 외 1인만 입장이 가능합니다. (대리인 위임 시 대리인 외 1인만 입장 가능)**
- ※ 예비입주자 자격검증서류 제출기한 및 추첨 일정은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특별공급 예비 및 일반공급 예비 포함)

■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안내 및 유의사항

※ 공급유형 또는 당첨유형에 따라 아래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를 제출기한까지 '포레나 평택화양' 견본주택으로 제출하셔야 합니다.

제출기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당첨자 : 2022.11.17.(목) ~ 11.21(월) / 10:00~17:00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제출처	'포레나 평택화양' 견본주택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 / 031-309-0995
유의사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당첨자(예비입주자)에 한하여 서류를 접수하며, 모든 서류는 <b>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b>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하는 경우에는 인정하지 않습니다.</li> <li>-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시 구비서류 중 필요 서류가 1건이라도 미비 시에는 접수가 불가하며, 확인하여야 할 사항이 표기되지 않은 서류를 지참한 경우에도 접수가 불가합니다.</li> <li>- 신청 자격에 맞는 제증명서류(당첨자 제출 서류 참조)를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 등으로 신청내용과 제출 서류가 상이할 경우 당첨을 취소하며, 부적격 당첨에 따른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당첨자가 신청한 내용과 당첨 후 제출한 서류의 내용이 다를 경우 별도의 보완 자료 등으로 당첨 자격을 소명하여야 하며, 제출 서류로 신청 자격을 확인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소명자료 관련 추가 서류 제출 요구 시 반드시 이에 응하여야 하며, 미제출 시 불이익은 신청자 본인에게 있습니다.</li> <li>- 특별공급 인터넷 청약 신청 원칙으로 인터넷 신청청약자에 한하여 제증명서류를 계약체결 전 제출하여야 하며, 신청자의 착오로 인하여 잘못 접수된 청약신청분의 당첨으로 인한 당첨 취소 및 부적격 결과는 신청자 본인의 책임입니다.</li> <li>- 소명 자료 제출 관련 사항은 해당자에게 별도 통보 예정입니다.</li> <li>-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으며,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신청자로 간주합니다. (배우자, 직계존·비속도 대리신청자로 간주)</li> <li>- 개정된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3조 및 제52조에 따라 입주자로 선정된 자(예비입주자 포함)는 공급계약 체결 이전에 사업주체가 정한 기간에 신청자격별 구비서류를 제출하며, 청약내역과 대조, 검증하는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li> <li>- 서류 심사를 진행하고 적격 여부를 확인받아 계약 체결을 진행하여도 이후 부적격당첨자로 최종 판명될 경우에는 당첨 및 계약이 취소됩니다.</li> </ul>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자격 확인 제출 서류

\* 당첨자(예비입주자 포함) 서류 제출 기간 내 제출되어야 하며, 공통서류 및 당첨 유형별 필수서류, 해당 추가서류 포함 제출하여야 합니다.

\* 모든 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이후 발급분에 한합니다.

구분	서류유형		해당서류	발급대상	서류 발급기준 및 유의사항
	필수	추가 (해당자)			
공통서류	○		서약서 개인정보수집·이용·제공동의서	본인	· 견본주택 내 비치
	○		청약통장순위(가입)확인서		· 청약통장 가입은행으로부터 순위내역 발급 또는 주택청약 서비스 한국부동산원 홈페이지에서 청약통장 순위확인서 발급(국가유공자, 장애인 제외) *한국부동산원 청약Home(www.applyhome.co.kr)에서 청약한 경우 생략
	○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발급분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신청 불가)
	○		인감도장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외국인이 인증된 서명으로 공급 신청 시는 제출 생략
	○		신분증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 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0.27.) 6개월 이상 평택시에 계속 거주(2022.04.27. 이전부터 연속하여 거주)한 자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국내 거주기간 확인 *기록대조일을 본인 생년월일~현재로 출입국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일반(기관추천) 특별공급 제외
		○	군복무확인서(재직증명서)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2022.10.27.) 기준 10년 이상 장기 복무 군인 자격으로 신청하는 경우
	○	배우자 주민등록표등본(상세)	배우자	· 주민등록표등본상 배우자가 분리된 경우 제출(상기 등본 발급 시 유의사항에 따라 발급)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 "상세"로 발급 - 주택공급신청자 또는 배우자의 주민등록표등본에 배우자의 직계비속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	
일반 (기관추천) 특별공급	○		해당 기관장의 추천서	본인	· 해당 추천 기관장이 발행한 추천서 (기관추천 추천명부 확인으로 같음)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		다자녀가구 특별공급 우선순위 배점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한부모가족증명서		· 여성가족부의 「한부모가족 지원법」에 따라 한부모 가족으로 지정된 지 5년이 경과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상세)	피부양 직계존속	· 3세대 이상 세대구성 배정을 인정받고자 하나,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사실이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 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상세)	배우자	· 재혼가정의 자녀를 자녀수에 포함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주민등록(표)등본(상세)		· 자녀의 전부 또는 일부가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과거 주소 변동사항, 세대구성 사유 및 일자,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 등 "전체 포함"으로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자녀	· 만 19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미성년 자녀로 증명하고자 하는 경우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 사실 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혼인관계증명서(상세)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b>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b> >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b>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
	○	임신증명서류 또는 출산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 임신증명서류(임신진단서)제출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급받은 서류 제출 (임신증명서류는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임신사실확인이 가능해야 하며, 건강보험 임신·출산 진료비 지급 신청서로 제출 불가함.) - 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임신진단서만 인정 (담당의사명, 의료기관등록번호, 질병코드번호, 출산예정일, 의사면허번호 및 의료기관 연락처가 정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해당 의료기관 직인이 날인된 원본)
	○	임신증명 및 출산이행확인각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임신의 경우(견본주택 비치)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견본주택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	청약 가점점수 산정기준표	본인	· 견본주택 비치
	○	가족관계증명서	피부양 직계존속	· 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피부양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에 해당하므로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신청 불가 ※ 기록 대조일을 <b>해당자의 생년월일~현재</b> 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직계비속	· 만 30세 이전에 혼인하여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만 18세 이상의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비속	· 주민등록표등본상 공급신청자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만 30세 이상 미혼의 직계비속이 부양가족으로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3년 이상의 과거 주소 변동사항(인정받고자하는 기간 포함), 세대주 성명, 관계 등 “ <b>전체 포함</b> ”으로 발급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으로 신청한 경우 또는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공급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기록 대조일을 <b>해당자의 생년월일~현재</b> 로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생애최초 특별공급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혼인신고일 확인 · 본인 및 배우자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 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건강보험 자격득실 확인서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과거 이력 포함하여 발급)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배우자 분리세대 포함) (발급처: 국민건강보험공단)
	○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본인	· 당첨자 본인의 소득세 납부 사실을 입증하는 서류로서 입주자모집공고일 이전의 5개년도 서류(발급처 : 해당 직장, 세무서)
	○	소득증빙 서류	본인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	· 입주자모집공고일 이후 발행분으로 공급신청자 및 만 19세 이상 세대원 전원의 소득입증서류 (단, 배우자 분리세대는 배우자 및 배우자와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상에 등재된 성년인 직계존·비속의 소득입증서류) ※ Fax 수신 문서 등 복사본 접수 불가, 청약 접수 시 직인이 날인된 원본 서류 필수

	○	부동산 소유현황	본인 및 세대원	· 소득기준은 초과하나, 부동산가액 기준을 충족하는 조건으로 신청한 자는 본인과 세대구성원 전원의 서류를 모두 제출 · (발급기관) <b>대법원인터넷등기소(www.iros.go.kr)</b> >등기열람/발급>부동산>“부동산소유현황”(소유현황이 없는 경우에는 신청 결과) · <b>발급 시 (주민)등록번호 공개에 체크</b>
	○	주민등록표초본	피부양 직계존속	· 신청자의 직계존속이 공고일 현재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당첨자 또는 배우자의 동일한 주민등록등본에 등재하였음을 확인하여, 소득 산정 시 당첨자의 가구원수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1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세대주 및 세대주와의 관계를 포함하여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에는 부양가족에서 제외
	○	입양관계 증명서 또는 친양자 입양관계 증명서	본인 또는 배우자	· 입양의 경우
	○	비사업자 확인각서	해당자	· 견본주택 내 비치(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경우)
	○	혼인관계증명서	본인	· 만 30세 미만 청약자가 혼인신고일로부터 무주택기간을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	가족관계증명서	배우자	· 배우자의 직계존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본인 및 세대원 전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뒷자리포함) 전부 공개, “상세”로 발급 · 재혼가정의 자녀를 부양가족으로 산정한 경우(신청자와 동일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된 경우에 한함)
일반공급 (가점제)	○	주민등록표등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세대주와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3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3년 이상의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존속	· 기록 대조일 : 생년월일 ~ 현재로 설정 ※ 직계존속이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3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가족관계증명서		· 본인의 주민등록표등본상에 직계존속과의 관계가 확인되지 않거나 직계존속의 배우자가 없거나 배우자와 세대분리된 경우
	○	주민등록표초본		· 주민등록표등본상 청약자와 만 30세 이상 미혼인 직계비속이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로부터 과거 1년 이상 계속하여 동일한 주민등록표등본에 등재 여부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주소 변동사항,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등 모든 정보 표기 형태로 발급
	○	출입국사실증명원	피부양 직계비속	· 기록 대조일 : <b>해당자의 생년월일~현재로</b> 출입국 기록 출력 여부를 “Y”로 설정하여 발급 *만30세미만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현재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 중인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만30세이상 미혼자녀: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최근 1년 이내 계속하여 90일을 초과하여 해외에 체류한 경우 부양가족에서 제외
	○	혼인관계증명서		· 만 18세 이상의 미혼인 직계비속을 부양가족으로 인정받고자 하는 경우, '상세'로 발급
해외근무자 (단신부임) 입증서류	○	해외 체류 증빙서류	본인	· 생업에 직접 종사하기 위해 세대원 중 <b>청약자 본인만 해외에 체류</b> (90일 초과 및 연간 183일 초과)하고 있는 경우 - 국내 기업·기관 소속 해외 주재원 및 출장자 : 파견 및 출장명령서 등 - 해외취업자 및 사업체 운영자 : 현지 관공서에서 발급받은 사업·근로 관련 서류, 취업·사업 비자 발급내역 - 근로자가 아닌 경우(※반드시 제출): ① 비자 발급 내역 ② 계약서 또는 근로계약서 등 ※ 유학, 연수, 관광, 단순체류자의 경우 생업사정을 인정할 수 없으며, 생업관련 증빙서류 불가능한 자 또한 생업사정 불인정
	○	출입국사실증명원	배우자 및 세대원 전원	· 배우자 및 세대원이 생업 등으로 해외 체류 여부 확인 (*출생년도부터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까지 기간 지정으로 발급)
	○	비자 발급내역 및 재학증명서 등	본인 및 세대원	· 여권 분실 및 재발급으로 체류국가 확인이 불가능한 경우 ※ 비자 발급내역, 재학증명서 등 체류국가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통해 소명을 하여야 하며, 세대원이 당첨자(청약 신청자)와 동일한 국가에 체류하지 않았다는 사실(국외 체류기간 연속 90일 미만)을 증명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단신부임 인정 불가
부적격 통보를 받은 자	○	해당 주택에 대한 소명자료	해당 주택	· 건물등기사항전부증명서 또는 건축물대장등본(가옥대장등본 포함) · 무허가건물확인서 또는 철거예정증명서 · ‘소형·저가주택 등 임을 증명하는 서류(공시가격증명원 등) · 기타 무주택자임을 증명하는 서류
	○	당첨사실 소명서류	해당 주택	· 해당 기관의 당첨사실 무효확인서 등 사업주체가 요구하여 인정하는 서류
대리인 제출 시 추가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	인감증명서, 인감도장	공급신청자 (본인)	· 용도: 자격 확인 서류 제출 위임용 ※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 시 대리인 접수 불가함.
	○	위임장	공급신청자 (본인)	· 당첨자의 인감도장 날인(견본주택 내 비치)
	○	대리 신청인 신분증 및 인장(서명)	대리인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사본(또는 국내거주사실증명서) · 외국인인은 외국인등록증 사본(또는 외국인등록사실증명서)

※ 주민등록표등·초본 발급 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를 생략하여 발급하고 있으니, 세대주 기간 산정, 배우자 관계 확인 등이 필요한 경우 반드시 “세대주 성명 및 관계”에 대한 표기를 요청하여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표등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세대 구성 사유, 현 세대원의 세대주와의 관계, 현 세대원의 전입일/변동일/변동사유. 교부 대상자 외에 다른 세대원의 주민등록번호 뒷자리

- 주민등록표초본 발급 시 기재(포함)되어야 할 내용 : 개인 인적사항 변경내용, 과거의 주소 변동 사항(전체 포함), 과거의 주소 변동사항 중 세대주의 성명과 세대주와의 관계

※ 본인 이외에는 모두 대리인(배우자, 직계존·비속 포함)으로 간주합니다.

■ **신혼부부·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 증빙 서류**

해당자격		소득입증 제출서류	발급처	
근로자	근무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증명서('매월 신고 납부대상자 확인'으로 발급) ※ 연말정산 등으로 인해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이 발급되기 전에 특별공급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전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을 제출	① 해당직장 ② 해당직장/세무서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사본(직인 날인) ※ 근로 기간이 1개월을 경과하지 못하여 근로소득 원천징수부가 발급되지 않는 경우에는 본인과 동일한 직장의 동일 직급, 동일 호봉인 자의 전년도 근로자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을 추정	①, ② 해당직장	
		① 재직증명서 ②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② 해당직장	
		①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②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 근무처별 소득명세서상 “주(현)총급여금액을 재직증명서상 근무기간으로 나누어 월평균소득을 산정	①, ② 해당직장	
	휴직	전년도 일부기간 휴직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정상근무 개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전년도 전체기간 휴직 후 금년 복직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금년도 월별 근로소득원천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①, ② 해당직장
		월평균소득 추정이 불가능한 자 (계속 휴직)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본인과 동일한 직장/직급/호봉인 사람의 전년도 근로자 원천징수영수증과 재직증명서를 제출받아 월평균소득 추정 ※ 서류 제출이 어려울 경우 휴직 전 정상 재직기간의 근로계약서나 월별급여명세서 혹은 전전년도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①, ② 해당직장
자영업자	일반과세자 / 간이과세자 / 면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①, ② 세무서	
	간이과세자 중 소득금액증명이 발급되지 않는 자 신규사업자 등 소득입증서류를 제출할 수 없는 자	① [국민연금 가입자] 연금산정용 가입내역 확인서 ※ 표준(기준)소득월액으로 월평균 소득을 산정 [국민연금 미가입자] 부가가치세 확정신고서 ※ 입주자모집공고일과 가장 가까운 시기 신고한 신고서상 금액(매출액-매입액) 및 사업기간으로 월평균소득을 산정 ② 사업자등록증 사본 또는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국민연금 관리공단 ② 세무서	
	법인사업자	①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② 법인등기부등본 원본	① 세무서 ② 등기소	
기타	보험모집인, 방문판매원	① 재직증명서(직인 날인) ② 전년도 사업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 날인), 전년도 사업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 원본 또는 해당 회사의 급여명세서(직인 날인)	① 해당직장 ② 세무서, 해당직장	
	국민기초생활수급자	① 국민기초생활수급자 증명서 원본 ※ 공급신청자가 국민기초생활수급자이면 해당 세대 전체가 기준소득 이하인 것으로 간주	① 주민센터	
	비정규직 근로자 / 일용직 근로자	① 근무기간 및 총급여액 명시된 근로계약서(직인 날인) 또는 월별급여명세서(근로소득지급명세서) ② 상기 서류가 없는 경우 연금산정용 가입내역확인서 ※ 근로계약서 및 월별 급여명세서에 사업자의 직인 날인 필수	① 해당직장 ② 국민연금공단	
무직	전년도 1월 1일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까지 중 소득이 있는 경우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③ 금년도 월별 소득자별 근로소득 징수부 또는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원천징수증명서 ※ 해당 기간의 소득이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포함)에 해당할 경우 '비정규직 근로자/일용직 근로자' 소득 입증 서류를 준용함	① 건본주택 ② 해당직장/세무서 ③ 해당직장	
	소득이 없는 경우	① 비사업자 확인 각서 ② 사실증명(소득세 신고 사실이 없음을 확인)	① 건본주택 ② 세무서	

\* 상기 소득입증 관련 서류 외 대상자의 적격 여부 확인을 위해 추가 서류 요청을 할 수 있습니다.

\* 전년도 휴직기간이 있는 경우 재직증명서상 휴직기간을 명시하여야 하며, 정상적으로 근무한 기간에 대한 소득증빙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 생애최초 특별공급 자격 및 소득세 납부 입증 제출 서류(청약신청자 본인)

구 분	해당자격	증빙 제출 서류	발급처
자격 입증서류	근로자	① 재직증명서	① 해당직장/세무서
	자영업자	① 사업자등록증 사본	
	근로자, 자영업자가 아닌 자로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①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원본(직인날인) 또는 소득금액증명 원본(납부내역증명 포함)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분에 한함	
소득세 납부 입증서류	5개년도 소득세 납부내역 (근로자, 자영업자, 근로자 및 자영업자가 아닌 분으로 과거 1년 이내 근로소득세 또는 사업소득세 납부자)	· 5개년도 소득세 납부증명서류로 아래에 해당하는 서류 중 하나 ① 소득금액증명원(근로자용 또는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및 납부내역증명서(종합소득세 납부자) *결정세액 환급 확인자의 경우 과세표준확정신고서 추가 제출 ② 근로소득 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사업소득 원천징수영수증 ③ 일용근로소득 지급명세서(원천징수영수증) 또는 일용근로자용 소득금액증명	① 세무서 ② 해당직장 ③ 해당직장/세무서

- \* 해당 소득세 납부의무자이나 소득공제·세액공제·세액감면 등으로 납부 의무액이 없는 경우도 입증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자 중 결정세액이 환급 또는 없는 경우에는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제출(해당년도 모두)하여야 합니다.
- \* 해당직장, 세무서 등 해당기관의 직인 날인이 없거나 직인 날인된 서류를 팩스로 전송받은 경우는 인정하지 않습니다. (단, '종합소득세 과세표준 확정신고 및 납부계산서'를 국세청 홈택스에서 발급받은 경우 직인날인 불필요)
- \* 소득입증관련 모든 서류는 성명, 주민등록번호가 모두 표시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VII 계약 체결**

■ 계약 체결 일정 및 장소

-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및 계약금을 확인 후 계약기간 내 지정된 공급대금계좌로 계약금 납부 및 계약 구비사항을 준비하여 계약장소를 방문하시어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구 분	계약기간	계약장소
당첨자 계약 체결 *예비입주자 공급(추첨) 및 계약 일정은 추후 별도 통보	2022.11.28.(월) ~ 2022.11.30.(수) (3일간) 10:00~17:00 *정부 방침에 따라 변동 가능	- 장소: '포레나 평택화양' 건본주택(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 - 방문일 예약 안내 - 당첨자 서류 접수 시 방문일 예약은 '포레나 평택화양' 홈페이지 ( <a href="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a> ) 방문예약시스템을 통해 예약 가능 * 당첨자의 예약 방문일자 이외에는 방문이 불가합니다.

■ 계약 시 구비 서류

구분	구비 서류	제출 유형		발급기준	서류 제출 대상 및 발급 유의사항
		필수	해당자		
본인 계약 시	신분증	○		본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추가 개별 통지 서류		○	-	· 사업주체가 적격여부 확인을 위해 요구하는 서류(개별 통지)
	인감증명서 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		본인	· 용도: 아파트 계약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본인 계약 시에 한해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 당첨자 자격 확인 서류 제출 기한 내 제출한 경우 제외
	인감도장	○		본인	· 인감증명서상의 도장과 일치해야 함. ·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계약 시 서명으로 대체
	계약금 입금증	○		-	· 건본주택에서는 수납 불가. 무통장입금 또는 인터넷뱅킹 이체
	수입인지(인지세)	○		-	· 수입인지 세액 : 1억원 이상 ~ 10억원 이하 15만원, 10억원 초과 35만원 <수입인지 구입처> - 오프라인 : 우체국, 은행(해당 기관 영업시간에 방문하여 구입) - 온라인 : 전자수입인지( <a href="http://e-revenuestamp.or.kr">e-revenuestamp.or.kr</a> ) 사이트에 종이문서용 전자수입인지 구입 후 출력

대리인 계약 시 추가 제출 서류 (본인 외 모두 제3자)	계약자(당첨자)의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	본인	· 용도 : 아파트 계약 위임용 ※본인 발급용에 한해 가능하며, 대리인 발급용은 절대 불가함. · 계약자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제출자는 대리 계약 불가
	위임장	○	-	· 견본주택 내 비치, 계약자의 인감도장 날인
	대리인 신분증, 인장	○	대리인	·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 재외동포는 국내거소신고증, 외국인인 외국인등록증

※ 상기 제 증명서류는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2022.10.27.) 이후 발행분에 한하며, 인감증명서의 용도란은 공란으로 발급하므로 용도를 직접 기재하여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단, 변경이 있는 경우 변경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 ■ 공급대금 납부 계좌 및 납부 방법

구분	금융기관명	계좌번호	예금주
계약금 / 중도금 / 잔금	농협은행	355-0081-4298-13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분양대금은 지정된 계약기간에 상기 계좌로 납부 후 견본주택을 방문하여 계약 체결을 완료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입금 가능)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 성명을 필히 기재하여야 합니다. (예시: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공급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번호 031-309-0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지정된 분양대금(계약금, 중도금, 잔금)은 납부 지정일자에 입금하시기 바라며, 사업주체에서는 별도의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타인 명의 등 계약금 납부주체가 당첨자와 상이하거나 불분명하게 입금된 경우 계약금 미납 및 계약 미체결로 처리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제반 문제에 대하여 사업주체에서는 일체의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무통장 입금자 중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 서류 확인 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될 경우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공급금액은 인정치 않으며,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 대상에 해당되지 않습니다.

## ■ 계약자 중도금 대출 안내

- 중도금 대출 관련 세부 내용은 견본주택에서 별도 공지 및 안내 예정입니다.

- 견본주택(분양사무소)은 대출취급기관이 아니므로 청약, 계약 시 분양상담사가 대출 여부에 대해 확정할 수 없으며, 추후 대출취급기관 심사를 통하여 대출 여부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에 대하여 분양상담(전화상담 포함) 내용을 근거로 사업주체에 대출 책임을 요구할 수 없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본 아파트의 중도금 대출은 계약금(총 공급금액의 10%) 완납 시 무이자 대출 조건으로 총 공급금액의 60% 범위 내에서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는 대출취급기관에서 대출심사 적격자에 한하여 대출신청이 가능합니다.

- 주택건설지역인 평택시는 비청약과열지역으로 관계법령에 따라 주택도시보증공사 또는 주택금융공사 중도금 대출보증(9억원 이하 주택)은 세대당 2건(기존 보증 이용건수를 합산함. 투기지역, 투기과열지역,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세대당 1건)으로 제한되었으며,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조건에 따라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개인의 주택담보 대출 유무, 기본양런 중도금 대출여부 등에 따라 중도금대출이 개인에 따라 상이하므로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에 의하여 개인별로 대출비용이 축소되거나 대출 자체가 거부될 수 있습니다.

- 시행위탁자는 고객의 편의를 위하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을 알선할 뿐 개별 고객의 대출비용 축소 및 대출불가에 대하여서는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이 선정되지 않았음을 인지하고, 대출취급기관 선정 시 해당 주택건설지역인 경기도 평택시가 아닌 그 외 지역의 대출취급기관(본점 및 지점 등)이 선정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원거리에 위치할 수 있어 중도금 대출(권리의무승계 계약성상 양도인 및 양수인의 대출취급기관 방문 관련 등)과 관련하여 불편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은 시행위탁자가 지정하며 제1금융권 지정이 불가할 경우 제2금융권 등으로 지정할 수 있으며 제2금융권 등 이용에 따른 문제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법률의 변경, 정부의 부동산 정책(주택담보대출의 제한 등), 금융시장 환경에 따라 대출조건 등이 제한 및 변경될 수 있음을 인지하고, 이러한 제한에도 공급대금을 계약자 본인 책임하에 기일 내에 납부하여야 합니다.

- 대출취급기관의 대출심사에 의하여 대출비용 축소 또는 대출불가 시 자기 책임하에 분양대금을 조달하여 납부일정 및 납부금액에 따라 납부하여야 하며, 미납부 시 공급계약서에 따라 연체료 발생, 계약해제 사유가 될 수 있으며 계약해제 시 위약금이 발생하오니 신중하게 청약, 계약에 임하시길 바랍니다.

- 대출 미신청 또는 개인신용불량 등 계약자의 귀책사유로 대출이 실행되지 못할 경우 무이자 대출 미적용에 따른 공급금액 인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

- 중도금대출에 필요한 보증수수료, 인지대 등 제반 경비는 계약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

- 중도금대출 실행 이후 대출기간 이내라도 계약자의 금융신용불량 등으로 결격사유가 발생할 경우 대출취급기관의 중도금대출 중단 요구에 따라 공급대금이 납부되지 않을 경우 계약이 해제될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의 잘못이 아닌 계약자의 결격사유에 기인하였으므로 이 점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시행위탁자가 알선한 대출의 대출기간 만료 시(준공 후 미입주 등) 대출취급기관의 대출기간 연장 및 공정률에 따른 중도금 납입일자의 변경에 대해 별도의 절차 없이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적격 대출 시 대출취급기관과의 중도금 대출 협약 등에 의거하여 대출취급기관에 중도금 대출을 위한 계약사항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으며, 계약자는 이에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 전까지 대출금을 상환하거나 담보대출로 전환하여야 하며, 대출금을 담보대출로 전환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급금액을 전액 완납하고 소유권 이전 및 근저당권 설정에 필요한 서류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담보대출에 따른 보증수수료, 인지도 등 제반 수수료 및 근저당설정 비용 등은 대출취급기관이 정한 부담 주체가 납부하여야 하며, 담보 전환 시 대출한도, 대출금리 등 기타 대출조건 등은 대출취급기관의 조건에 따르기로 합니다.
  - 금융시장의 경색 또는 변동성으로 인하여 선정된 중도금 대출취급기관의 특수성(업종, 업태 등) 및 대출 형태에 따라 부득이 계약자의 신용등급에 부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 다실 계약자, 외국인, 법인의 경우 중도금 대출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본 입주자모집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분양계약서의 약관에 따릅니다.

## ■ 계약 체결 조건 및 유의사항

- 당첨유형별 입주대상자 자격 확인 서류 일체를 제출한 당첨자는 당첨 동·호수의 공급대금 확인 후 지정된 분양대금 계좌(계약금)로 계약금 납부하고 반드시 지정된 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계약금은 반드시 지정계좌로 입금하여야 합니다. (타 은행 계좌이체 및 무통장 입금 가능)
- 당첨자가 정당계약기간 내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또는 계약금을 입금 후 계약을 체결하지 않을 경우 모두 당첨권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하며, 입금된 계약금은 사업주체가 규정한 일정기간 이후 환불이 가능하며, 환불금액에 대하여 별도의 이자가 발생되지 않습니다.
- 지정 계약기간 내에 계약금 전부 또는 일부 금액을 납부하더라도 계약기간 내 계약 미체결(공급계약서 미발행) 시에는 계약을 포기한 것으로 간주합니다.
- 계약기간 종료 이후 미계약 세대 발생 시 특별공급 및 일반공급 예비입주자에게 우선 공급하고 이후 잔여 세대 발생 시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의뢰하여 해당 주택건설지역에 거주하는 무주택세대구성원인 성년자를 대상으로 인터넷 접수의 방법으로 추천하여 입주자를 모집합니다.
- 주민등록번호 위조, 타인의 주민등록증 절취, 청약 관련 서류 변조 및 도용 등 불법행위로 적발된 경우 계약체결 후라도 당첨취소 및 고발 조치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합니다.
- 부적격 당첨자로 통보된 자는 계약체결이 불가하며, 부적격 당첨 소명기간 내에 소명을 할 경우에 한하여 계약 체결이 가능합니다.
- 당첨자의 계약기간은 주택소유실태 및 과거 당첨사실 유무 전산검색 소요기간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당첨자에 대한 주택소유실태 전산검색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 등 적격자 (정당 당첨자)에 한하여 계약을 체결하고 부적격자는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하여 적격자로 재확인 후 계약을 체결합니다.[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 지정계약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이중당첨자 및 부적격 당첨자의 처리 및 계약취소에 관한 사항**
  -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에 따라 당첨자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해 국토교통부 전산검색 및 계약 신청 시 제출서류 확인결과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를 달리한 부적격자로 판정된 자에 대해서는 그 결과를 즉시 통보하며, 통보한 날로부터 7일 내에 '주택소유여부 확인 방법 및 판정기준'을 참고하시어 소명 자료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또한 정당한 사유 없이 동 기한 내에 소명자료를 제출하지 아니할 경우 당첨 및 계약을 취소합니다.
  - \* 계약체결 후이라도 다음 중 하나에 해당될 경우 입주자 선정 대상에서 제외되고, 공급계약을 취소하며 당첨자로 관리합니다.(단, 부적격 당첨자 중 부적격 당첨 사유가 고의성 없는 단순 착오 기재가 사실임을 증명하는 경우 당사 분양사무소에 방문하여 “계좌부활요청서(분양사무소 내 비치)” 작성 시 청약통장 재사용이 가능하나, 본 주택의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촉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 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 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당첨이 제한됩니다.
    - ① 1순위 당첨자 중 최초 입주자모집공고일 현재 주택의 소유 여부가 신청한 사실과 다른 경우
    - ② 특별공급 당첨자 중 과거 다른 주택에 특별공급 자격으로 당첨된 사실이 있는 경우
    - ③ 부적격자는 사업주체로부터 부적격자가 아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토록 통보받은 날부터 정당한 사유 없이 일정기간(7일) 내에 증명서류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당첨된 주택은 예비당첨자에게 공급합니다.
- 당첨 및 계약체결 후라도 부적격 및 부정행 방법으로 당첨되었을 경우 일방적으로 해약 조치될 수 있으며, 관계법령에 의거 처벌될 수 있습니다. 또한 계약금을 제외한 이자 및 금융비용 등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 계약 신청 시 제출한 서류가 사실이 아님이 판명된 경우에는 이미 행하여진 신청은 무효로 하고 기 체결된 계약은 취소하며 당첨통장 재사용이 불가능할 뿐만 아니라 당첨자로 관리하며 이로 인한 모든 책임은 신청인에게 귀속됩니다.



- 청약접수일자와 관계없이 당첨자 발표일이 우선인 주택에 당첨이 되면 본 주택의 당첨을 취소합니다.
- 본 아파트에 신청하여 당첨될 경우 계약 체결 여부와 무관하게 당첨자로 전산 관리합니다.
- 행정구역 및 단지 내 시설 명칭, 동·호수는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에 따라 공급 시의 명칭과 상이할 수 있으며, 변경 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부동산 거래신고 의무화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제3조 규정에 의거 부동산 계약 시 계약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 관할 소재지의 시장·군수 또는 구청장에게 공동으로 '부동산거래신고'해야 합니다. 따라서 부동산 거래신고에 따른 필요 서류를 사업주체에 제공해야 하며, 신고를 거부하거나 서류 미비·미제출로 인하여 발생하는 과태료 부과 등의 모든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으니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 거래로 인해 발생하는 인지세(가산세) 및 제세공과금 등은 계약체결 시 납부하여야 하며, 이를 납부하지 않을 경우 가산세가 발생하는 점을 양지하시기 바랍니다.
- 부동산계약서는 인지세 과세대상으로 수입인지(기재금액 1억원 이상~10억원 이하인 경우 15만원, 10억을 초과하는 경우 35만원)를 계약서 작성 시점에 계약서에 첨부하여야 하며, 해당 수입인지는 소유권이전등기 시 필수 제출 서류로 계약서와 함께 보관하여야 합니다.
- 기존 소유 주택 처분조건 세대 유의사항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8조 제11항에 따라 추첨제 기존주택 처분조건으로 공급받은 경우 본 아파트 입주예정일 이전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계약에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른 신고를 하지 않거나 「부동산등기 특별조치법」 제3조에 따른 검인을 받지 않으면 본 아파트에 입주할 수 없습니다. 또한, 본 아파트의 입주가능일부터 6개월 이내에 기존 소유 주택의 소유권 처분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공급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 최초 공급계약자가 기존주택처분 서약 미이행 및 불법행위 등으로 인해 공급계약이 취소될 경우 명의변경을 통하여 분양권을 매수한 양수인은 그에 따른 피해를 보호받을 수 없으며, 사업주체 등에게 이와 관련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기타 계약조건은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9조에 준합니다.

### ■ 부적격 당첨자의 명단관리(「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 사업주체는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2조 제3항 및 제57조 제8항에 따른 부적격 당첨자가 소명기간에 해당 공급자격 또는 선정순위가 정당함을 소명하지 못하고 제58조 제4항에도 해당하지 못하여 당첨이 취소되는 경우에는 7일 이내에 그 명단을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에 통보합니다.
- 주택청약업무수행기관은 제58조 제1항에 따라 통보받은 자의 명단을 당첨자 명단에서 삭제하는 등 전산 관리하고, 제57조 제7항에 따라 사업주체에게 전산 검색 결과를 통보할 때 제58조 제3항에 해당하는지를 표시하여 통보하여야 합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58조 제1항에 따라 당첨이 취소된 자는 당첨일로부터 수도권 및 투기·청약과열지역 1년, 수도권 외 6개월, 위축지역 3개월(공급신청하려는 지역기준) 동안 다른 분양주택(민간사전청약주택 및 분양전환 공공임대주택 포함)의 입주자로 선정될 수 없습니다.
- 사업주체는 부적격 당첨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58조 제1항에도 불구하고 당첨자로 봅니다. 다만, 제57조 제7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합니다.
  - ① 같은 순위(제27조 및 제28조에 따른 순위를 말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에서 경쟁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순위의 자격을 갖춘 자
  - ② 같은 순위에서 경쟁이 있는 경우에는 사업주체가 제52조 제3항에 따른 소명기간에 재산정한 가점제 점수(가점제를 적용하여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또는 공급 순차별 자격 (순차별로 공급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이 해당 순위의 당첨자로 선정되기 위한 가점제 점수 또는 자격 이상에 해당하는 자

## VIII

### 발코니 확장 및 추가 선택 품목

#### ■ 발코니 확장

##### 1) 발코니 확장 공사비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공급대금	계약금(10%)		잔금(90%)	
		계약 시	입주 시	계약 시	입주 시
74A	6,500,000	650,000	650,000	5,850,000	5,850,000
74B	7,200,000	720,000	720,000	6,480,000	6,480,000
74C	6,700,000	670,000	670,000	6,030,000	6,030,000
74D	6,700,000	670,000	670,000	6,030,000	6,030,000
84A	7,500,000	750,000	750,000	6,750,000	6,750,000
84B	7,300,000	730,000	730,000	6,570,000	6,570,000
99A	8,500,000	850,000	850,000	7,650,000	7,650,000

## 2)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계좌	농협은행	301-0318-5758-51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추가 선택 품목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 발코니 확장대금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번호 031-309-0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발코니 확장공사의 계약내용 및 계약금, 중도금, 잔금 납부일정과 납부금액은 발코니 확장공사 계약서에 준하며, 사업주체는 공사금액 납부 약정일을 계약자에게 별도로 통보할 의무를 지지 않습니다.
-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3) 발코니 확장 관련 유의사항

- ※ [건축법시행령 제2조 제14호, 제46조 제4항·제5항]의 규정에 의해 공동주택의 발코니는 관계법령이 허용하는 기준 내에서 구조 변경할 수 있으며, 발코니 구조 변경은 최초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 총액범위 내에서 시공사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함(2008.10.29.개정·시행)
- 발코니 확장 계약은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비용은 공동주택 분양금액과 별도로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며, 발코니 확장 공사비 분양금액은 확장으로 인한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로 인한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발코니 확장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확장 위치 등 세부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과 가변형 칸막이 제거 변경은 에너지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므로 시공사가 직접 시공하도록 제한합니다.
- 발코니 확장 창호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규격 및 사양(유리, 창틀)이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 세대의 발코니에 필요시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사용 또는 우천으로 소음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세대 간 조건에 따라 단열재의 위치, 벽체의 두께, 세대 간 마감 등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하부 세대의 확장으로 인하여 비확장 세대의 발코니 바닥과 천정에 단열재가 추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
- 실내 습도 등 생활 습관에 따라 발코니 사시 및 유리, 기타 확장 부위에 결로현상이 발생할 수 있으니 입주자께서 환기 등으로 예방하셔야 하며 이로 인한 하자보수 등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면적은 발코니 면적 산정기준에 의하여 계산한 면적이므로, 실사용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발코니 확장공사비에는 통합취득세가 포함되지 않았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 통합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제품에 관한 사항은 분양 카탈로그 및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비확장 세대는 확장형 세대와는 다르게 공간이 협소하여 상이한 내부 인테리어가 적용되므로 계약자는 계약 전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상담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비확장 세대는 각 발코니별 바닥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습니다. (발코니 수전이 설치된 곳에는 바닥배수구가 설치됨)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발코니 확장 계약이 불가합니다.
- 계약체결 이후 관계법령 해석상 차이 등의 사유로 발코니 확장공사가 일부 변경될 경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발코니 확장 선택 시 동일평형이라도 해당 동·호수에 따라 확장구간의 폭, 깊이 및 천장고가 다소 상이할 수 있습니다. (허용오차 내)
- 발코니 확장 세대는 인접 세대 또는 상부 세대가 비확장일 경우와 세대 내 비확장 발코니에 면하는 경우 추가 단열재 시공으로 인하여 침실 및 거실 발코니 벽체 부위에 단차(약 90~100mm 내외)가 생길 수 있습니다.
- 발코니 확장 시와 비확장 시 발코니 바닥 단차 부위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창호 및 각종 가구류(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및 각종 액세서리류 등), 확장 시 제공 품목 구성이 확장 시와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발코니 확장 선택사항 신청서, 계약서 등으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비확장 시 각종 무상선택형 또는 유상옵션 추가 선택이 불가합니다.
- 발코니 확장 세대는 비확장 세대와 조명기구 및 배선기구, 세대 분전반, 통신단자함 등 각종 기구류의 타입, 위치 및 설치 수량이 상이할 수 있습니다.
- 일부 비확장 세대는 주방가구 설치를 위하여 일부 주택형의 요철이 있는 실내 간벽을 채워 요철을 삭제하였으므로 안목 치수상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발코니 비확장 세대는 실내 유효면적 및 천장 배관 등에 의하여 여건상 우물천장이 설치되지 않으며, 거실 조명은 침실1(안방)과 동일한 조명으로 시공됩니다.
- 본 사업은 비확장시 실내와 발코니 사이에 분합문이 이중창으로 설치되며, 발코니 외벽에 별도의 창호는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 1)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품목 및 금액

#### [1] 현관 중문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74A	74B	74C	74D	84A	84B	99A	비고
현대L&C 현관 중문 (3연동)	-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1,500,000	-	알루미늄 프레임, 디자인유리, 비산방지필름 시공
현대L&C 현관 중문 (2연동)	1,500,000	-	-	-	-	-	-	
양문형 현관 중문	-	-	-	-	-	-	1,700,000	

- ※ 현관 중문은 평형대에 따른 인테리어 디자인을 고려하여 디자인되었으며, 평형에 따라 프레임과 유리에 지정된 색상이 다르니, 분양사이트, 견본주택 및 선택 신청서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 74A, 74B타입의 현관 중문은 견본주택 84B타입에 전시된 현관 중문 디자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레임 및 유리 색상)
- ※ 74C, 74D타입의 현관 중문은 견본주택 84A타입에 전시된 현관 중문 디자인을 기준으로 합니다. (프레임 및 유리 색상)
- ※ 74A, 74D타입의 현관 중문은 스프링클러 배관 구조상 중문 프레임 상부를 천장에 매립할 수 없으므로, 상부 프레임이 실내 경량천장보다 밑으로 설치됩니다.
- ※ 3연동 중문의 경우 옵션 미선택 시, 신발장 측면에 벽체가 시공되며, 디딤판이 벽체선에 맞춰서 이동하여 설치됩니다.
- ※ 99A 타입의 양문형 현관 중문은 디자인 제작 중문으로 견본주택과 동일 성능의 제품으로 설치되며, 설치업체는 본 공사 시 입찰되어 선정되므로 프레임 디테일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2]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74A	74B	74C	74D	84A (개별침실형)	84A (주방-알파룸확장)	84B	99A	비고
거실/주방/복도 바닥 타일	4,000,000	4,400,000	4,000,000	4,000,000	4,400,000	5,100,000	4,400,000	4,800,000	이탈리아 REFIN CE-TUNE SNOW W

- ※ 옵션 미선택 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 [3] 쉼브론 패턴 원목마루 옵션과 동시에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 바닥 타일 옵션 선택 시 거실, 주방, 복도에 타일이 시공되며, 침실은 기본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시공범위의 자세한 범위는 추가선택품목 신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 ※ 빌트인 가구 하부에는 옵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타일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바닥 타일 옵션 선택 시, 타일과 각 침실의 강마루가 만나는 경계에는 금속 재료분리대가 시공됩니다.
- ※ 옵션 바닥 타일은 무광 제품으로 유광 타일에 비하여 다소 안전하나, 사용상 부주의에 따른 낙상사고 발생에 유의해야 하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이에 책임지지 않습니다.
- ※ 본 공사 시 바닥 타일 나누기도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74B타입의 경우 3면 개방형 구조로, 실내 복도 면적이 다른 74타입에 비해 넓어 옵션 금액이 상이합니다.
- ※ 84A타입의 알파룸 경량벽체 확장 여부 따라 옵션 타일의 시공범위가 달라지며, 시공범위는 해당 타입의 추가 선택 품목 신청서를 참조 바랍니다.

#### [3] 쉼브론 패턴 원목마루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74A	74B	74C	74D	84A	84B	99A	비고
쉼브론 패턴 원목마루	8,000,000	8,000,000	8,000,000	8,000,000	8,900,000	8,500,000	10,100,000	이건산업 원목마루 쉼브론 패턴

- ※ 옵션 미선택 시, 강마루로 시공됩니다.
- ※ [2] 바닥 타일 옵션과 동시에 선택하실 수 없습니다.
- ※ 원목마루 옵션 선택 시 거실, 주방, 복도, 침실 등 마루 영역의 바닥재가 업그레이드되어 시공되며, 시공범위의 자세한 범위는 추가선택품목 신청서를 참고 바랍니다.

- ※ 빌트인 가구 하부에는 옵션 선택 여부와 관계없이 마루, 타일 등 별도의 마감재가 시공되지 않습니다.
- ※ 원목마루 자재 특성상 색상과 패턴은 균일하지 않으며, 자재의 허용 오차 내에서 시공 시 요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본공사 시 마루 패턴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원목마루는 사용자의 주기적인 유지관리가 필요한 고급 바닥재입니다.

**[4]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74A	74B	74C	74D	84A (개별침실형)	84A (주방-알파룸확장)	84B	99A	비고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5,300,000	4,100,000	6,200,000	6,200,000	6,200,000	13,000,000	10,400,000	16,200,000	상부 플랩장 1면 및 간접조명 설치, 세라믹 벽체 및 상판 업그레이드, 후드/조명/싱크볼 업그레이드
[추가 옵션] 아일랜드 하부장 확장	2,700,000	2,700,000	-	-	-	-	1,700,000	1,700,000	탑상형 타입 아일랜드 하부장 확장 추가

- ※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에 따라 변경되는 상부장 및 가구 형태의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이트, 견본주택 및 추가선택품목 신청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84A타입은 디렉스 주방형(주방-알파룸 확장) 선택 세대의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에는 히든 훔바 및 키큰수납장, 팬트리 선반가구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 ※ 84B, 99A 타입은 프리미엄 키친 인테리어 옵션에 히든 훔바 금액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 ※ 아일랜드 하부장 확장 옵션은 탑상형 타입(74A, 74B, 84B, 99A)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 ※ 아일랜드 하부장 확장 옵션의 금액은 추가적으로 소요되는 대형 세라믹 타일 자재의 물량 차이로 인하여 74A, B타입의 금액이 84B, 99A타입에 비하여 높습니다.

**[5] 거실/복도 벽 패널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74A	74B	84B	99A	비고
거실/복도 벽 패널 마감	2,300,000	3,600,000	2,300,000	2,300,000	거실 소파 뒷벽 및 복도 벽체 시트 패널 마감

- ※ 옵션 미선택 시, 벽 패널 시공 부위에는 기본 벽지 도배 마감과 하부에 걸레받이가 시공됩니다.
- ※ 타입별 거실/복도 벽패널 시공 위치와 시트 패널 마감재는 견본주택 및 추가선택품목 신청서에서 시공 범위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거실/복도 벽패널 옵션은 탑상형 타입(74A, 74B, 84B, 99A)에서만 선택 가능합니다.
- ※ 옵션 선택 시, 부착면의 평활도 및 패널의 두께에 의해 실내 안목면적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 ※ 본공사 시 벽 패널 나누기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74B타입의 경우 3면 개방형 구조로, 실내 복도 면적이 다른 타입에 비해 넓어 옵션 금액이 상이합니다.

**[6] 99A타입 마스터룸 특화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99A	비고
마스터룸 특화 옵션	10,700,000	침실1-알파룸간 벽체 확장 및 가구 레이아웃 변경, 침실1 벽판넬, 우물천장 시공 및 직간접 조명 드레스룸 출입도어 변경, 벽판넬형 시스템선반(간접조명 포함)

- ※ 마스터룸 특화 옵션 미선택 시, 알파룸과 침실1이 각각의 개별 실로 시공됩니다.
- ※ 마스터룸 특화 옵션 미선택 시, 파우더와 드레스룸 가구 및 도어, 조명은 84타입과 동등한 사양으로 시공됩니다.
- ※ 마스터룸 특화 옵션에 따라 변경되는 마감재 및 가구 및 조명 등의 자세한 내용은 분양사이트, 견본주택 및 추가 선택 품목 신청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7] 인덕션 쿡탑 업그레이드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전 타입	비고
LG 인덕션 쿡탑 업그레이드 옵션	1,200,000	LG전자 BEI3GTBI

※ 기본 및 옵션 가전에 대한 사항은 분양사이트, 견본주택 및 추가 선택 품목 신청서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8] 빌트인 식기세척기 추가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전 타입	비고
LG 빌트인 식기세척기 추가	1,200,000	LG전자 DIB22S

※ 식기세척기 옵션 미선택 시, 여닫이 하부장으로 시공됩니다.

※ 해당 가전은 견본주택(84B 또는 99A)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9] 오브제 냉장고 세트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전 타입	비고
LG 오브제 컨버터블 냉장고 세트	4,200,000	김치냉장고 : BC1K1AA1 냉장전용고 : BC1R1AA1 냉동전용고 : BC1F1AA1

※ 옵션 냉장고는 메인 주방에 가까운 방향으로 손잡이가 설치됩니다.

※ 옵션 냉장고 설치 순서는 주방에 가까운 쪽에서부터 김치냉장고, 냉장전용고, 냉동전용고로 설치되며 순서를 지정하실 수 없습니다.

※ 오브제 냉장고는 세미 빌트인 제품으로, 가구와 제품 사이에 틈이 있으며, 견본주택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옵션 미선택 시 배치 공간 후면에 콘센트가 시공됩니다.

※ 옵션 미선택 시 원하는 냉장고류를 모두 배치할 수 없을 수 있으며, 냉장고 배치 시 용량에 따라 약 15cm 이상 돌출될 수 있습니다.

[10] 실외기 전동루버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전 타입	비고
실외기 전동루버	510,000	

[11] 시스템 에어컨 옵션

(단위: 원, VAT 포함)

구분	옵션선택	설치 위치	업체명	공급금액	비고	
74A,B,C,D	부분설치형	거실+침실1	삼성전자	3,600,000	좌측 공급가격은 실내기와 실외기 설치 포함금액임	
	전체설치형	거실+침실1+침실2+침실3		6,200,000		
84A, 99A	부분설치형	거실+주방+침실1		4,800,000		
	전체설치형1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300,000		
	전체설치형2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알파룸(또는 드레스룸)		8,100,000		
84B	부분설치형	거실+주방+침실1		4,800,000		
	전체설치형	거실+주방+침실1+침실2+침실3		7,300,000		
추가옵션	자녀방 냉매배관 추가	침실2+침실3		1,100,000		시스템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또는 부분설치형 선택 시에만 가능 선택한 시스템에어컨 대수로만 가능
		[84A, 99A타입 개별침실형] 침실2+침실3+알파룸		1,800,000		
	공기청정 기능 추가	각 시스템에어컨 실내기		250,000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에 따라 선택한 소요 용량에 맞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이로 인하여 실외기실 공간이 협소해질 수 있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의 실외기에 추가적으로 스탠드형 또는 벽걸이형 에어컨을 연결하여 가동할 수 없습니다.
- ※ 세대 내 제공되는 시스템에어컨 컨트롤러는 무선 리모컨으로 제공되며, 실내기 1대 당 1개가 제공됩니다.
- ※ 시스템 에어컨을 옵션품목으로 선택하지 않을 경우 거실은 스탠드, 침실1은 벽걸이형 기준으로 총 2개소의 냉매 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만 시공되며 침실2, 침실3의 냉매 배관은 추가 옵션으로 선택할 수 있습니다.  
(시스템에어컨 선택 시 거실의 스탠드형, 침실1의 벽걸이형 기준의 냉매 배관 및 전원용 콘센트를 설치하지 아니함)
- ※ 시스템에어컨 공급금액은 각 세대별 에어컨 냉매배관 설비 시공비용을 감액하고 산정한 금액입니다.
-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시점 이후에는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이 불가하며, 아파트 공급계약 체결 후 별도의 일정을 정하여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계약을 체결할 예정입니다.
- ※ 시스템에어컨 옵션 선택 시 기선정된 시스템에어컨 제조사 및 모델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 시스템에어컨 및 유상옵션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 이상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의 실내기 설치 위치는 세대별로 차이가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은 냉방 전용 제품으로 난방 운전이 불가하며, 운전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 천정형 시스템에어컨 위치는 등기구 위치를 고려하여 변경될 수 있습니다.
- ※ 84A타입의 전채설치형2는 평면 선택에서 개별침실형 선택시, 선택 가능합니다.
- ※ 99A타입의 전채설치형2는 마스터룸 강화형 옵션 선택 시 드레스룸에 설치되며, 옵션 미선택 시, 알파룸에 설치됩니다.

## 2)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공사비 납부계좌

구분	금융기관	계좌번호	예금주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계좌	우리은행	1005-104-411352	주식회사 한화건설

- ※ 상기 계좌로 납부하지 아니한 대금은 인정하지 않으며 아파트 분양대금, 발코니 확장 공사대금 입금계좌와 상이하므로 혼동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 ※ 무통장 입금 시 동·호수 및 계약자명을 반드시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예시: 101동 201호 홍길동 : 1010201홍길동)
- ※ 추가 선택 품목 공사비 납부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사항은 대표번호 031-309-0995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 납부예정일이 변동(연기 등)될 경우 사업주체는 계약자에게 문자, 우편물 등으로 통보 시 고지된 것으로 봅니다. (수신 여부에 대한 책임 없음)

## 3)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관련 유의사항

- 지정된 납부일에 상기 계좌로 무통장 입금하시기 바라며, 회사에서는 별도로 통보를 하지 않습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설치공사는 입주자모집공고 시 공개된 금액의 총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에서 정한 기준에 따라 별도 계약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
- 유상 옵션 계약은 제안된 사항 외에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옵션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옵션 미선택 세대의 경우, 상기 유상 옵션 계약이 불가능합니다.
- 상기 유상 옵션 금액은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으나 별도의 취득세는 포함되어 있지 않으며, 입주 후 관할관청으로부터 취득세 등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 상기 유상 옵션 공사비(부가세 포함)는 옵션 설치에 따른 기존 설치 품목의 미설치 감소 비용과 추가 설치 품목 증가 비용이 정산된 금액입니다.
- 가구 플러스 옵션 선택 시와 미선택 시 차이에 의한 견본주택과의 공간감의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상기 제품의 제조사와 모델은 제품의 품질, 품귀 또는 신제품 출시, 성능 개선 등의 사유로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기타 신청형별 설치 위치 등 세부 사항은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발코니 확장 시 유상 옵션 가구 선택이 가능하며 옵션 선택 시 무상 선택형 등 우선 선택하여야 추가 옵션 선택이 가능한 경우가 있으므로 계약 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공상의 문제로 일정 시점 이후에는 추가 품목 선택의 계약이 불가합니다.
- 추가 선택 품목 선택에 따라, 배선기구, 조명기구 등의 타입, 수량, 위치 등이 기본형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 마이너스 옵션

### 1) 공동주택 마이너스 옵션 안내

- [주택법 제38조 제1항 제3호] 및 [공동주택의 분양가격산정 등에 관한 규칙]에 의거 사업주체가 제시하는 기본 마감재 수준(장판, 벽지, 조명, 위생기기, 타일, 창호, 가구, 주방가구 등)에서 입주자가 직접 선택 시공할 품목의 가격을 제외한 금액으로 공급받을 수 있으며 마이너스 옵션품목은 입주자 모집공고 시 제시된 마감재 품목과 금액 범위 내에서 사업주체가 정한 기준에 따라 계약을 체결할 수 있고 개별품목

선택은 불가합니다.

- 본 주택은 국토교통부의 [동별, 배정순서에 의한 기본 선택 품목 제도 시행 시 입주자 선정 절차] 중 당첨자 선정 발표 시 동·호까지 배정한 후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해당 동·호에 대하여 기본 선택 품목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하는 방식을 채택하였습니다.

2) 마이너스 옵션 적용 품목 및 범위 (주방가구 및 신발장 설치 위치와 크기는 사업승인도면에 준함)

품 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시공되지 않는 품목	마이너스옵션 선택 시 기본 제공 품목
1) 바닥재	<강마루(갈레반이 포함)>거실, 주방 및 식당 <타일, 화강석>현관, <강마루>침실, <타일>발코니, 실외기실, 대피공간 바닥	바닥 난방, 발코니바닥 방수, 발코니바닥 배수슬리브
2) 벽, 천장	벽지 및 천장지, 벽 및 천장 도장, 거실아트월(타일), 주방벽타일, 몰딩, 우물천장	벽 : 단열+석고보드 / 미장 / 콘크리트면처리 천장 : (천장틀, 석고보드), 커텐박스
3) 조명기구	조명기구 일체	배관, 배선(콘센트, 스위치)
4) 욕실	타일(바닥, 벽), 천정, 석재(인조대리석 선반 등), 재료 분리대, 욕조, 하부틀, 코킹, 욕실환풍기, 스위치, 콘센트 욕실장, 샤워부스, 욕실폰, 욕조, 양변기, 비데, 세면기, 수전류, 액세서리류	방수(바닥, 벽체), 설비배관(급수, 급탕 등 매립배관), 욕실 배기덕트, 바닥배수 슬리브, 전기, 통신배관배선
5) 가구	주방가구: 상, 하부장(상판 및 액세서리 포함), 벽타일, 주방수전, 싱크볼, 쿡탑, 후드 등의 주방 빌트인 가전제품류	설비배관, 후드(자동식 소화기 설치 관련) 전기, 통신 배관/ 배선(주방 TV폰 등의 전기입선), 주방 배기덕트
6) 창호	창호(문틀, 목문짝, 목문손잡이 및 경첩 등 하드웨어 일체, 문선), PL창호(터닝도어 포함)	목창호 가들, 문틀사춤, 발코니 내부 PL창호, 난간, 현관 방화문, 디지털 도어락, 주방 발코니 도어, 대피공간 도어, 실외기실 도어
7) 가구류 및 기타	신발장, 붙박이장, 시스템가구 등 가구류 일체, 세탁실 및 발코니 수전 및 배수드레인 커버	월패드, 각실 온도조절기, 에어컨 냉매배관(거실, 침실1), 발코니 노출 배수입상배관, 우수 선흡통, 하향식 피난구

3) 마이너스 옵션 금액

(단위: 원, VAT포함)

주택형(㎡)	타입	기본 선택(마이너스 옵션 금액)	비고
74.9989	74A	23,725,000	
74.9937	74B	23,425,000	
74.9959	74C	23,738,000	
74.9866	74D	23,759,000	
84.9984	84A	28,525,000	
84.9531	84B	28,750,000	
99.9952	99A	32,151,000	

- 상기 금액에는 취득세 등이 미포함된 가격이며, 기본형 분양가에서 상기 옵션별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공급가격으로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한 세대는 발코니 확장공사 및 추가 선택 품목(플러스 옵션) 신청이 불가합니다.(신청 이후 계약사항의 변경이 불가하니 신청 시 유의하시기 바람)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에도 발코니 확장은 에너지 절약 설계기준, 건축물의 피난, 방화구조 등의 기준에 적합하도록 시공되어야 하며, 개별 시공할 경우 관계 법령 위반에 따른 책임은 계약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시 기시공 되어진 통신기기 난방 조절기 등이 개별 인테리어 공사 과정에서 탈부착되므로 인하여 초기 세팅값이 변경될 수 있으므로 최초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개별 공사를 완료 후 정상 작동 유무를 확인하여야 합니다.

#### 4) 마이너옵션 선택 및 시공을 위한 유의사항

- 마이너옵션은 설계상 포함된 기본형의 마감재 중 선택 품목에 해당하는 공사비를 제외한 가격으로 공급받고 입주자가 취향에 맞춰 직접 선택 시공하는 방식입니다.
- 상기 마이너옵션 계약은 품목별 실별 위치별로 선택할 수 없으며 일괄로 선택해야 합니다.
- 마이너옵션과 발코니 확장 옵션 계약의 경우 공사상 상이점(바닥마감, 벽체, 벽지, 방수, 단열 등)으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하신 세대는 발코니 확장 옵션을 선택할 수 없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은 자재 수급 사정·품질관리·시공관리·공사일정 등 기타 사업주체의 사유로 품목 및 범위·자재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분양계약 이후에는 자재 발주 문제로 인하여 마이너스 옵션 추가 신청 및 변경이 불가능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각 세대별 공사는 사용검사 완료 및 잔금 납부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가 가능하오니 이 점 감안하여 품목 선택 및 입주계획을 세우시기 바라며, 공사 기한은 소음, 분진 등의 문제로 공동주택 분양가격의 산정 등에 관한 시행지침 제3조 규정에 의거 입주지정개시일로부터 60일 이내에 법 규정을 준수하여 완료하여야 합니다.
- 기본형 계약 이후 마이너스 옵션 부분의 공사비가 건설산업기본법 시행령 제8조 제1항 제2호에서 정한 금액 일천오백만원을 넘는 경우 실내건축공사업 등록업자가 시공하여야 하며 그 외 경우도 품질확보 및 하자보수 책임과 사후관리를 위하여 자격을 구비한 전문 건설 업체가 시공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마감재 선택이 자유로우나 일부 자재 선택에 제한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하자 등으로부터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등록된 실내 건축 공사업자가 시공을 하더라도 하자이행보증보험 가입 여부를 확인하고 계약서 작성 후 공사에 착수하시기 바랍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 공사시기 시공된 소방 전기 설비 시설 및 방수 단열 미장시설 등 기타 공사 시설물 훼손 시에는 원상 복구 및 배상 의무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부분에 사용하는 자재는 “건축법 제52조”, “건축법 시행령 제61조”, “건축물의 피난 방화 구조 등의 기준에 관한 규칙 제24조” 규정에 적합한 자재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품목 시공에 대한 하자 발생 및 법령 등에서 정한 기준 위반으로 인한 일체의 책임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을 선택하여 계약 체결한 세대의 입주자가 개별적으로 시공한 부위에 하자가 발생하여 원천적으로 하자 책임이 불분명한 경우 기존의 시공분 시설은 적법한 감리 감독을 통한 시공으로 사업승인을 득하였으므로 본 아파트 사업주체에게 일방적으로 하자의 책임을 물을 수 없으며, 하자 발생 책임에 대한 원인 규명 의무는 입주자 본인에게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배선기구류 위치 등은 기존 위치와 동일하며, 기타 시공조건(마감재를 제외한 바닥, 벽체 두께 등)은 타입별 마이너스 옵션 미선택 시 기준으로 시공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세대의 동이 지정되어 있지 않아 입주 후 인테리어 공사로 인하여 소음 및 분진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상기 마이너스 옵션 금액에는 통합 취득세 등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 마이너스 옵션 계약 세대는 기본 선택 품목(마이너스옵션) 시공, 설치 관련 약속서를 작성하여야 합니다.

※ 마이너스 옵션 선택 시 분양가는 공급금액 총액에서 마이너스옵션 산출금액을 제외한 금액입니다.

## IX

### 단지 여건 및 유의사항

■ 다음의 사항을 반드시 확인하시어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공통사항

- 당 사업은 2022년 07월에 주택건설사업승인을 득한 사업으로 일부 규정은 최초 사업승인 당시의 규정이 적용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 도면은 견본주택에 비치되어 있으며, 자재목록 및 동영상은 분양 홈페이지(hanwha.forena.co.kr/pyeongtaek)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발생, 정부의 정책이나 관계법령의 변경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 예정된 공사 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입주지연보상금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본 단지 공동주택 건설에 따른 기반시설 계획 등은 관련 기관의 인허가 진행 및 국가시책, 현장 여건, 민원 등에 따라 분양 홍보자료에 안내된 내용과 다르게 변경될 수 있으며, 각 시설별 준공은 입주 예정시점과 다를 수 있습니다.
- 당 사업 외 기반시설(도로, 녹지, 학교, 상하수, 전기, 난방 등) 및 각종 개발계획은 사업주체나 시공사가 아닌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 지역개발공사(또는 LH공사) 등이 설치하거나 추진하는 사항으로 사업추진 중 변경, 취소, 지연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입주 지연과 생활 불편 및 시세 하락 등의 제반 문제점에 대해서 사업주체나 시공사는 책임이 없으므로 현재 진행사항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확인한 후 계약을 체결하여야 합니다.
- 본 시공범위 이외의 단지 접속도로, 상/하수시설 등의 기반시설 조성공사 지연에 따라 사용승인이 연기될 경우 임시사용승인 및 동별 사용검사를 통해 입주가 진행될 수 있으며, 이 경우 임시사용승인일 60일 이내 취/등록세 및 제반 비용을 납부하더라도 미등기 상태가 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재산상 및 각종 금융처리에 대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을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광역도로 등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소유권 보존등기 및 이전등기는 입주일과 관계없이 지적 공부 정리 절차 및 기반시설 공사 지연 등으로 연기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사업 외 학교 등 공공시설물 설립 계획 등은 자치단체 일정에 의하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는 무관합니다.
- 공급면적과 대지면적은 법령에 따른 공부 정리 절차로 인한 차이 등 부득이한 사유로 인한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준공 시 경계(확정)측량 후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고 이에 따라 계약면적상의 대지면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아파트의 특성상 층간, 세대간, 용도별 소음피해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사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필히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조망권,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향후 어떠한 이의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마감재의 사양은 타입에 따라 차이가 있으니, 견본주택에서 분양상담을 통해 정확하게 인지하신 후 분양신청 하시기 바랍니다.
- 견본주택 공개 후 타 공동주택의 마감 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을 본 아파트와 비교하여 견본주택 및 사업승인도서에 적용된 사항 이외에 추가적인 마감 사양, 가전제품, 공용시설, 조경시설 등의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므로 주변 지역 공동주택과 충분히 비교하신 후 청약(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일한 TYPE의 단위세대도 발코니 세대 간 조건 및 발코니 변화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본 아파트 홍보물의 조감도 및 배치도 상의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청약 및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 아파트 배치구조 및 동호수별 위치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등의 환경권이 불리한 곳이 있을 수 있으니 확인하고 청약하여야 합니다.
-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 등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제작되었습니다.
- 청약 및 계약 전에 사업부지 내·외 현장을 반드시 방문하시어 주변 현황 및 현장 여건, 주변 개발, 각종 공사로 인한 소음 발생 여부 등을 확인하신 후 청약 신청 및 계약 체결하시기 바라며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아파트는 실입주자를 위하여 건립되는 것이므로 투기의 대상이 될 수 없으며, 구비서류 등의 내용 변조 행위로 주택공급 질서를 어지럽힐 경우에는 법에 따라 처벌받게 됩니다.
- 청약 신청 및 계약 장소에서 발생하는 각종 상행위 인테리어 시공 업체, 부동산 중개업자 등의 영업행위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입니다.
- 본인 동호수 배정 시 동일 주택형이나 견본주택과 달리 평면이 좌우대칭이 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
- 계약 세대가 속한 층 및 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마감재 내용은 형별, 타입별 등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계약체결을 위해 수집한 개인정보는 사업주체, 시공사, 금융기관 등에서 계약관리 및 추후 주요 일정 통보 등의 목적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 관련으로 개인정보 요구 시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3조의 규정에 따라 정보 제공을 할 수 있습니다.
- 입주 후 불법 구조 변경 및 공용공간의 사적 점유 등의 행위는 관계법령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 입주 예정 시기는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정확한 입주 시기는 추후 개별 통보합니다.
- 당첨자가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사유가 있습니다.
- 입주 후 주차공간을 이용함에 있어 모든 이용자 상호 간에 불편을 야기하거나 방해하여서는 아니되며, 주차 문제에 관한 다툼이 발생되어지는 경우에는 반드시 관리사무소의 지도·감독에 따라야 합니다.
- 외국인인 국내 토지를 취득할 경우
  - ① 국내 거주 외국인이 주거목적의 국내 주택 구입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거 계약체결일로부터 60일 이내 토지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 ② 국내 미거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 취득 시 「부동산 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취득신고, 「외국환거래법」상 부동산 취득 신고를 해야 하고,
  - ③ 영리 목적 법인의 국내 설립 후 토지 취득 시 「외국인투자촉진법」에 의한 외국인투자신고, 외국인투자기업 등록을 마치고 토지 취득 신고를 한 후 국내 토지를 취득하여야 합니다.
-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은 사전 홍보 시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분양 홈페이지(hanwha.forena.co.kr/pyeongtaek)를 통해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또한 홍보 과정에서 주변 환경, 개발계획, 교통 여건 등의 계획 또는 예정 사항은 추후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사오니, 관련 사항별 관계기관에 반드시 본인 확인 후 청약 및 계약하여야 하며, 향후 미확인으로 인해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일부 탑상형 지붕층 및 옥탑층, 부대 및 복리시설 지붕층에 조정 공간(식재), 의장용 구조물, 항공장애등, 야간경관용 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설비, 실외기, 태양광 발전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소음, 진동 등의 환경권과 조망 및 빛의 산란에 의한 사생활의 침해를 받을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에는 자전거 보관소, 생활폐기물 보관시설, 기계 전기실 및 급·배기구, DRY AREA(채광, 환기, 방습 따위를 위하여 지하에서 지상으로 낸 통풍구) 등이 설치될 예정으로 계약 시 위치를 확인해야 하며 설치 결과에 따라 일부 저층 세대는 조망권 및 환경권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단, 위치, 높이 디자인 등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음)
- 설계 및 시공 관련 적용기준의 우선순위는 견본주택, 준공도서, 도급계약서, 사업계획승인도서, 공사 시방서(착공신고) 순으로 정합니다.
- 층간 차음재의 성능은 시험실 인정성능 기준으로 현장 측정 시 시험실 성능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 건축 구조물 외부에 BI 및 경관 조명이 설치되며, 계약 전 이점 양지하시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
- 동 조합으로 인한 요철 및 입면 디자인으로 인한 장식으로 일조권 및 조망권 등이 일부 침해될 수 있습니다.
- 세대당 주거전용면적, 주거공용면적, 계약면적 및 대지지분은 법령에 따라 공부 절차 즉 준공 시 확정측량으로 인한 대지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음을 충분히 인지하며 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는 공급금액에 영향을 미치지 않으며 이 경우 상호 정산 또는 부대복리시설 면적 조정 등으로 처리할 수 있습니다.
-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 분야별 도서 또는 홍보물 상호간 오류로 인하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반드시 사전 확인하시기 바라며, 공사용 도서의 구체화(세부 도서작업) 과정에서 인허가 도서의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수정 및 성능개선과 품질 제고를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아파트의 현장 여건 및 구조 성능 상품개선 등을 위하여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며 관련 법규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대지 경계 및 면적은 최종 측량 결과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므로 준공 시 대지 경계 및 지적 정리 완료에 따른 대지면적 정산 처리 시 입주자는 동의하여야 합니다.

- 본 공사 시 추가 지질조사 및 현장 여건 등에 따라 가시설 및 구조방식, 기초의 형식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습니다.
-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절차를 받지 않습니다.
- 추후 인허가변경 시 현장 여건 및 관련 기관과의 협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으므로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계약 이후 계약자의 요구에 의한 설계변경은 불가합니다.
- 준공 전후, 개인 또는 임의 단체를 구성하여 설계변경에 해당하는 내용(세대 내외 공용부분 시설물 등)을 요구할 수 없으며, 만약 준공 전후 최종 건축허가도면 이외의 사항을 요구할 경우에는 이에 상응하는 비용을 부담해야 합니다.
- 조감도, 세대 평면도, 면적, 치수 등 각종 내용이나 설계 관련 도서의 내용 중 불합리한 설계나 표현의 오류, 오기 및 성능개선과 품질을 제고하기 위하여 본 공사 진행 중에 이루어지는 각종 설계의 경미한 변경에 대하여 사업주체의 결정에 따르며, 제반 권리를 사업주체에게 위탁하는 데 동의하는 것으로 간주합니다.
- 실 대지 측량 결과, 관련 법규의 변경, 인허가의 변경, 건축허가인 변경 및 신고, 대지지분 정리 등에 따라 본 계약 물건의 견본주택, 단지 배치, 단지 내 도로 선형, 조경(수목, 수경, 시설물, 포장 등), 동호수별 위치, 각종 인쇄물과 모형도 상의 구획선, 단지 내 시설물의 위치, 설계도면 등의 표시, 대지지분 및 분양면적 등이 계약체결일 이후 입주 시까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토목 옹벽 및 건축 옹벽 디자인과 마감재, 녹화계획 높이 등은, 실제 시공 시 기능 및 성능개선, 주변 실제 현황, 인허가 관계기관 협의 결과에 따라 계약자의 동의 없이 향후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옥외 계단 및 엘리베이터, 계단실, 외부 통로 등과 인접한 세대는 소음피해 및 사생활권, 조망권 등의 간섭이 발생할 수 있으니 반드시 위치 등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및 이사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라인이 있을 수 있으며 이때는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합니다.
- 이 공고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계 법령에 의거합니다.

## 학교 관련

- 본 아파트 내에는 「주택법」 제35조에 따라 어린이집이 의무적으로 설치되며, 해당 어린이집 시설은 「영유아보육법」 제12조 제3항 및 동법 시행령 제19조의2에 따라 국공립어린이집으로 운영될 계획입니다. 이와 관련하여 사업주체는 아파트 사용검사 신청 전까지 국·공립 어린이집 설치 및 운영에 관한 협약을 평택시와 체결할 예정입니다. 다만, 입주(예정)자 등의 과반수가 서면으로 이를 동의하지 않을 경우 국공립어린이집이 설치되지 않을 수 있으며, 필요 시 사업주체는 입주자 의견청취절차 등을 포함하여 안내할 계획입니다.
- 해당 공동주택은 가칭)화양3초 통학구역 내에 위치해 있으나, 학교 설립계획 및 개교 시기는 공동주택 입주시기, 학생 수, 인근학교 배치여건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불가피한 사정으로 화양3초가 입주 시기에 맞춰 개교 불가능할 경우 본 단지 내 입주 예정인 초등학교는 인근 초등학교에 임시 배치할 예정입니다.
- 만약 본 단지에서 임시 배치되는 초등학교까지 원거리 통학 및 취약한 통학 환경으로 도보 통학이 불가할 경우, 사업시행자 및 시공사는 통학 대책(통학버스 운영, 통학안전시설 설치, 안전한 통학로 확보 등)을 사전에 마련하여 화양3초 신설 시까지 지원할 예정이므로 이를 확인하고 청약 및 계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추후 이에 대하여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 입주 예정인 중학교 신입생의 경우 컴퓨터 전산 추첨을 통해 안중중학군(안일중, 안중중, 현화중, 지구 내 설립 예정 중학교)에 배정될 예정입니다. 또한 중학군(구) 지정은 매해 전년도에 확정·변동될 수 있으므로 배정 일정 및 방법 등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 내 입주 예정인 고등학생은 평택 내 기존 고등학교(21교)에 배치 예정이며, 사업주체는 본 단지 내 입주 예정인 중·고등학생이 기존 학교로 안전하게 통학할 수 있도록 입주 전까지 해당 관청(평택시청)과의 협의를 통해 도로 정비 및 버스노선 신설 등의 통학대책을 마련할 예정입니다.
- 평택 화양지구 내 계획 중인 학교는 향후 지방교육행정기관 재정투자사업 심사규칙에 따른 투자심사를 반드시 통과해야 설립추진이 가능하며, 초·중·고 학생배치계획은 학교설립계획 보류(취소), 개발(실시)계획 변경, 학생 수용 여건 변화 등에 따라 추후 변경될 수 있으므로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교육지원청에 반드시 문의하여 확인하시기 바라며 미확인 등으로 인하여 추후 일체의 민원을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변 여건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도로, 상하수도, 공원 등)은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관계없으며, 본 사업지에 적용되는 기반시설 공사는 진행 중이나, 도시개발사업조합에서 개발계획 변경 및 향후 차기 인허가 승인사항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광역도로 등 일부 광역교통망은 국가기관, 지방자치단체에서 계획하여 진행하는 사항으로 일부 변경 및 취소, 개통 지연 등이 발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사업주체 및 시공사는 귀책 사유가 없습니다.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및 인근의 시설·확장 도로는 인허가 추진 일정 및 관계기관의 사정에 따라 개설 시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입주 이후, 사업지 주변의 건축물 및 건축물의 신축, 개조 등의 건축행위로 인해 일조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받을 수 있으며, 이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와 무관한 사항으로 관할관청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공유대지에 대한 지적공부정리가 입주지정기간 종료일 이후 장기간 소요될 수 있으며, 소유권 이전 등기 시 대지 공유지분은 약간의 면적 증감이 있을 수 있습니다.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구역 내 기반시설 준공 후(2025년 09월 예정) 입주가 가능하며 지구 내 학교 신설 시까지 인근 학교로 학생이 임시 배치될 수 있습니다.
-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기반시설 준공 및 환지 처분 후 환지 등기가 완료된 후 대지권 등기가 가능합니다.
- 기반시설 준공 지연으로 인한 입주 지연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를 반드시 인지하시기 바랍니다.
- 본 단지의 주변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 배치, 동·호수별 위치 등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외부의 차선 및 교차로, 횡단보도, 자전거도로, 보도 등은 인허가 결과에 따라 결정된 것으로서 임의로 재조정할 수 없습니다.

-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단지 내 설치되는 석축 등의 종류, 높이, 이격거리 등의 변경 등과 단지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복리시설, 주민운동시설, 상가, 관리동 등의 설치로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소음피해, 사생활권 침해 등이 발생할 수 있으니, 필히 시설의 위치 및 규모를 확인하여야 하며, 추후 설치 위치 및 시설면적 변경 요구 등 근본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본 단지 내/외 레벨차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 등의 설치 위치, 높이, 형상, 디자인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계약 전 사업부지 현장을 방문하시어 주변 혐오시설 유무, 송전탑, 소음, 진동, 분진, 조망, 일조, 진입로, 상업시설, 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텃밭, 근린생활시설 등 주위 환경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현장여건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주변 도로 및 철도로 인한 소음, 진동 및 분진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주변 도로의 상황을 확인하시고 해당 사항 미확인 및 위 사항을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계약 후 위와 관련하여 발생하는 제반 사항에 대해서는 추후 일체의 민원 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안전관리시스템을 위한 CCTV의 설치로 인한 사생활권이 침해될 수 있으며, 향후 이에 따른 민원 및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사용검사 신청 전 「주택법」제42조, 「주택건설기준 등에 관한 규정」제9조 외의 「공동주택의 소음측정기준」에 따라 소음측정 시행, 법정 기준소음 이상 측정 시 해당 부위에 사업주체가 소음저감시설(방음벽 등) 등을 추가로 설치할 수 있으며, 방음벽이 설치될 경우 인접한 주거동에 속한 세대는 일조 및 조망, 통풍 등에 불리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배치 및 동선

-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대지의 레벨 차이에 의해 도로와 본 건물의 레벨 차이가 있으며, 단지 내 도로의 경사도는 시공 중 주변 도로의 경사도 및 레벨에 순응하기 위하여 일부 조정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 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측량 결과에 따라 일부 주동의 위치가 경미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지하층 충고, 일부 지하 주차장 레벨, 램프 위치 등이 다소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지 경계부는 도로와의 높이 차이가 있으며, 단지 외부와의 단차로 인하여 토목 또는 건축옹벽, 난간, 사면처리 등의 방법으로 시공되고, 주변 및 외부 여건 등에 따라 축조 규모와 형태 등의 변경이 필요할 경우, 입주자 개별 동의를 별도로 받지 아니하고 설계변경을 진행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 내외, 옥상부 공간계획은 확정되지 않았으며, 분양홍보물(모형, CG 등)상에 설명된 것과는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으며, 아파트 계약자와 무관하게 설계 변경될 수 있습니다. 또한 이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쓰레기분리수거장이 본 아파트 지상 1층 외부에 설치되며, 해당 폐기물 및 쓰레기의 수거 또한 본 아파트 지상 1층 동 외부를 통하여 수거됩니다. 계약자는 해당 사항을 필히 확인하고 계약하시기 바라며, 이로 인한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주차장 출입구 및 소방용 비상차로에 인접한 세대는 음식물 차량 등에 의한 차량 소음, 경보음, 야간 차량 불빛, 공회전에 의한 매연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본 아파트의 주변 도로 및 단지 외부시설, 아파트의 배치구조, 동호수별 위치, 단지 내 조경 공간(녹지 등) 등으로 인해 이와 인접한 일부 세대는 소음 등 생활에 불편함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일조권, 조망권, 소음, 진동 등으로 환경권 및 사생활이 침해될 수 있습니다.
- 단지 내 비상차로 및 포장 구간 중 일부는 화재 등의 응급상황 발생으로 인한 비상 차량(소방차)의 정차 위치로 표기 및 활용될 수 있습니다.
- 다음의 경우에는 일조권, 조망권, 환경권, 사생활권이 간섭받거나, 소음피해 등 불편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 단지의 배치 특성상 동별, 향별, 층별 차이, 동간 거리, 세대별 상호 위치 등의 상이에 따른 불편
  - \* 계약 체결 이후 주변 단지의 신축, 단지 내 공용 시설물 및 도로선형의 변경 등과 배치상 세대 상호 간의 향이나 층에 따른 불편
  - \* 공공장소인 휴게공간과 필로티, 부대시설, D/A(환기구), 관리사무소, 주민공동시설, 쓰레기 분리수거장, 자전거 보관대, 옹벽, 산책로, 근린생활시설, 경비실 등의 설치 및 통행에 따른 불편
  - \* 단지 내 주차출입구, 주차 출입구, 부대시설, 경비실 등 단지 내외 시설물 등의 설치로 인한 불편
- 대지경계선에 인접한 주동의 전면 또는 측면에는 단지와 레벨 차이가 있어 이를 극복하기 위한 옹벽이나 석축, 주변 녹지 내 보도 및 도로 등으로 인한 조망 침해, 사생활 침해가 생길 수 있으며 인허가 과정이나 실제 시공 시 여건에 따라 옹벽 및 석축 등의 위치, 높이, 재질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 각종 환기구(D/A 등)는 환기장치 작동 시 기류 및 장비 소음 및 배기가스가 발생할 수 있으니 계약 시 시설물 배치계획을 반드시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사항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당 단지 내 무인택배함의 설치 위치는 지하 주차장 동 출입구 인근에 1동당 1개소 계획되어 있으며, 이에 따른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으며, 설치 위치 및 개소, 택배함의 수량은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

## 주동

- 각 동 필로티 설치에 따라 필로티 옆, 상부층 세대는 외부 통행에 의해 소음 발생 및 사생활 침해의 우려가 있으며, 필로티 위층의 난방 효율이 떨어질 수 있습니다.
- 각 동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는 동별 형태 및 층수에 따라 대수, 속도 및 사양이 다를 수 있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및 승강로에 인접한 세대는 소음 및 진동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각 타입별 주거공용면적은 전체 주거공용면적을 각 타입별 전용면적 비율에 따라 산술 배분한 값으로, 실제 각 타입별 승강기 홀 및 계단실 면적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계단실과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호의 수량 및 개수, 형상, 재질은 주동별로 상이할 수 있으며, 승강기 홀에 설치되는 창호는 채광을 위한 것으로서 인접한 세대 후면 창호와 인접하여 해당 세대의 프라이버시가 일부 침해받을 수 있습니다.

- 각 주동별 계단실에 설치되는 창호에는 통풍을 위한 개폐창이 설치되나, 전 층에 설치되지 않고 5개층 마다 1개소씩 설치되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각 세대의 배치 및 조합에 따라 엘리베이터를 이용하는 세대수에 차이가 있습니다.
- 이삿짐 운반 시 사다리차 이용이 불가능한 라인이 있으며 엘리베이터를 사용하여야 하므로 청약 및 계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 및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
- 옥탑, 지붕, 외벽 등에 의장용 구조물, 야간경관조명, 공청 및 위성안테나, 피뢰, 측뢰, 항공장애등, 태양광 발전 설비 등의 시설물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것들로 인한 소음, 진동, 빛의 산란으로 인한 불편함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 「건축법 시행령」 제87조, 「건축물의 설비기준 등에 관한 규칙」 제20조에 의거 건축물 측벽에 낙뢰 예방을 위한 측뢰 피뢰침이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단위세대

구분	내용
단 위 세 대          공 통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임의의 구조물 추가, 구조 변경, 마감 변경 등은 입주 후 입주자대표회의와 본 단지의 아파트 관리규약에 따라 상호 협의 후 진행하여야 하며 협의되지 않은 임의의 변경, 개량, 이용 시 누수에 의한 하층의 피해 등의 유지관리책임과 비용부담 의무와 책임이 따릅니다.</li> <li>■ 주택형별로 확장 면적이 다르므로 반드시 확인하고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동일한 타입의 단위세대도 주동별 결합으로 발코니 세대 간 조건에 따라 서비스 면적에 차이가 있으며, 외벽 및 창호의 형태가 달라질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계약 세대가 속한 층·향에 따라 일조권 및 조망권, 사생활권, 소음 등이 다를 수 있으며 사생활 등의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의 주출입구,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 등의 공간은 주거공용부분으로서 전용화하여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일부 저층 세대는 공용부분 시설물(주동 출입구 캐노피 등)으로 인하여 조망 및 채광이 불리할 수 있습니다.</li> <li>■ 인접 동 및 인접 세대에 의하여 조망권 및 향, 일조량이 감소될 수 있으며, 견본주택에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아파트의 각 동 저층 세대는 기존 단지의 인접에 의한 일조 및 조망, 환경권 및 사생활의 제약이 있을 수 있으므로 계약 시 충분히 이를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본 단지의 각 동 일부 세대 전후면 녹지 내 대형수목 식재 및 옹벽 설치로 인해 일부 조망권이 간섭받을 수 있으며, 그 해당 시설 높이는 모형 및 CG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야외조경용 조명 및 공용부위 조명등에 의하여 일부 세대는 눈부심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일부 세대는 공사 시행 중에 품질관리를 위하여 샘플하우스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는 공동주택 바닥 충격음 차단구조인정 및 관리기준(국토교통부 고시 제2020-212호)을 준수하며 층간소음 및 진동 등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으며, 엘리베이터, 기계실 운행에 의한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위세대 실내 천장고는 거실 기준 2.3m, 우물천정 높이는 2.43m이며, 실외기실 및 하향식피난구실, 다용도실 등의 발코니 부분과 욕실은 천장고가 상이합니다</li> <li>■ 세대 내의 위치에 따라 계약자가 희망하는 용량(규격)의 가전제품(냉장고류, 세탁기류 등) 및 가구 등이 길이, 폭, 높이 등의 차이로 인하여 배치가 불가할 수 있으니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 (특히 김치냉장고, 세탁기류는 다용도실 출입문의 규격에 따른 규격 제한이 있으므로 계약 전 반드시 가전제품 사이즈를 확인하여 계약을 하여야 합니다.)</li> <li>■ 주방가구, 일반가구, 선반가구, 욕실가구 등의 가구류의 경우 경첩, 서랍재, 손잡이 등의 하드웨어류는 동급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석재 디딤석 및 상판의 경우 자재 생산의 규격으로 인해 분절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배기로 인하여 외벽쪽 커텐박스 높이가 다른 침실보다 낮아지는 타입이 있습니다. (74A타입 침실2, 74B타입 침실3, 84B타입 침실3, 99A 거실 및 알파룸)</li> </ul>

구분	내용
단 위 세 대	<p><b>발코니</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발코니 부분의 면적은 「건축법 시행령」 제119조에 따라 산정되었으며 바닥면적에 포함되는 초과 발코니 면적은 「공동주택의 발코니설계 및 구조 변경 업무처리지침」에 의거하여 주거전용면적으로 산정하였습니다.</li> <li>■ 전·후면 발코니 및 콘크리트 난간 높이는 동 위치 및 층수에 따라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사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실제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확장하지 않은 발코니는 준 외부공간으로서 난방시설이 설치되지 않으므로, 내·외부 온도 차에 의하여 결로 및 결빙에 의한 마감 손상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세대별 발코니로 인한 서비스 면적에 약간의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면적 증감 시 분양가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li> <li>■ 발코니 외기에 면하는 벽체에는 결로방지를 위한 단열재 시공으로 도면상의 면적과 일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실, 실외기실, 발코니 등에 결로 발생 예방을 위한 환기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세탁기와 실외기가 설치되는 공간 또는 발코니에 수전이 설치되는 곳은 겨울철 동파가 발생할 수 있으니 창문 닫기 및 보온 조치 등 입주자의 신중한 관리가 필요합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확장되는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방등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일부 발코니에 환기 장비, 하향식 피난구실이 설치되며, 본 시공 시 배관이 노출되거나, 내외부 마감(창호와 그릴, 전등의 크기 및 위치) 및 건축입면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방 발코니(다용도실)에는 견본주택에 지급 품목으로 명기되어 전시되거나 유상 옵션으로 제공되는 경우를 제외하고 수납을 위한 시스템선반 및 가구가 제공되지 않습니다.</li> <li>■ 우오수 선홍통의 위치 및 개수는 현장 여건에 따라 본 공사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상부 세대 세탁 배수 배관은 유지관리의 목적으로 하부 세대에 노출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바닥배수구, 오수배관 입상, 수전금구류, 악세사리류, 위생도기, 환기 디퓨저 및 전열교환기, 스프링클러 헤드 등의 위치는 본 공사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수전이 설치되지 않는 발코니에는 배수구가 설치되지 않으며 물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li> <li>■ 각 세대 내 대피공간은 하향식 피난사다리로 설계되어 있으며, 화재 시 하부 세대로 대피할 수 있는 공간이므로 임의의 시설물, 장비, 가구 등을 설치할 수 없으며, 구조 변경 등이 불가하오니 그 사용 및 유지관리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로 인해 층간소음 및 방법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나 시공사의 책임 범위가 아니니 이점 양지하시니 바랍니다.</li> <li>■ 하향식 피난구실은 대피를 위한 공간으로 물건 등을 적치할 수 없으며, 동일한 타입이더라도 피난구의 위치는 층별로 다릅니다. (층별 교차 시공)</li> <li>■ 하향식 피난구는 하층에 필로티 또는 피트, 부대복리시설 등이 설치되는 경우 시공되지 않으며, 완강기가 시공될 예정입니다.</li> <li>■ 다용도실에 손세탁 수전은 설치되지 않으며 세탁 수전 중 냉수와 결합된 스프레이건이 설치됩니다.</li> </ul>
창 호/ 문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견본주택 창호에 설치된 유리는 견본주택 설치를 위해 임의로 지정된 제조사에서 생산된 제품이며, 본 공사시 유리 제조사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견본주택에 설치된 창호는 현대L&amp;C 브랜드 및 지정대리점으로 설치되며, 이에 대한 브랜드 및 대리점 변경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공사 시, 부자재류(프레임, 하드웨어, 레버 등)는 동급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으며, PL창호 내측 창틀, 창짝 제조 시 접합부위(연귀)에 사선으로 백색 라인이 노출됩니다.</li> <li>■ 침실2,3 창호에 설치되는 금속 난간은 창호높이 법적기준을 만족하기 위해 설치되었습니다.</li> <li>■ 창호 및 문의 열림 방향, 이와 인접한 날개 벽체는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내 창호 및 문의 형태 및 위치는 견본주택 및 분양홍보물 기준으로 시공되나 규격 및 사양, 열림(개폐)방향, 형태, 날개 벽체 길이 등은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형의 외부창호(발코니)는 내풍압 구조검토 등의 결과에 따라 세대별, 층별, 위치별로 창호 사양(유리, 하드웨어, 창틀)이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침실과 욕실 도어에 손 끼임 방지 장치가 제공되며, 제품 사양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손 끼임 방지 장치의 기술적 특성으로 인하여 마찰 소음, 하드웨어 상/하단부의 틈새 및 빛의 투과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 금속도어(현관방화문, 실외기실)의 프레임 및 손잡이는 사이즈, 형태,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창호의 방충망은 외부에 면한 창에만 설치되며 창짝 중 한쪽의 창짝에만 설치됩니다. (거실창은 양쪽 끝단부 창짝)</li> <li>■ 전 타입에 설치되는 주방창은 조망 강화형 프로젝트 창으로 설치되며, 맞통풍에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등에 설치되는 플라스틱 창호 및 문의 경우 발코니 쪽에서 보았을 때의 창호의 면에는 별도 색상이 적용되지 않습니다.</li> </ul>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단 위 세 대</p> <p style="text-align: center;">전기/ 기계/ 설비</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각 세대는 지역난방으로 계획되며, 세대 내 평면의 배치 및 구조에 따라서 각 세대별 전용 부위 및 공용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배관 및 배선은 시공방식 및 길이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복도 및 세대 점유 공간 천장 내부는 기계설비 및 전기시설물의 경로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li> <li>■ 세대분전반(전기분전반)은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단자함은 세대타입, 침실 내부 벽체 중 한 곳에 설치되어, 미관을 저해할 수 있고,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분전함은 산업통상자원부 공고 주택용 분전반 업무처리방법 특별강조 지시사항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되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합단자함은 초고속정보통신건물 처리지침에 따라 노출된 장소에 시설될 수 있으며 추후 위치 변경은 불가합니다.</li> <li>■ 통신단자함, 세대(또는 호실) 분전반, 전기 배선 기구류, 조명기구, 전기통신 관련 마감재의 제품 사양, 위치, 높이, 수량 등은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좌우 세대 및 옵션 선택에 따라 상이할 수 있습니다.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거실 월페드의 카메라는 미적용되었으며, 세대간 영상통화가 지원되지 않습니다.</li> <li>■ 벽걸이 TV 설치 시 전선, 케이블 등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욕실, 다용도실 등에 설치되는 바닥 배수구, 수전, 우수 선홍통, 보일러 등은 위치 및 형태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경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호실 내 시설물 유지관리를 위해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방가구 하부장에 온수 분배기가 설치되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주방가구 하부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음)</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 및 덕트를 점검하기 위한 점검구가 상부장 내부에 설치될 수 있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점검구 위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렌지후드 환기 배관으로 인해 일부 상부장 내에 자동식 소화기 설치에 따른 사용이 제한될 수 있으며, 환기 배관은 세대 천장, 발코니 천장, PD 등을 관통하여 외부에 배출되는 구조로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확장 시 발코니 조명은 설치되지 않으며, 조명이 방 중심 쪽으로 위치 이동하여 설치됩니다.</li> <li>■ 현관 쪽에 설치되는 일괄 소등 스위치의 기능에는 승강기 호출 기능을 포함하고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및 욕실, 주방의 경우는 상부층 세대 배관 점검 및 보수를 위해 부득이 하부층 세대에서 천장 배관을 점검할 수 있습니다.</li> <li>■ 발코니 부위에 설치되는 각종 설비 배관은 노출 배관(천장, 벽)으로 인하여 미관을 저해할 수 있으며,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전열교환기, 에어컨 등의 가동으로 인해 소음이 발생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대 실외기실에는 배관, 선홍통 및 드레인 등이 노출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미선택 시, 거실의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벽체 하부에(스탠드타입 에어컨 기준), 안방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상부에(벽걸이 타입에어컨 기준) 기본 시공됩니다.</li> <li>■ 천장형 시스템 에어컨 옵션 선택 시 에어컨 배관 및 콘센트는 미시공 됩니다.</li> <li>■ 세대 환기를 위한 전열교환기는 주택형별 상이할 수 있으며, 해당 위치는 견본주택 및 문의를 통하여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일부 세대에 공용설비 점검을 위한 점검구가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실내 점검구는 설비공사 등의 유지관리를 위해 수량이 증감될 수 있으며, 사양,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 평형 욕실내 건식공간에는 바닥 난방이 설치되나 가구장 하부, 샤워부스, 욕조 하부는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욕실에는 바닥 배수를 위한 바닥배수구와 환기를 위한 욕실 팬이 설치됩니다.</li> <li>■ 부부욕실의 경우 세면대 하부에 세면대 배수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화장실 천정에 매립 형태로 급수·급탕 분배기가 설치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위치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 (급수, 급탕 분배기 설치 부위는 별도의 마감이 되지 않으며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음)</li> <li>■ 각 세대 타입별 옵션 선택에 따라 조명기구, 배선기구류의 설치 위치와 수량, 사양이 상이할 수 있으며, 계약 전 반드시 확인하기 바랍니다.</li> <li>■ 승강기 운행으로 인한 진동 및 소음이 세대 내로 전달될 수 있으니 이점을 인지하시기 바람이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외기 설치 시 세대 설치 요건에 따라 냉매 배관의 설치 방향 및 형태가 세대별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벽체 내부에는 전기통신용 배관 및 각종 설비배관(급수, 온수, 환기 등)이 매립되어 있으므로 벽체에 못박음이나 드릴을 이용한 작업 시 안전상, 기능상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3구 하이라이트 전기쿡탑이 기본으로 제공되며 가스배관이 실내로 인입되어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아일랜드장, 화장대 등 가구의 위치를 옮길 경우 바닥에 인출된 전선관 또는 케이블이 노출될 수 있으므로 위치 이동 및 철거 시 고려해야 합니다.</li> </ul>

구분	내용
<p style="text-align: center;"><b>부대시설 및 근린생활시설</b></p>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부대복리시설은 사용상의 편리성과 디자인의 개선 및 현장 여건에 따라 용도 변경 및 통합, 실내 계획, 위치 및 외관과 크기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공용시설(엘리베이터, 주차장, 편의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경우에는 동별 위치에 따라 이용에 불편이 있을 수 있으니 계약 전 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이후에는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은 지상층 동 외부에 설치될 예정으로 일부 입주민에 주차장 배기 및 소음, 진동, 조망 저해, 냄새, 해충에 의한 사생활권 등의 환경권 침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해당 위치를 필히 확인 후 계약하시기 바라며, 세대와 인접하다는 이유로 이동 요구, 설치 거부를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쓰레기 분리수거장의 위치 및 개소는 사업승인 및 변경 도서 기준으로 시공되며, 시공 시 규모, 위치, 개소 등이 일부 변경될 수 있고, 쓰레기수거장의 설치로 인한 미관저해, 냄새 및 소음, 분진, 해충 등에 의한 환경권, 조망권 및 사생활 침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쓰레기 수거 차량의 상시 접근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계약 시 반드시 위치를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자전거 보관소는 지상 1층 필로티 하부에 설치되며, 위치와 수량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자전거 보관소는 법 또는 사업승인 조건을 충족하는 수량을 설치하며, 설치 위치 및 규모는 공사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출입구 인근에 근린생활시설이 위치하며, 입주 업종의 종류에 따라 저층 세대는 냄새, 소음 등의 환경권 침해가 있을 수 있으며 주거동과 함께 결합된 시설이므로 일부 주거동 지상 공간은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공간으로 구분되어 함께 이용됩니다. 이에 대해 계약자는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시설의 구성 및 건축이용계획은 인·허가 과정이나 본 공사 시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부대복리시설, 커뮤니티 관련 시설은 입주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의 기본 마감 외의 시설운명을 위한 내부 집기류(이동가구, 비품, 서적, 스탠드 등)는 제공되지 않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 주변 또는 상부에 실외기실이 계획되어 있으며, 이로 인해 조망권, 간섭 및 소음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설계변경을 통해 일부 실의 규모 및 배치형태, 내부구조 등의 건축계획과 마감재, 집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 및 공용부분 내 일부 공간은 일정 기간(입주개시후 30개월 내외, 단지 사정에 따라 조정 가능) 입주관리, 신속한 하자보수 등 입주민을 위한 입주지원센터, A/S센터가 운영된 뒤 향후 주민공동시설 등으로 변경될 계획이며, 이에 따른 임대차 비용 일체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커뮤니티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 방법에 대해서는 실입주 후 관리사무소 및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여 운영됩니다.</li> <li>■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인·수·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 있습니다.</li> <li>■ 부대시설의 구성 및 건축계획은 공간 활용의 개선을 고려해 실 배치계획, 구조, 창호의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골프연습장의 타석 개수는 인허가 협의 등의 결과 및 사용자 안전 확보를 위해 타석 수 축소 및 배치계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이후 설계변경 필요시 동의한 것으로 간주합니다.</li> <li>■ 관리사무소는 동일 업체를 선정하여 별도로 운영 예정이나 향후 입주자대표회의를 통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공동시설은 추후 시설의 사용 용도에 따라 구성되며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 후 입주자들의 편의 증진을 위해 공용부분(주거공용 제외) 및 복리시설 중 일부를 하자보수를 위한 업무시설 및 하자보수용 자재 보관 장소로 사업주체가 사용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른 사용료 등을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비주거 부분 등의 옥상 및 단지 주변에는 에어컨 실외기, 급배기, 환기팬, 기계장비, 조명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인접한 저층 세대에 조망권 침해 및 소음, 진동, 냄새, 분진, 눈부심 등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근린생활시설은 별도의 분양시설로서 아파트 계약자가 임의로 설계변경이나 대지지분 변경을 요구할 수 없으며, 공동주택단지외 별도 계획이 불가하므로 향후 각 대지지분에 따른 구획 및 분할을 요청할 수 없습니다.</li> <li>■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및 근린생활시설의 실외기 시설이 시설의 옥상 또는 인근 동 주변 및 동 1층 필로티 공간 등에 설치될 수 있으며, 배관이 아파트 공용부를 지나갈 수 있습니다. 설치 상세 계획은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주민운동시설은 101동, 105동 인근에 총 2개소가 설치될 예정이며, 좌우흔들기, 온몸당기기, 온몸근육, 어깨근육풀기, 팔내리기, 팔올리기 등의 운동시설이 설치될 예정이나, 세부 운동시설의 종류는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관리사무소, 부대복리시설(주민공동시설) 등의 에어컨 실외기 설치로 인한 인근 세대의 소음 등의 환경권 간섭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 (주민공동시설 등)의 옥상에는 실외기가 설치되며, 일부 근접 세대의 경우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 등 불편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근린생활시설 및 부대복리시설의 환풍, 실외기실, 배기탑 및 제연환풍 D/A 등의 지상 돌출물의 위치 및 형태 일부가 공사 중 변경될 수 있고 일부 저층세대에서 소음 및 진동, 시선 간섭이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지하층에 설치되는 기계실, 전기실, 저수조, 환풍 등은 본 시공 시 위치 및 크기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발전기 가동시 발전기 D/A 인접세대 및 보행자에게 소음, 진동, 매연 등으로 인한 불편함이 발생할 수 있으며, 위치 및 설치 개소는 실제 시공 시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무인택배 설비업체 운용지원 무상기간은 1년이며, 그 이후 입주자는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li> <li>■ 각 동별 세대수 대비 무인택배함 수량은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ul>

구분	내용
주차계획 (지하 주차장)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지하 주차장 진입 유효 높이는 지하 1층 2.7m(차량 통행로에 한함) 이상 확보되어 있고 그 외 층은 2.3m(차량 통행로에 한함) 이상 확보되어 있으며, 지하주차장 통행 폭은 6m 이상입니다.</li> <li>■ 주차장은 아파트 1,340대, 근린생활시설 5대 총 1,345대로 계획되어 있습니다.</li> <li>■ 주차대수는 대지 형태, 주동 배치에 따라 동별 차이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차대수는 전체세대에 대한 지하에 배치된 주차대수의 평균 대수이므로 각 동과 인접된 주차장이 주차대수보다 부족하다 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은 동선, 기능, 성능개선을 위하여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주차장에 해당하는 지하 주차장은 통합으로 계획되어 있으므로 현재의 배치, 차량 동선에 의하여 동별 주차 배분, 출입 동선의 길이 등은 일부 차이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 및 기타 공용면적에 포함되지 않는 피트 부분 등의 면적은 변경 사용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상부는 각종 배선, 배관이 노출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에는 근린생활시설의 배관, 케이블 및 기타 설비 등이 설치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은 최종 사업계획승인 도서에 준하여 시공되며, 현장 여건에 따라 경미한 변경이 있을 수 있으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부대시설 등 단지 내 부대시설 이용에 대하여 각 동별 계단실 등의 위치에 따라 거리 차이가 있을 수 있으니, 배치 및 이용 여건 등에 대해 충분히 확인 바랍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는 지하 주차장에 각 층별로 나누어 급속 14대, 완속 54대 충전기용 콘센트 40개 총 108대로 분산 배치되어 있으며, 동별 접근성에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 후 기기에 대한 유지, 관리, 보수 및 전기세 납부는 입주자의 책임과 비용으로 관리해야 합니다.</li> <li>■ 전기자동차 충전설비 구축은 오직 충전 시에만 사용할 수 있는 구획으로써, 충전 이외의 일반 주차구획으로 사용될 수 없으며 비충전 점유 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li> <li>■ 지하 주차장과 각 동을 연결하는 통로공간과 지하 부분 엘리베이터 홀, 계단실은 습도 및 온도차에 의해 결로가 발생할 수 있으며, 주기적으로 환기를 적절히 시행하고 관리 차원의 예방 조치가 필요하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차장 출입부의 디자인은 현장 여건에 따라 분양모형과 상이하게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장은 계획상 기둥 간격이 일정하지 않아 일부 주차면에는 기둥과 간섭(운전석/보조석)되어 승하차 시 불편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주차장 및 펌프실, 전기실 등의 환기를 위하여 D/A(환기구)가 설치되며 이로 인한 시야 가림, 소음, 분진, 냄새 등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확인하시고 미확인으로 발생하는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단, 해당 시설의 위치는 시공 시 다소 변경될 수 있음)</li> </ul>
조경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녹지, 조경 식재 및 시설, 포장, 조경부대시설, 동선계획 등의 면적, 위치, 규모, 수량, 크기, 색채, 형태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외부 조경 식재 및 시설물(녹지, 잔디, 수목, 휴게시설, 운동시설, 조경시설물, 보도 및 차도 포장재, 가로수, 외부조명 등)은 공동으로 사용하는 시설물로서, 입주민에게 인계된 이후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 및 특정 서비스에 관한 책임 및 발생 비용은 입주자에게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 선형, 바닥 포장 및 세부 식재 계획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수경시설, 포장 등)은 설계변경 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세부 계획에 따른 단지 내 도로선형, 산책로 등의 동선계획이 및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수목의 생육과 조기 활착을 위해 식재 시 뿌리분에 감겨진 철사, 고무바 등은 제거되지 않고 존치될 수 있으며, 이는 수목 고사와 전혀 관련 없는 사항으로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공간에 시설물 환기 및 채광을 위한 시설물(환기창, D/A)이 노출되어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식재 계획의 위치와 규모, 수종 등은 변경될 수 있으며, 조경 선형이나 포장 및 각종 시설물의 규모, 재료, 형태, 색채, 위치 등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부 포장의 재료, 패턴 및 색상은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각종 옹벽 및 레벨차로 인한 경사지 형성으로 인해 일부 인접 구간은 조경 활동 공간이 아닌 실제 사용할 수 없는 공간이므로 유의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의 저층부(1~5층)는 식재로 인한 일부 조망권이 침해될 수 있음을 확인하고 계약을 체결하여야 하며 이로 인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조경, 조경수 식재는 단지 조화 등을 고려하여 설치나 위치가 변경될 수 있고, 관계기관의 심의 결과 또는 시공과정에 의한 설계변경에 따라 도로의 선형 및 포장, 조경시설물의 색채, 형태, 재료, 위치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과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조경(식재, 시설물, 공간계획, 포장 등)은 설계 변경될 수 있으며, 이로 인한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실제 시공 시 현장 여건 따른 소방 안전 검토에 따라 설계 시 반영된 소방차 전용 구간 및 소방, 안전 활동을 위한 구획 등이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계획이 변경되거나 수목이 삭제, 변경될 수 있으나 이는 민원 대상이 아닙니다.</li> </ul>



구분	내용
입면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주동 외부 특화 계획에 따라 세대별로 외부 창호의 크기, 색채 및 모양이 다를 수 있으니 반드시 계약 전 확인 후 계약을 체결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내 건축물의 색채, 형태, 패턴, 마감재와 같은 외관 디자인은 시공상의 문제 또는 향후 지자체 경관 자문 및 시공과정 상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동의 외벽에 부착되는 싸인물, 장식물은 분양모형과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외부색채와 외부 상세계획 등은 인허가, 색채심의 및 법규의 변경, 디자인의 개선 등으로 인하여 향후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본 단지의 외부 마감에 따라 일부 세대의 전·후면 발코니 등에 장식물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아파트에 부착되는 옥상 장식물과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습니다.</li> <li>■ 본 아파트 근린생활시설의 외관 및 색채, 마감자재는 분양 후 외관 개선을 위해 변경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의 경우 별도의 동의 없이 진행될 수 있으며, 경미한 사항 외의 경우 추후 관련한 내용의 안내에 따라 설계변경 동의서를 작성 및 제출하여야 합니다. 해당 설계 변경 동의서의 미 협조 시 외관 개선이 불가하며 견본주택에 전시된 모형 및 CG를 기반으로 시공됩니다.</li> <li>■ 본 아파트에 적용된 각종 입면 및 마감, 색채에 대한 디자인 일체는 사업주체의 고유한 자산이므로 인허가 등 중대한 변경 사유 발생 및 마감 수준 저하가 아닌 경우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인허가 진행 및 본 공사 시 외관 개선을 위하여 아파트 및 부대시설의 외관 디자인(입면 마감재료 및 색채, 축벽디자인, 옥탑 장식물, 몰딩, 창틀 모양 및 색상 등), 필로티, 동 현관, 캐노피, 지하 출입구, 난간 디테일, DRY AREA, 조정패턴 등 외부 시설물 등은 관계기관의 협의 결과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해 변경될 수 없습니다.</li> <li>■ 본 아파트의 저층부, 근린생활시설의 외부 입면 디자인과 마감재 변경 및 기타 설계변경 등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아파트 축벽 로고의 위치는 변경될 수 있으며 개인취향 민원에 의한 변경사항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외부에 사용되는 각종 자재의 경우 수급 불가 및 단종, 외부환경 및 현장 여건 등의 사유로 인하여 동등하거나 그 이상의 제품으로 변경 시공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주동 외벽 등에 장식물, 조명 및 외부 별도 마감재가 부착될 수 있으며, 외벽에 부착되는 장식물, 조명, 난간, 기타 부착장식물 등은 인접 세대에 소음 및 눈부심 등을 일으킬 수 있으니 반드시 확인하기 바라며, 이에 대하여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주동 및 부대시설의 외관(입면, 창호, 난간, 로고 등의 형태 및 색), 공용부분의 계획(조경, 주동 출입구, 지하 출입구 등)은 실제 시공 시 설계 개선, 시공성, 편의성, 구도 등의 개선 사유로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입주자에게 별도의 동의 절차를 받지 않습니다.</li> <li>■ 단지 내 동 현관, 지하 출입구 등 공용부분은 디자인 의도에 따라 형태, 재질, 색채 등이 각기 다르며 상기 사항은 입주자의 개인 취향이나 민원에 의한 변경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 내 노출되는 옹벽이나 구조물의 마감은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각 주동별 외장재는 저층부는 석재가 시공되나 계단실과 승강기 홀로 구성된 코어 부분은 도장이 적용됩니다.</li> <li>■ 각 주동별 외장 석재 적용 층수는 인접한 데크 부분 계획에 의해 서로 상이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데크 형태의 입면(옹벽, 조경석, 토목 옹벽 등의 구조물, 주차 출입구, 부대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입면 포함)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ul>
전기/ 통신/ IoT 관련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지 내 전기공급을 위한 한전 시설물(전주, 변압기, 개폐기 패드 등) 및 통신사업자 시설물(케이블 등)이 동 주변 지상에 설치되어 일부 세대에서 보일 수 있고, 해당 설비 및 전력맨홀, 통신맨홀 등의 위치와 외부 배관 인입 위치는 한국전력, KT 또는 기간 통신사업자와의 협의 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통신실(TPS실)의 Work Group Switch Hub, 광분배기 및 통신 세대단자함 내에 시설되는 MultiPlexer 등은 기간사업자 제공 분으로 시공사에 설치를 요구할 수 없습니다.</li> <li>■ 홈넷 서버 운용을 위한 전용 IP 비용은 준공 후 6개월까지 지원함. 그 후 발생하는(인터넷 업체 변경 포함) 전용 IP 비용은 입주자 부담입니다.</li> <li>■ 주차 관제시스템 등 입주자 편의시설 원활한 사용을 위하여 개인정보(휴대전화번호, 차량번호 등)를 요구할 수 있습니다.</li> <li>■ 주차 관제시스템(입출차 차단기 등)의 위치는 교통통제의 편리성 및 효율성을 위하여 이동하여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조명기구 설치로 인해 일부 세대는 다소 불편함을 겪을 수 있으며, 이와 관련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신재생에너지 공사(ex: 태양광 발전 공사)는 효율성 등을 고려하여 설비의 구조 및 형태, 설치 위치가 변경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신재생에너지 설비의 에너지 생산량은 자연환경 및 입주자의 유지 관리 유무에 따라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li> <li>■ 아파트 입주민들을 위한 한화건설 모바일 전용 APP이 제공되는 경우, 해당 서비스는 준공 3년 이후, 홈넷 및 무인 경비공사 업체와 유지보수 계약을 요하는 유료로 전환되며, “을”은 서비스 적용과 연장 여부를 결정할 수 있음. 또한 전용 APP 서비스 중 일부는 기간사업자(통신사, 포털사, 가전사 등)의 연동을 통하여 제공될 수 있으며, 기간사업자의 서비스 정책에 따라 변경(유료·무료 서비스 내용)될 수 있습니다. (한화건설 전용 APP 미적용 시 홈넷사 제공 APP 적용)</li> <li>■ 견본주택 영상의 IoT 기능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 입주 시 미구현 또는 성능개선 등 서비스 항목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전기통신사업법 제 69조의 2 및 방송통신설비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정 제 24조의 2 등에 의거, 기간 통신사업자 협의 대표인 한국전파진흥협회 이동통신설비 구축지원센터와 구내용 이동통신설비의 설치 장소 및 설치 방법에 대하여 협의하였으며, 단지 내에 기간통신사업자의 이동통신 중계기 및 옥외안테나가 설치 될 예정이며, 본 공사 시 우수한 통신 품질이 제공될 수 있는 위치로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 추후 이에 대한 문제를 제기할 수 없으므로 청약 전 반드시 확인 후 청약하시길 바랍니다. * 이동통신 설비 설치 예정 위치 : 옥상층 : 105,106,107,110동 / 지하 1층 : 106동 쉼룸, 107동 쉼룸, 108동 쉼룸, 109동 PIT</li> <li>■ 스마트폰 원패스 기능은 휴대폰 및 사용 OS 버전 등 아래의 내용에 따라 사용이 제한될 수 있음. 또한, 아래의 기능이 휴대폰 내에서 활성화 시에만 기능이 구현됩니다. * GPS, Bluetooth, 위치 권한, 원패스 어플리케이션 활성화 등이 ‘ON’ 설정이 되어 있어야 합니다. (휴대폰 배터리 사용량에 영향을 미칠 수 있음) * 최소 요구사항 : Bluetooth Version 4.0 이상 / Android : v4.3 이상 / IOS : v13.0 이상 / Galaxy S6 이상 및 Apple I-phone 6s 이상 * 해당 어플은 최신 상태를 유지</li> </ul>

구분	내용
기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단열재 사양 및 공용부, 부대시설, 필로티 계획 등 관련 법령에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설계변경은 계약자의 동의 없이 사업주체가 인허가를 진행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전기&amp;통신시설물(공용조명 포함), 단지 홍보용 사인물, 포장시설, 수목관리 등)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보수,관리에 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공용부위 조명 및 경관 조명, 보안등, 조경용 조명, 싸인용 조명 등 단지에 포함된 시설물로 인하여 발생하는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li>■ 단지 내 설치되는 미술 장식품은 인허가 관청의 미술 장식 설치계획 심의를 득하여야 하는 사항으로 위치, 형태, 수량 등은 심의과정과 현장 여건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한국전력 전기 공급 약관에 의거하여 부지 내 한전 개폐기 등이 설치될 수 있습니다.</li> <li>■ 동파가 우려되는 설비 배관에는 동파 방지를 위한 열선이 적용되며 이에 따른 전기료가 관리비에 포함하여 부과됩니다.</li> <li>■ 소방내진법규에 의거하여 위생·소방용 수조의 규격, 재료, 형식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준공 시 소방 및 장애인 기준에 관련된 사항은 허가 완료 시 보다 법적 의무 적용사항이 추가로 발생할 수 있으며, 해당 기준에 맞춰 설계변경이 추진될 수 있으므로 이를 인지하고 계약하여야 하며, 이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분양 시 계획된 야간경관조명 계획은 야간경관심의 의견에 따라 일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경관조명으로 발생하는 유지, 보수 등에 대한 비용은 입주자가 관리비로 부담하여야 하며, 시설물에 대한 계획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 내 입주민이 공용으로 사용하는 주거동 및 지하 주차장, 부대복리시설 등의 유지, 보수, 관리에 관한 일체의 비용은 입주자가 부담하여야 합니다.</li> </ul>

## 건본주택 유의사항

구분	내용
건본주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건본주택은 84A,84B,99A타입만 설치되며, 건본주택에 미설치된 타입에 대해서는 분양사이트, 마감재리스트, VR 등을 통해 평면 및 마감재, 옵션에 대한 정보를 정확히 확인하여야 합니다.</li> <li>■ 건본주택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하여 무상선택품목 뿐 아니라 추가선택품목(유상옵션)도 설치되어 있으므로 반드시 계약 전 마감사양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모든 CG, VR, 모형, 홍보물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li> <li>■ 분양 홈페이지 세대 동영상은 건본주택을 촬영한 것으로 마감재 이외에 디스플레이를 위한 전시상품이 포함된 동영상이므로 분양 홈페이지상의 전시품목 안내 및 건본주택은 청약 및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 모형의 색상, 입면, 구조물, 주동 출입구 등은 본 공사 시 디자인 및 구조, 재질, 설치 위치 등이 변경되어 시공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모형 단지 경계 외부는 이해를 돕기 위한 표현으로 사실과 다를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현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건본주택 모형의 단지 경계 내 바닥표현의 재료는 블록 포장으로 모형의 스케일에 따라 표현에 한계가 있는 사항으로, 본 시공 시 패턴 및 색상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 청약 및 계약 전 해당 사항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모형의 조경, 식재, 주변 환경 및 부지 고저차 등은 실제 시공 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단지모형에서 대지 주변현황, 공사 시 필요한 설비기기 및 출입문 등은 표현되지 않습니다.</li> <li>■ 단지모형에서 구획선과 시설물의 위치, 규모, 색채 및 설계도면 등의 표시가 계약체결 이후 설계변경승인 및 신고 등에 따라 일부 변경될 경우에는 인허가 내용대로 시공됩니다.</li> <li>■ 건본주택 내 조명, 디스플레이용 장식품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한 것으로 본공사시 제외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시공된 제품은 자재의 품질, 품귀, 생산중단, 제조회사의 도산 등 부득이한 경우에는 동질, 동급의 타사 제품으로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 설치된 CCTV는 건본주택용으로 본공사 시 설치되지 않습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감지기, 유도등 및 스프링클러는 건본주택 자체의 소방시설이며, 본공사 시 설계도면 및 화재안전기준에 의거하여 설치됩니다.</li> <li>■ 건본주택은 분양 후 일정기간 공개를 거쳐 폐쇄 및 철거할 수 있으며, 철거 전 동영상 또는 사진으로 건본주택 내부를 촬영하여 보관할 예정입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조명기구, 전기분전반, 통신단자함, 배선기구류, 월패드 등은 제품의 성능, 디자인 및 기능 개선을 위해 제품 사양, 위치, 수량 등이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 설치된 전시조명 및 디스플레이 연출용 조명은 연출을 위한 조명으로 본공사에 적용되지 않는 품목입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보조 조명, 커튼, 소파, 거실장, 거실 테이블, 침대, 책상 등의 이등식 가구, 디스플레이 가전, 액자 및 소품, 벽판넬, 브라켓 및 펜던트 조명은 세대 연출을 위한 것으로 본 공사 시 시공에서 제외합니다.</li> <li>■ 건본주택에 설치된 세대 환기 장치, 환기 디퓨저, 온도조절기, 콘센트 및 바닥배수구, 욕실환풍기 등의 제품사양 및 위치는 실시공시 다소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건본주택 내에서 확인이 어려운 사항인 공용부분의 시설물(공용계단, 지하주차장, 엘리베이터의 용량 및 속도, 탑승위치 등)은 사업계획 승인도서에 준하며, 이로 인해 사업주체 및 시공사에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ul>

구분	내용
홍보물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카탈로그 및 각종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일러스트(그림) 등은 계약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상이할 수 있으며, 식재 및 시설물의 위치와 규모는 다소 변경될 수 있으므로 계약자는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에 사용된 모형(단지 모형 등)과 공급안내문, 카탈로그 및 각종 인쇄물, 홍보영상 기타 홍보물에 삽입된 CG(광역 위치도, 조감도, 배치도, 투시도, 주민공동시설 평면도, 입체도와 평면도 등),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평면도(치수, 구획선), 실내 투시도(색상, 구획선), 면적 및 도면 내용 등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개략적으로 제작된 것으로 실제 시공과는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이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단위세대 평면도 및 이미지컷은 입주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등을 시뮬레이션한 것으로 계약 시 포함 여부를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며, 기본형 선택 시 제외 품목이나 기본품목, 공간 분할 등에 대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홍보물 및 모형에 표현된 주변 토지 및 건물 현황은 간략하게 표현된 것이므로 계약 전에 현장 답사 및 사전 확인을 통하여 충분히 확인하시기 바라며 추후 미확인에 따른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li> <li>■ 입주자모집공고 이전 제작, 배포된 홍보물 등은 사전 홍보 시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제작된 것으로 현재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니 견본주택을 확인하시어 계약 시 착오 없으시길 바랍니다.</li> <li>■ 각종 광고 및 홈페이지 VR, 홍보물(카탈로그, 전단, 안내문 등) 등 홍보 과정에서 현재 계획 또는 예정으로 홍보한 내용은 추후 인허가 과정이나 관계기관의 사정, 관련 정책 등의 변화로 변경될 수 있으며, 홍보물 제작과정에서 오기 및 오타자로 인하여 잘못 기재될 수 있으니 견본주택에 방문하시어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단지 이미지컷 및 전시모형은 전 세대 발코니 확장을 감안하여 작성되었습니다.</li> <li>■ 카탈로그 및 홍보물 등에 이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과 견본주택 내 전시모형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임의로 가구 및 집기류를 표현하여 촬영 또는 제작 연출한 것으로 식재 및 색상, 시설물 등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이를 충분히 인지하고 견본주택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고 청약 및 계약하시기 바랍니다.</li> <li>■ 분양 관련 팸플릿, 인쇄물 등에 삽입된 조감도, 단지 배치도, 이미지컷 등 각종 홍보물 및 견본주택에 설치된 모형도(주변 현황 및 기반 시설은 이미지로 제작되었기 때문에 실제와 다를 수 있고 추후 변경될 수 있으며 이해를 돕기 위해 설치함)상의 외부 공간 식재, 시설물, 포장 계획, 시설물의 위치, 규모 및 색채는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한 것으로 실제와 차이가 있을 수 있고, 측량결과, 각종 평가 심의 결과 및 사업계획(변경)승인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습니다.</li> <li>■ 분양홍보물 등 인쇄물에 사용된 사진, 이미지, 일러스트(그림) 등은 소비자의 이해를 돕기 위해 촬영 또는 제작한 것으로 실제와 다소 상이할 수 있으므로 분양 홈페이지 및 현장을 방문하시어 직접 확인하시기 바라며, 계약 체결 시 견본주택, 평면도, 배치도 등 현황 관계를 확인하고 계약 체결하여야 하며, 추후 이를 확인하지 않음으로써 발생하는 문제는 계약자에게 귀책 사유가 있습니다.</li> <li>■ 카탈로그 내용과 입주자모집공고문 및 공급계약서 내용이 서로 다를 경우 입주자모집공고문과 공급계약서 내용이 우선 적용됩니다.</li> <li>■ 본 공고내용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은 「주택법」,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등 관계법령에 의거합니다.</li> </ul>

## X 기타사항

- **입주자 사전 방문 안내**
  - 「주택법」 제48조의2, 「동법 시행규칙」 제20조의2 등에 따라 도장공사, 도배공사, 가구공사, 타일공사, 주방용구 공사 및 위생기구 공사의 상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입주지정일 전 입주 개시 약 45일 전에 입주자 사전 방문을 실시할 예정이며, 정확한 사전 방문 예정 일자는 별도 통보할 예정입니다.
- **입주예정일 : 2025년 11월 예정 (정확한 입주일자는 추후 통보합니다.)**
  - 실입주일이 입주예정일 보다 앞당겨질 경우 미도래 중도금과 잔금을 실입주지정일에 함께 납부하여야 합니다.
  - 입주예정일은 공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공사 중 천재지변, 전염병, 문화재 발견 등 예기치 못한 사유가 발생할 경우 예정된 공사일정 및 입주 시기 등이 지연될 수 있습니다.
  - 계약자가 계약한 동·호수에 대하여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후 발생하는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에 대하여는 입주 및 잔금 완납이나 소유권 이전 여부에 관계 없이 계약자가 부담하며, 계약자의 납부 불이행으로 사업주체가 손해를 입은 경우에는 계약자가 이를 배상하여야 합니다. 단, 입주지정기간 만료일 이전에 잔금을 완납한 경우, 계약자가 잔금을 완납한 날부터 제세공과금 및 관리비를 계약자가 부담합니다.
  - 계약자는 입주지정기간 이내에 잔여 중도금 및 잔금, 연체료를 완납하고, 사업주체가 요구하는 제반 서류 및 비용(중도금대출 상환 영수증 또는 중도금대출에서 담보대출로 대환되는 은행 확인 서류, 소유권이전등기에 필요한 제반 서류 및 비용, 선수관리비 납부영수증 등)을 사업주체에게 제출 또는 납부한 후에 입주증을 발급받아 입주하여야 합니다.

- 부대복리시설 : 관리사무소, 작은도서관, 어린이놀이터, 경로당, 주민운동시설(2개소), 다함께 돌봄센터, 독서실, 피트니스(1개소), 골프연습장(1개소) 등
- 단지 내 부대시설(주민운동시설, 어린이집, 작은도서관 등)은 사업주체가 설치하고 운영 및 관리 등은 입주 후 입주자 부담으로 입주자가 직접 운영하여야 하며, 입주자 대표회의에서 인수, 인계하기 전까지 위탁관리를 할 수도 있습니다.
- 단지에 설치되는 부대/복리시설 및 주민공동시설 등에 대한 사용과 운영 방안에 대해서는 입주민 전체의 공동시설물로 사용함을 원칙으로 하나, 실입주 후 '입주자대표위원회(가칭)'에서 결정됩니다.

▪ 내진 성능 및 능력 공개 - 건축법 제48조 제3항 및 제48조의3 제2항

- 내진 등급 : 1등급, 내진설계 능력(MMI진도 : VII / 설계지반최대가속도 0.204g)입니다.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

- 하자 등에 따른 소비자 피해보상은 「공동주택관리법」 제36조, 제37조, 동법 시행령 제36조, 제37조, 제38조 및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9조의 2, 동법시행령 제5조에 의거하여 적용됩니다.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1조 제3항 제21호에 따라 친환경주택의 성능 수준을 다음과 같이 표기합니다.

★친환경 주택의 성능수준	
단열 조치 준수	적용
바닥난방의 단열재 설치	적용
방습층 설치	적용
설계용 외기 조건 준수 (냉난방 설비가 없는 경우 제외)	적용
열원 및 반송설비 조건	적용
고효율 전동기	적용
고효율 난방, 급탕 급수펌프	적용
절수형 설비 설치	적용
실별 온도조절장치	적용
수변전설비 설치	적용
간선 및 동력설비 설치	적용
조명설치	적용
대기전력 자동차단장치 설치	적용
공용화장실 자동점멸스위치	적용

■ 친환경 인증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	녹색건축 예비 인증서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																																																																																																																																																							
<p style="text-align: center;"><b>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b></p> <p>1. 공동주택명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7-2블럭 공동주택                  2. 신청자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3. 대지위치 :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7-2블럭                  4. 성능등급 : 가. 소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정량측정용 차단성능</td> <td>★★★★</td> </tr> <tr> <td>2. 음향측정용 차단성능</td> <td>★★★★</td> </tr> <tr> <td>3. 최대 간격벽의 좌측성능</td> <td>★★★★</td> </tr> <tr> <td>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외 소음도</td> <td>★</td> </tr> <tr> <td>5. 화상 및 화재 소음</td> <td>★★</td> </tr> </table> <p>나. 구조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내구성</td> <td>★★</td> </tr> <tr> <td>2. 가연성</td> <td>★★</td> </tr> <tr> <td>3. 수밀유이성 전용부분</td> <td>★</td> </tr> <tr> <td>4. 수밀유이성 공용부분</td> <td>★★</td> </tr> </table> <p>다. 환경 관련 등급(계승)</p>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8. 절수용 기기 사용</td> <td>★★</td> </tr> <tr> <td>19. 물 사용량 모니터링</td> <td>★★</td> </tr> <tr> <td>20. 단열단 녹지율 조성</td> <td>-</td> </tr> <tr> <td>21. 적정기온 유지율</td> <td>★</td> </tr> <tr> <td>22. 생체연적률</td> <td>★</td> </tr> <tr> <td>23. 생활취약장(비오락) 조성</td> <td>★★</td> </tr> <tr> <td>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제정의 적용</td> <td>★★★★</td> </tr> <tr> <td>25. 자연 환기성능 확보</td> <td>-</td> </tr> <tr> <td>26. 단열제에 환경성능 확보</td> <td>★★</td> </tr> <tr> <td>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td> <td>★★</td> </tr> </table> <p>라. 생활 환경 등급</p>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td> <td>★★</td> </tr> <tr> <td>2. 대중교통의 근접성</td> <td>★★</td> </tr> <tr> <td>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td> <td>-</td> </tr> <tr> <td>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td> <td>-</td> </tr> <tr> <td>5. 인접현장의 환경관리 계획</td> <td>★★★★</td> </tr> <tr> <td>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미뉴얼 제공</td> <td>★★★★</td> </tr> <tr> <td>7. 사용자 매뉴얼 제공</td> <td>★★★★</td> </tr> <tr> <td>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td> <td>★★</td> </tr> <tr> <td>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0. 공용공간과 사회적 약자배려</td> <td>★★</td> </tr> <tr> <td>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td> <td>★★★★</td> </tr> <tr> <td>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td> <td>★</td> </tr> <tr> <td>13. 총면적률 및 스프레드</td> <td>★★</td> </tr> <tr> <td>14. 방범안전 문턱조</td> <td>★★</td> </tr> </table> <p>마. 화재·소방 관련 등급</p> <table border="1"> <tr> <th>성능항목</th> <th>성능등급</th> </tr> <tr> <td>1. 감지 및 경보설비</td> <td>★</td> </tr> <tr> <td>2. 제연설비</td> <td>★★</td> </tr> <tr> <td>3. 내화성능</td> <td>★</td> </tr> <tr> <td>4. 수평피난거리</td> <td>★★</td> </tr> <tr> <td>5. 복도 및 계단 유도등</td> <td>★★★★</td> </tr> <tr> <td>6. 피난설비</td> <td>★★</td> </tr> </table> <p>「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 및 「주택법」 제39조에 따라 위와 같이 공동주택성능등급 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부동산원</b></p>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정량측정용 차단성능	★★★★	2. 음향측정용 차단성능	★★★★	3. 최대 간격벽의 좌측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외 소음도	★	5. 화상 및 화재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밀유이성 전용부분	★	4. 수밀유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절수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단열단 녹지율 조성	-	21. 적정기온 유지율	★	22. 생체연적률	★	23. 생활취약장(비오락)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제정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열제에 환경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5. 인접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미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과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총면적률 및 스프레드	★★	14. 방범안전 문턱조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등	★★★★	6. 피난설비	★★	<p style="text-align: center;"><b>녹색건축 예비인증서</b></p> <table border="1">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7-2블럭 공동주택                  건축주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준공(예정)일 : 2025.08.31.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7-2블럭                  층수 : 지하2층, 지상29층                  연면적 : 168,245.5442㎡ (평가연면적: 168,009.8122㎡)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td> <td>인증번호 : G-SEED-P-2022-1171-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10.20.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1.11.01.))</td> </tr> </table> <p>위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6조 및 「녹색건축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녹색건축(우량(그린3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div style="text-align: center;"> <p>(분류별 평가)</p> <p>에너지 및 환경모범 68%</p> <p>재료 및 자립 49%</p> <p>물순환 관리 44%</p> <p>유지관리 93%</p> <p>생태환경 31%</p> <p>실내환경 68%</p> <p>종합등급 ★☆☆☆</p> </div>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0월 20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부동산원장</b></p> <p style="text-align: center;">*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변경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7-2블럭 공동주택 건축주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준공(예정)일 : 2025.08.31.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7-2블럭 층수 : 지하2층, 지상29층 연면적 : 168,245.5442㎡ (평가연면적: 168,009.8122㎡)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P-2022-1171-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10.20.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1.11.01.))	<p style="text-align: center;"><b>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예비인증서</b></p> <p>■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재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별지 제6호서식) &lt;개정 2017.1.20&gt;</p> <table border="1"> <tr> <th>건축물 개요</th> <th>인증 개요</th> </tr> <tr> <td>건축물명 : 평택 화양지구 7-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25.11.30                  주소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7-2블럭                  층수 : 지하2층 / 지상29층                  연면적 : 168,245.5442㎡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td> <td>인증번호 : 22-주-에-1+-0051                  평가자 : 박한림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sup>2</sup>-년)</th> <th>요구량 (1차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th> <th>등급</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 <th>배출량</th> </tr> <tr> <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td> <td>75.3</td> <td>1++</td> <td>48</td> <td>18.2</td> </tr> <tr> <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기준</td> <td></td> <td></td> <td>56</td> <td></td> </tr> <tr> <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기준</td> <td></td> <td></td> <td>64</td> <td></td> </tr> <tr> <td>에너지저소비량 건축기준</td> <td></td> <td></td> <td>72</td> <td></td> </tr> </table> <p style="text-align: center;">에너지 용도별 평가결과</p> <table border="1"> <tr> <th>구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sup>2</sup>-년)</th> <th>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sup>2</sup>-년)</th> <th>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sup>2</sup>-년)</th> <th>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kg/m<sup>2</sup>-년)</th> </tr> <tr> <td>냉방</td> <td>0.0</td> <td>0.0</td> <td>0.0</td> <td>0.0</td> </tr> <tr> <td>난방</td> <td>39.2</td> <td>49.6</td> <td>36.7</td> <td>8.2</td> </tr> <tr> <td>급탕</td> <td>30.7</td> <td>37.8</td> <td>27.9</td> <td>6.3</td> </tr> <tr> <td>조명</td> <td>5.4</td> <td>4.7</td> <td>12.9</td> <td>2.2</td> </tr> <tr> <td>합계</td> <td>75.3</td> <td>95.1</td> <td>86.1</td> <td>18.2</td> </tr> </table> <p>■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 건축물에 냉방, 난방, 급탕, 조명 부문에서 요구되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 건축물에 설치된 냉방, 난방, 급탕, 조명, 환기시스템에서 드는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 : 에너지소비량에 연료의 체적, 기온, 운송, 변환, 공급 과정 등의 손실을 포함한 단위면적당 에너지량      ■ 단위면적당 CO<sub>2</sub> 배출량 : 에너지 소비량에서 산출된 단위면적당 이산화탄소 배출량      * 이 건물은 냉방설비(기) 1설치된 V(상시저지압)건축물입니다      * 예비인증을 받은 건축물은 원공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      * 단위면적당 1차에너지소요량은 온도 등에 따른 조정계수를 반영한 결과입니다.      * 건축물은 「녹색건축물 조성 지원법」 제 17조 및 「건축물 에너지효율등급 인증 및 재에너지건축물 인증에 관한 규칙」 제11조제3항에 따라 에너지효율등급( 1++등급 )건축물로 인증되었기에 예비인증서를 발급합니다.</p> <p style="text-align: center;">2022년 10월 19일</p> <p style="text-align: center;"><b>한국부동산원장</b></p> <p style="text-align: center;">* 예비인증 받은 건축물은 변경 후에 본인증을 받아야 하며, 설계변경에 따라 인증 결과가 달라질 수 있습니다.</p>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평택 화양지구 7-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25.11.30 주소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7-2블럭 층수 : 지하2층 / 지상29층 연면적 : 168,245.5442㎡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2-주-에-1+-0051 평가자 : 박한림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요구량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배출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	75.3	1++	48	18.2	에너지저소비량 건축기준			56		에너지저소비량 건축기준			64		에너지저소비량 건축기준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9.2	49.6	36.7	8.2	급탕	30.7	37.8	27.9	6.3	조명	5.4	4.7	12.9	2.2	합계	75.3	95.1	86.1	18.2
성능항목	성능등급																																																																																																																																																								
1. 정량측정용 차단성능	★★★★																																																																																																																																																								
2. 음향측정용 차단성능	★★★★																																																																																																																																																								
3. 최대 간격벽의 좌측성능	★★★★																																																																																																																																																								
4. 교통소음(도로, 철도)에 대한 실내 외 소음도	★																																																																																																																																																								
5. 화상 및 화재 소음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내구성	★★																																																																																																																																																								
2. 가연성	★★																																																																																																																																																								
3. 수밀유이성 전용부분	★																																																																																																																																																								
4. 수밀유이성 공용부분	★★																																																																																																																																																								
성능항목	성능등급																																																																																																																																																								
18. 절수용 기기 사용	★★																																																																																																																																																								
19. 물 사용량 모니터링	★★																																																																																																																																																								
20. 단열단 녹지율 조성	-																																																																																																																																																								
21. 적정기온 유지율	★																																																																																																																																																								
22. 생체연적률	★																																																																																																																																																								
23. 생활취약장(비오락) 조성	★★																																																																																																																																																								
24. 실내공기 오염물질 저감률 제정의 적용	★★★★																																																																																																																																																								
25. 자연 환기성능 확보	-																																																																																																																																																								
26. 단열제에 환경성능 확보	★★																																																																																																																																																								
27. 자동온도조절장치 설치 수준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단지내·외 보행자 전용도로 조성 및 연결	★★																																																																																																																																																								
2. 대중교통의 근접성	★★																																																																																																																																																								
3. 자전거주차장 및 자전거도로의 적합성	-																																																																																																																																																								
4. 생활권시설의 접근성	-																																																																																																																																																								
5. 인접현장의 환경관리 계획	★★★★																																																																																																																																																								
6. 운영·유지관리 문서 및 미뉴얼 제공	★★★★																																																																																																																																																								
7. 사용자 매뉴얼 제공	★★★★																																																																																																																																																								
8. 녹색건축인증 관련 정보제공	★★																																																																																																																																																								
9. 단위세대의 사회적 약자배려	★																																																																																																																																																								
10. 공용공간과 사회적 약자배려	★★																																																																																																																																																								
11. 커뮤니티 센터 및 시설공간의 조성수준	★★★★																																																																																																																																																								
12. 세대 내 일조 확보율	★																																																																																																																																																								
13. 총면적률 및 스프레드	★★																																																																																																																																																								
14. 방범안전 문턱조	★★																																																																																																																																																								
성능항목	성능등급																																																																																																																																																								
1. 감지 및 경보설비	★																																																																																																																																																								
2. 제연설비	★★																																																																																																																																																								
3. 내화성능	★																																																																																																																																																								
4. 수평피난거리	★★																																																																																																																																																								
5. 복도 및 계단 유도등	★★★★																																																																																																																																																								
6. 피난설비	★★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7-2블럭 공동주택 건축주 :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준공(예정)일 : 2025.08.31. 주소 : 경기도 평택시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7-2블럭 층수 : 지하2층, 지상29층 연면적 : 168,245.5442㎡ (평가연면적: 168,009.8122㎡) 건축물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G-SEED-P-2022-1171-5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유효기간 : 2022.10.20. ~ 사용승인일과 녹색건축인증서 발급일 중 앞선날 인증등급 : 우량(그린3등급) 인증기준 : 녹색건축 인증기준 (국토교통부고시 제 2021-278호, 환경부고시 제2021-66호, 인증기준 운영세칙(2021.11.01.))																																																																																																																																																								
건축물 개요	인증 개요																																																																																																																																																								
건축물명 : 평택 화양지구 7-2블럭 공동주택 신축공사 준공연도 : 2025.11.30 주소 :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지 내 7-2블럭 층수 : 지하2층 / 지상29층 연면적 : 168,245.5442㎡ 건축물의 주된 용도 : 공동주택 설계자 : (주)희림종합건축사사무소	인증번호 : 22-주-에-1+-0051 평가자 : 박한림 인증기관 : 한국부동산원 운영기관 : 한국에너지공단 유효기간 : 사용승인 또는 사용검사 완료일 인증등급 : 1++등급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요구량 (1차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등급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배출량																																																																																																																																																					
에너지저소비량 건축실제	75.3	1++	48	18.2																																																																																																																																																					
에너지저소비량 건축기준			56																																																																																																																																																						
에너지저소비량 건축기준			64																																																																																																																																																						
에너지저소비량 건축기준			72																																																																																																																																																						
구분	단위면적당 에너지요구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에너지소요량 (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1차 에너지소요량(kWh/m <sup>2</sup> -년)	단위면적당 CO <sub>2</sub> 배출량 (kg/m <sup>2</sup> -년)																																																																																																																																																					
냉방	0.0	0.0	0.0	0.0																																																																																																																																																					
난방	39.2	49.6	36.7	8.2																																																																																																																																																					
급탕	30.7	37.8	27.9	6.3																																																																																																																																																					
조명	5.4	4.7	12.9	2.2																																																																																																																																																					
합계	75.3	95.1	86.1	18.2																																																																																																																																																					

■ 감리자 및 감리금액

(단위 : 원 / VAT 포함)

구분	건축감리	전기감리	정보통신감리	소방감리
회사명	(주)유일엔지니어링종합건축사사무소	(주)케이제이엔지니어링	(주)케이제이엔지니어링	(주)케이제이엔지니어링
감리금액	3,747,486,600	768,509,000 원	352,000,000	760,792,859

■ 본 주택은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분양보증을 득한 공동주택입니다.

보증서 번호	보증금액	보증기간
제 01282022-101-0013100호	₩ 314,146,085,540원	입주자모집공고승인일부터 건물 소유권보존등기일 (사용검사 또는 당해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 포함)까지

■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보증약관 중 보증사고,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제21조 (주택도시보증공사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제1조 (보증채무의 내용)

보증회사는 「주택도시보증법 시행령」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에 따라 주채무자가 보증사고로 분양계약을 이행할 수 없게 된 경우에 해당 주택의 분양이행 또는 환급이행 책임을 부담합니다.

- 【보증회사】** 주택도시보증공사를 의미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주채무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주체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분양이행】** 주택법령에서 정한 주택건설기준 및 해당 사업장의 사업계획승인서, 설계도서에 따라 시공하여 입주를 마침
- 【환급이행】**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되돌려 줌

제2조 (보증이행 대상이 아닌 채무 및 잔여입주금 등의 납부)

① 보증회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분양권 양도자와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를 포함)에는 보증채권자에게 보증채무를 이행하지 않습니다.

1. 천재지변, 전쟁, 내란, 그 밖에 이와 비슷한 사정으로 주채무자가 주택분양계약을 이행하지 못하여 발생한 채무
2. 주채무자가 대물변제·허위계약·이중계약 등 정상계약자가 아닌 자에게 부담하는 채무

- 【대물변제】** 주채무자의 채권자가 그 채권에 대하여 주채무자가 분양하는 아파트 등에 관한 분양계약을 체결함으로써 변제에 갈음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 【허위계약】** 분양의사가 없는 자가 주채무자의 자금 융통 등을 돕기 위하여 명의를 빌려주어 분양계약을 하는 것으로 차명계약을 의미합니다.

3. 입주자모집공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입주금】**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로부터 받는 계약금과 중도금 및 잔금을 말합니다.

4.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한 입주금 납부계좌(입주자모집공고에서 지정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서에서 지정한 계좌를, 보증회사가 입주금 납부계좌를 변경·통보한 후에는 변경된 납부계좌를 말함)에 납부하지 않은 입주금.
5. 보증회사가 보증채권자에게 입주금의 납부증지를 알린 후에 그 납부증지통보계좌에 납부한 입주금
6. 보증채권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납부기일 전에 납부한 입주금 중 납부기일이 보증사고일 후에 해당하는 입주금. 다만, 보증회사가 입주금을 관리(주채무자 등과 공동관리하는 경우를 포함)하는 계좌에 납부된 입주금은 제외합니다.
7. 보증채권자가 분양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금 및 중도금을 넘어 납부한 입주금
8. 보증채권자가 납부한 입주금에 대한 이자, 비용, 그 밖의 종속채무
9. 보증채권자가 대출받은 입주금 대출금의 이자
10. 보증채권자가 입주금의 납부지연으로 납부한 지연배상금
11. 보증사고 전에 주택분양계약의 해제 또는 해지로 인하여 주채무자가 보증채권자에게 되돌려 주어야 할 입주금. 다만, 보증사고 사유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유로 보증채권자가 보증사고 발생 이전에 분양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한 경우는 제외합니다.
12. 주채무자가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입주예정일 이내에 입주를 시키지 못한 경우의 지체상금
13.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에 따라 입주자모집공고에서 정한 주택 또는 일반에게 분양되는 복리시설의 분양가격에 포함되지 않은 사양선택 품목(예시: 홈오토, 발코니 샷시, 마이너스옵션 부위, 그 밖의 마감재 공사)과 관련한 금액. 다만, 사양 선택 품목과 관련한 금액이 보증금액에 포함된 경우에는 제외합니다.
14. 보증채권자가 제5조의 보증채무이행 청구서류를 제출하지 않거나 제3조의 협력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등 그 밖에 보증채권자의 책임있는 사유로 발생하거나 증가된 채무
15.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과 도급 관계에 있는 수급인, 그 대표자 또는 임직원 등 이해관계가 있는 자가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등에게 자금조달의 편의를 제공하기 위하여 분양계약을 체결하여 납부한

**입주금**

16.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이 보증채권자에 대한 채무상환을 위하여 납부한 입주금
17. 주채무자·공동사업주체·시공사 또는 그 대표자 등으로부터 계약금 등을 빌려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가 납부한 입주금
- ② 보증회사가 제6조에 따라 분양이행으로 보증채무를 이행할 경우에는 보증채권자는 잔여입주금 및 제1항 제4호부터 제6호까지에 해당하는 입주금을 보증회사에 납부해야 합니다. 다만, 제1항 제6호에 해당하는 입주금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잔금은 그렇지 않습니다.
  1. 사용검사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2. 임시사용승인일 이후에 보증사고가 발생한 경우 보증사고를 알리기 전까지 납부한 잔금 중 전체 입주금의 90퍼센트 이내에 해당하는 잔금

**【보증채권자】** 보증서에 적힌 사업에 대하여 주택법령 및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을 준수하여 주채무자와 분양계약을 체결한 자(분양권 양수자를 포함)를 말합니다. 다만, 법인이 주택을 분양받는 경우에는 주택분양계약 이전에 그 주택분양계약에 대하여 보증회사에 직접 보증편입을 요청하고 동의를 받은 법인만 보증채권자로 봅니다. 이하 같습니다.

**제4조 (보증사고)**

- ① 보증사고란 보증기간 내에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인하여 사회통념상 주채무자의 정상적인 주택분양계약 이행을 기대하기 어려운 상태를 말합니다.
  1. 주채무자에게 부도·파산·사업포기 등의 사유가 발생한 경우
  2.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예정공정률(주채무자가 감리자에게 제출하는 예정 공정표상의 공정률)을 말함. 이하 같음)보다 25퍼센트P 이상 부족하여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다만, 입주예정자가 없는 경우에는 이행청구를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3. 감리자가 확인한 실행공정률이 75퍼센트를 넘는 경우로서 실행공정이 정당한 사유 없이 예정 공정보다 6개월 이상 지연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4. 시공자의 부도·파산 등으로 공사 중단 상태가 3개월 이상 지속되어 보증채권자의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보증기간】** 해당 주택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일(복리시설의 경우 신고일을 말함)부터 건물소유권보존등기일(사용검사 또는 해당 사업장의 공동주택 전부에 대한 동별 사용검사를 받은 경우에 한함)까지를 말합니다. 이하 같습니다.

- ② 보증사고일은 보증회사가 제1항 각 호의 사유로 사고 안내문으로 알리면서 다음 각 호 중에서 보증사고일로 지정한 날을 말합니다. 이 경우 보증회사는 보증서에 적힌 사업의 입주자모집공고를 한 일간지(공고를 한 일간지가 2개 이상인 경우에는 그 중 1개 일간지를 말함)에 실어 통보에 갈음할 수 있습니다. 이하 같습니다.
  1. 제1항 제1호의 경우에는 부도·파산일, 사업포기 관련 문서접수일 등
  2. 제1항 제2호에서 제4호의 경우에는 보증이행청구 접수일

※ 분양계약자는 사업주체의 부도, 파산 등으로 보증사고가 발생할 경우에는 사업주체를 주택도시보증공사로 변경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 아파트 공사 진행 정보 제공 : 분양보증을 받은 아파트 사업장의 공사진행 정보는 주택도시보증공사의 모바일 어플리케이션(HUG-i)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 사업주체 및 시공회사**

구 분	사업주체 및 시행수탁자(신탁사)	시행위탁자(시행사)	시공사
상 호	한국투자부동산신탁 주식회사	주식회사 루리	주식회사 한화건설
주 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테헤란로 518, 섬유센터 7층(대치동)	경기도 평택시 죽백3로 167-3, 3층(죽백동)	경기도 시흥시 대은로 81(대야동, 모비덕빌딩 8층)
법인등록번호	110111-7125720	131311-0252521	110111-2558405
전화번호	02-3276-6400	031-653-6061	02-729-2255

※ 시공사 합병 관련 안내(주식회사 한화건설→주식회사 한화)

“주식회사 한화건설(이하 한화건설)”은 2022년 11월 1일을 합병기일로 “주식회사 한화(이하 한화)”로 합병됩니다. 이에 따라 한화는 한화건설의 모든 자산, 부채, 권리 및 의무를 승계하고 한화건설은 해산하게 됩니다.

**■ 관리형 토지신탁 관련 특약사항**

- 본 공급물건은 사업의 안정적인 진행을 위해 「신탁법」과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따라 시행위탁자인 (주)루리,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및 시공사 (주)한화건설, 대출금융기관인 우선수익자간 체결한 관리형토지신탁계약 방식으로 시행 및 공급하는 사업으로서 분양계약자는 다음 사항을 인지하여야 하며, 본 계약의 체결로써 본 조의 모든 항에 동의하는 것으로 봅니다.

- 본 공급계약에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분양 물건에 대한 분양공급자(매도인)의 지위에 있으나, 본 건 신탁의 수탁자로서 신탁계약에 의거 신탁업무 및 신탁재산 범위 내에서만 매도인으로서의 책임을 부담하고, 본 공급계약으로 인한 매도인으로서 일체의 의무 및 실질적 시행 주체로서의 의무와 책임은 신탁계약의 시행위탁자 겸 수익자인 (주)우리가 부담합니다.
- 본 공급물건은 「신탁법」 및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에 의한 토지신탁사업에 의거 공급되는 물건인 바, 신탁기간의 만료, 신탁해제나 해지(개별 수분양자에게로의 소유권 이전을 위한 일부해지를 포함하되 이에 한정되지 않음) 등의 사유로 시행위탁자인 (주)우리와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가 체결한 신탁계약이 종료 또는 해제, 해지되는 경우, 본 사업 및 공급계약에 관한 시행수탁자의 모든 행위 및 권리와 의무는 시행위탁자인 (주)우리에겐 별도의 조치 없이 면책적으로 포괄 승계됩니다.
- 분양계약자는 본 분양물건은 토지신탁사업에 의거하여 공급되는 재산이라는 특수성을 인지하고, 시공사인 (주)한화건설가 건설산업기본법 등 관계법령에 따라 발주자에 대하여 하자담보책임을 부담하며, 시공사 교체사유 발생 등으로 인한 시공사교체(건축물브랜드, 명칭 변경 포함)시 수분양자가 사전 동의한 것으로 간주한다는 사실을 인지합니다. (단, 시공사는 시공상 하자에 한정하여 관계법령에 따라 하자보수책임을 부담합니다.)
- 신탁계약으로 입금된 분양수입금은 「금융투자회사의 영업 및 업무에 관한 규정」 “토지신탁수익의 신탁종료 전 지급기준”에 근거해 토지비, 공사비, PF대출금 상환, 기타사업비 등을 위해 사용될 수 있습니다.
- 본 공급계약상 내용 외 수분양자와의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은 인정하지 아니하며 수분양자는 시행위탁자 및 시행수탁자에게 별도의 확약, 계약 등을 근거로 권리를 주장할 수 없습니다.
- 본 공급계약과 관련된 분양대금은 반드시 공급계약서에 규정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 명의의 계좌에 입금하여야 하며, 그 외의 방법으로 납부한 경우에는 분양(매매)대금으로 인정되지 아니하며,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게 그 효력을 주장할 수 없습니다.
- 공급대상 공동주택에 대한 설계 및 시공은 분양계약 체결일 이후 내·외장 자재의 수급여건, 현장시공 여건, 입주자의 편의성 제고, 관련 법규의 변경 등으로 인하여 계약자에게 사전통보없이 불가피하게 변경될 수 있으며, 계약자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의 경우 관련법령상 사업계획승인권자의 승인·통보 절차를 거치는 사항이 발생할 수 있음을 인지하고 향후 이의를 제기할 수 없습니다.
- 분양계약 목적물은 관리형토지신탁계약을 원인으로 한 신탁재산으로서 시행수탁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는 일체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지 않으며(예외적으로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가 매도인 또는 공급자로서의 책임 및 의무를 부담하는 경우에도 신탁업무 범위 내에서 위 책임 및 의무가 확정되는 시점에 한국투자부동산신탁(주)에게 현존하는 분양계약에 관한 신탁계약에 따른 신탁재산을 한도로만 부담하며) 분양대금 반환책임 등 기타 매도인으로서의 모든 책임은 시행위탁자인 (주)우리에겐 있습니다.

■ **건본주택 및 현장 위치 안내**

건본주택 및 현장 위치도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b>건본주택 위치</b> : 경기도 평택시 안중읍 송담리 856-1</li> <li>■ <b>현장 위치</b> : 경기도 평택시 현덕면 화양리 평택 화양지구 도시개발사업 7-2BL</li> <li>■ <b>운영 기간</b> : 분양 종료 시까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분양 일정에 따라 관람에 제한이 있을 수 있으니 대표전화를 통하여 문의 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li> </ul> </li> <li>■ <b>분양 문의</b> : 031-309-0995</li> <li>■ <b>홈페이지</b> : <a href="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https://hanwha.forena.co.kr/pyeongtaek</a></li> </ul>

- ※ 본 입주자모집공고는 편집 및 인쇄 과정에서 오류가 있을 수 있으니, 의문사항은 건본주택 또는 시행위탁자로 문의하여 재확인하시기 바랍니다. (입주자모집공고에 미기재된 사항이나 기재 사항에 오류가 있을 시에는 관계법령이 우선합니다.)
- ※ 본 공고와 공급(분양)계약서의 내용이 상이할 경우 공급(분양)계약서가 우선합니다.